



2022.10.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안 분석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Analysis by Committee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종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최형수 예산분석관
정금연 예산분석관
김소연 예산분석관
송은혜 예산분석관

지 원 | 김자영 행정실무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 02) 6788-3772 | a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2022.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2. 10. 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2일 총수입 625.9조원, 총지출 639.0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코로나로 인해 확장된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4.4%에서 -2.6%로, 국가채무비율은 50%에서 49.8%로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고용지표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재정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예산안 심의기관인 국회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등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으로 예산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3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3권, 「성인지 예산서 분석」 1권 등 기존 4개 분석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1권 및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 1권 등 2개 분석을 추가하여 총 21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면서,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 지원 사업, 국방 분야 부문별 예산안 분석,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 등 주요 정책 사업과 상임위 결산시정요구사항 및 정부성과평가와 예산안의 연계, 임대형민자사업(BTL)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 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금융공공기관 정책금융 예산안 분석 등 주요 내용과 금융·환경분야 등의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서의 적합성과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았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대상사업들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에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회 심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9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0

II. 주요 현안 분석

1.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예산 조정 필요 등	12
1-1. 사업예산 규모 조정 필요	13
1-2. 전략적 협력강화(ODA) 사업 등 활용 검토 필요	17
1-3. 사업예산 집행절차 개선 필요	20

III. 개별 사업 분석

1. 글로벌 보건기여를 위한 분담금 예산 통합관리 필요	22
2. 교수직 설치 사업 집행방식 개선 및 설치국가 다변화 필요	26
3. 외빈차고지 개축 사업의 지연가능성을 고려한 공사비 및 감리비 조정 필요	32
4. 국가별 ODA 사업관리 내실화 및 예산 조정 필요	35
4-1. 공정률 관리, 해외사무소 활용 등 사업관리 내실화 필요	37
4-2.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40
4-3. 아프가니스탄 사업 예산 조정 필요	46

[통일부]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5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55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57

II. 개별 사업 분석

1.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 탈북민 입국 인원 및 하나원 수료인원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59
2. 북한 경제연구 포럼 운영 사업: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고려 필요	63
3. 보건의료협력 증진지원 사업 및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 사업 예산 규모 조정 필요 등	68
3-1. 보건의료협력 증진지원 사업실적 및 집행여건을 감안한 감액 필요	69
3-2.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 지원 사업 유사·중복 사업 감안한 조정 필요	73
4.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 적정 사업 비목 편성 재검토 필요	77
5. 경제교류협력보험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81
6.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수입규모 타당성 검토	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8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90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91

II. 개별 사업 분석

1.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횟수에 따른 예산 규모 조정 필요 92

국방위원회

[국방부]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9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04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05

II. 주요 현안 분석

1. 병사 봉급 인상에 따른 고려사항	107
1-1. 국방분야 중장기 계획에 따른 완만한 병사 봉급 인상 방안 마련 필요	109
1-2. 초급간부와 병사의 봉급 차이 축소에 따른 군 간부 획득의 어려움	115
1-3. 병사 계급 간 봉급 차이의 적정성 확보 필요	119
2.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적정예산 편성 필요 등	122
2-1.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 등을 고려한 적정 예산편성 필요	125
2-2.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편의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129
3. 군인연금기금	132
3-1. 지속적인 보전금 증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132
3-2. 잉여 보전금에 대해 정산하는 방안 마련 필요	141

III. 개별 사업 분석

1. 국방부 BTL 사업 분석	147
1-1. BTL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당위성 입증 강화 필요	149
1-2. BTL사업의 민간투자 적격성 기준 조정 필요	152
2. 체력단련장 이용요금 현실화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 필요	163
3. 소음영향도 조사거부 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169
4.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사업 예산 조정 필요	173
5. 국군외상센터 간호인력 인건비 등 감액조정 필요	181
6. 민간병원 진료비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84

[방위사업청] / 189

[병무청]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247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4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49

II. 개별 사업 분석

1. 장병내일 준비적금 가입률 등을 고려한 적정 예산편성 필요	250
2.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의 비목 변경 필요	253
3.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57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I. 예산안 개요

- 1. 현 황 265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66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67

II. 개별 사업 분석

- 1. 특정업무경비 감액·조정 필요 268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외교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2개 기금(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구성된다.

외교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3,78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53억원(10.3%)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673억원, 국제교류기금 748억원, 국제질병퇴치기금 361억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외교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49,269	231,958	231,958	267,335	35,377	15.3
- 일반회계	49,269	231,958	231,958	267,335	35,377	15.3
기 금	19,763	111,020	111,020	110,943	△77	△0.1
- 국제교류기금	17,764	74,057	74,057	74,838	781	1.1
- 국제질병퇴치기금	1,999	36,963	36,963	36,105	△858	△2.3
합 계	69,032	342,978	342,978	378,278	35,300	10.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외교부

외교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3조 3,206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840억원(13.1%)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3조 2,121억원, 국제교류기금 709억원, 국제질병퇴치기금 376억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외교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2,606,710	2,874,765	2,806,112	3,212,125	406,013	14.5
- 일반회계	2,606,710	2,874,765	2,806,112	3,212,125	406,013	14.5
기 금	71,166	130,531	130,531	108,507	△22,024	△16.9
- 국제교류기금	64,402	68,128	68,128	70,918	2,790	4.1
- 국제질병퇴치기금	6,764	62,403	62,403	37,589	△24,814	△39.8
합 계	2,677,876	3,005,296	2,936,643	3,320,632	383,989	13.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외교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외교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외교부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2,67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54억원 (15.3%) 증가하였다

[2023년도 외교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9,269	231,958	231,958	267,335	35,377	15.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외교부

외교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3조 2,121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4,060억원(14.5%) 증가하였다

[2023년도 외교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609,949	2,874,765	2,806,112	3,212,125	406,013	14.5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외교부

한편, 외교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다. 기금운용계획안

외교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구성된다.

외교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998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안 대비 △1,128억원(△36.1%) 감소하였다. 기금별로는 국제교류기금 1,518억원, 국제질병퇴치기금 480억원이다.

[2023년도 외교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국제교류기금	123,895	220,537	220,537	151,807	△68,730	△31.2
국제질병퇴치기금	9,995	92,053	92,053	48,005	△44,048	△47.9
합 계	133,890	312,590	312,590	199,812	△112,778	△36.1

주: 총계 기준

자료: 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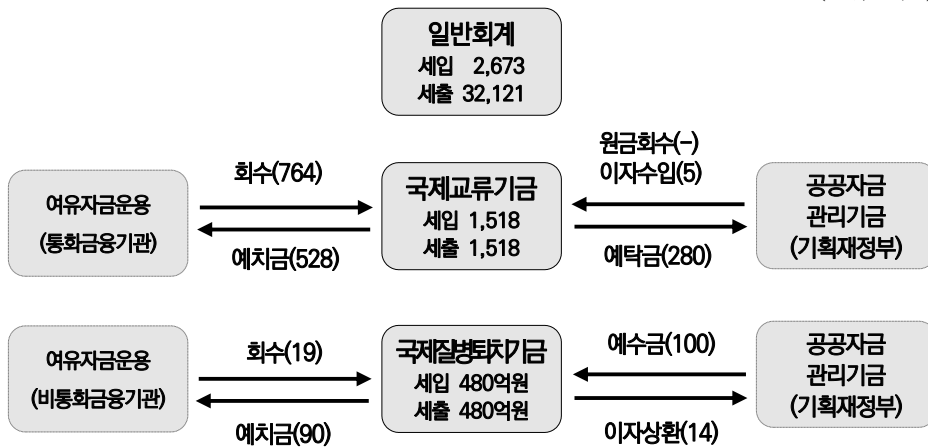
라. 재정구조

2023년도 예산안의 외교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다.

국제교류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280억원을 예탁하고, 5억원의 예탁이자를 회수한다. 또한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100억원을 예수하고, 14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한다.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자료: 외교부

2023년도 외교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국제 보건 위기와 대형 재난·재해에 대응하면서,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② 해외사건·사고 및 위난 상황 대비 재외국민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③ 사이버·신흥기술 등 신흥안보 분야에서 국제적 논의와 국제규범 수립 선도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다.

2023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은 전년 대비 578.3%(665억원) 증액되었으나, 수원국의 수요와 재외공관 등 실행기관의 집행역량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규 편성된 글로벌 보건 기여 사업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통해 수행하던 사업의 일부를 해당 기금의 재원 부족을 이유로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있어 사업의 성과관리 및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활용하여 기금 사업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수직 설치 사업은 예산 확정 전에 신규사업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회 예산 확정 이후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2023년도 신규사업 신청기관이 2개교 접수되어 계획(4개교)보다 저조하므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외빈차고지 개축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설계비, 공사비 및 감리비를 동시 계상하였으나, 공사비는 공사가액의 범위 내에서 선금비율을 반영하여 2023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하고 공사비 잔액과 감리비는 2024년도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가별 ODA 사업별 적정 공정률 관리, 해외사무소 활용 등을 통한 사업관리 내실화 노력과 2023년도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가능성이 저조한 사업은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총 3개 사업, 44억 1,700만원 규모이다.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은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이 국내 수준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비대면 기반, 디지털 중심의 영사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타지키스탄(ODA)과 우크라이나(ODA) 사업은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에 따른 중점 협력국 신설 및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외교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3개)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정보화)	4,317
	타지키스탄(ODA)	50
	우크라이나(ODA)	50
합 계		4,417

자료: 외교부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제기구사업분담금(ODA), 인도적 지원(ODA), 테러 대응체제 강화 및 국제안보협력 사업 등이 있다.

① 국제기구사업분담금은 글로벌 보건·백신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글로벌 보건기여 사업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고, ② 인도적 지원(ODA) 사업은 ACT-A 공약 이행과 대형 재난·재해 등 긴급 구호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③ 테러 대응체제 강화 및 국제안보협력 사업은 세계신안보포럼 확대 개최를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다.

[외교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¹⁾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9개)	유엔 PKO 예산분담금 납부 (ODA)	185,671	185,671	203,096	17,425	9.4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ODA)	168,603	168,603	276,717	108,114	64.1
	테러 대응체제 강화 및 국제 안보협력	1,425	1,425	3,089	1,664	116.8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39,766	33,066	60,450	27,384	82.8
	가나(ODA)	6,710	5,810	9,548	3,738	64.3
	에티오피아(ODA)	23,694	21,694	33,494	11,800	54.4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95,344	91,444	126,870	35,426	38.7
	르완다(ODA)	10,643	9,143	16,237	7,094	77.6
	이집트(ODA)	3,650	3,650	7,129	3,479	95.3
	페루(ODA)	3,918	3,918	8,428	4,510	115.1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32,357	26,557	59,445	32,888	123.8
	중동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26,200	26,200	60,169	33,969	129.7
	키르기스스탄(ODA)	4,064	3,764	7,160	3,396	90.2
	인도적 지원(ODA)	236,641	236,641	274,367	37,726	15.9
	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967	967	1,469	502	51.9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165,732	163,983	184,633	20,650	12.6
	의전장실 기본경비	399	399	2,530	2,131	534.1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186,263	186,076	201,281	15,205	8.2
	정책연구개발(R&D)	245	245	445	200	81.6
국제교류 기금 (1개)	글로벌인적교류	3,850	3,773	5,894	2,121	56.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외교부

1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예산 조정 필요 등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¹⁾은 ODA 일반협력국(비중점협력국) 지원을 통한 원조소의 완화 및 수원국과의 전략적 우호관계 형성을 위하여 수원국에 물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중동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65억원이 증액된 78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소규모 무상원조	10,000 (9,548)	11,500	11,500	78,000	66,500	578.3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2,000 (2,052)	2,000	2,000	16,500	14,500	725.0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5,000 (4,419)	5,000	5,000	27,000	22,000	440.0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1,500 (1,500)	1,500	1,500	18,500	17,000	1133.3
중동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1,500 (1,577)	3,000	3,000	16,000	13,000	433.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괄호 안은 실집행액

자료: 외교부

송은혜 예산분석관(a79368@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431-410, 2342-403, 2433-405, 2434-402의 내역사업

1-1. 사업예산 규모 조정 필요

가. 현 황

2010년부터 추진된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약 44억원~115억원 이내로 편성되고 있으며, 집행률은 약 90%를 상회하고 있다. 다만, 2022년 8월말 현재 집행률은 약 63% 수준이며,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665억원이 증액된(578.3%) 780억원을 편성하였다.

[연도별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8월말		2023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4,354	4,354 (4,132)	7,720	7,720 (7,333)	10,000	10,000 (9,548)	11,500	10,140 (7,251)	78,000	-

주: 괄호 안은 실적집행액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은 전년대비 578.3%(665억원) 증액되었으나 수원국의 수요와 재외공관 등 실집행기관의 집행역량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은 전년대비 665억원이 증액된(578.3%) 780억원이 편성되었다. 정부는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원 목적이며, 동시에 수원국 수요 확대, 수원국과의 전략적 우호 관계 강화 등 종합적 필요성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예산 증액 사유]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편성사유
소규모 무상원조	11,500	78,000	2030 부산 세계박람회 ¹⁾ 지지가능성 있는 개도국 대상(118개국)으로 지원확대 및 강화

주: 1)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2030년 개최, 2023년 11월 개최지 선정 투표가 진행될 예정임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8.30.)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이는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전략적으로 ODA 사업을 활용하여 수원국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예산의 증가 폭이 크므로 수원국의 수요와 사업을 수행하는 재외공관의 집행역량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은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수원국의 수요를 직전년도 3월까지 접수·선정²⁾하고 있는데, 2023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건수는 42건(738만불) 규모이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수원국 수요 접수 건수는 56건~71건 정도로 유지되고 있으며, 2023년도 수요로 접수된 42건은 과거 연도 대비 적은 편으로 확인된다.

[연도별 수원국 수요 접수 및 선정 현황]

(단위: 건, 만불)

구분	접수		선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65	978	31	342
2019	65	1,022	32	357
2020	56	961	43	675
2021	71	1,270	53	804
2022	70	1,239	54	-
2023	42	738	미정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과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 건당 평균 지원 규모는 약 13만불(1.9억원)인데, 이는 일반 ODA 사업으로 편성하기에는 지원 규모가 작거나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수원국의 일시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의 목적에 따른 것이다. 집행 내역을 보면 긴급 의료물품, 응급보트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외교부에 접수된 건수 중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내부 심의위원회 선정 절차 등을 거쳐 선정하고 있다.

[2022년도 지역별 사업수행 내역(예시)]

지역	사업명
아시아태평양	외교부 행정차량 지원
	도시 쓰레기 수거용 차량 지원
	과학연구원 연구 장비 구매 지원
	환초 태양열담수화장비 지원 사업
	박물관 문화재 디스플레이 장비 지원
	긴급 의료물품 지원 사업
	우체국 물류장비 지원사업
아프리카	외교부 사무기기/회의용품 및 행정차량지원
	대학교 기자재 지원
	외교부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IT 및 사무용 기자재 지원
	외교부 및 대사관 행정차량 및 사무기기 지원
	외교부 화상회의 장비 지원 사업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사무기기(전자제품) 지원
	외교부 행사 및 회의 물품 지원
중동CIS	교육기관 컴퓨터 지원
	외교부 IT 기자재 지원 사업
	산립 조성 및 보존용 차량 지원
	국립대학교 교육기자재(스마트보드) 지원사업
	청소년 센터 체육용품 지원사업
	코딩교육 진흥을 위한 IT장비 지원
	지방정부 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행정차량 지원
중남미	국회 디지털 디스플레이 구축
	우정병원 의료기자재 지원사업
	스마트 보건선 개선 사업(응급보트 지원)
	보건부의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위한 무인 비행 장치(드론) 지원
	경찰청 보호장비 지원
	대한민국 학교 개보수 지원
	이민청 여권 라미네이터 제공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과거 수요 접수 건수와 실제 선정률, 사업별 단가를 고려했을 때, 2023년도 예산안은 충분한 수요에 기반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780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종전 사업별 단가를 반영하여 사업 건수를 역산하면 약 411건이 선정되어야 하며, 최근 5개년(2018~2022년)의 평균 선정률(65.1%)를 고려하면 약 631건이 접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수요조사가 2022년 3월까지 마무리되어야 했으나 전화, 메일 등을 통해 추가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말 기준 접수 건수가 157건(6,137만불)으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접수 물량으로 실제 선정 시 소규모 무상원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사업의 타당성 등이 검증되어야 하므로 접수 물량을 선정 물량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외교부가 제시한 수요에 따라 사업별 단가를 산정하면 약 5.6억원으로 종전 무상원조 사업단가와 차이가 크고 해당 규모의 일반 ODA 사업은 일반적으로 유사중복 절차 등을 거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수요가 충분히 확보된다 하더라도 실집행기관인 재외공관의 집행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을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소규모 무상 원조 사업의 과거 집행 단가를 기준으로 사업 수를 산정하면 약 10배(약 43건 → 411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을 수행하는 재외공관의 관리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의 주요 대상 국가는 비중점협력국으로 재외공관이나 KOICA 현지사무소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일례로, 아프리카의 경우 48개국인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하고 있으나 재외공관은 18개에 그치고 있어 점임 대사 제도를 활용하여 아프리카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사업 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집행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가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외교부는 단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증액하기보다 실수요를 고려하여 2~3년간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개편하고, 2023년도 예산 규모는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1-2. 전략적 협력강화(ODA) 사업 등 활용 검토 필요

가. 현 황

전략적 협력강화(ODA) 사업³⁾은 전략적 ODA 협력 강화로 정상급 외교 공약 사업 및 기타 중요 국정과제 지원 등 전략사업 추진, 융합 ODA 연계지원 강화를 통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8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전략적 협력강화(ODA)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전략적 협력강화(ODA)	8,000 (5,183)	8,000	8,000	8,000	0	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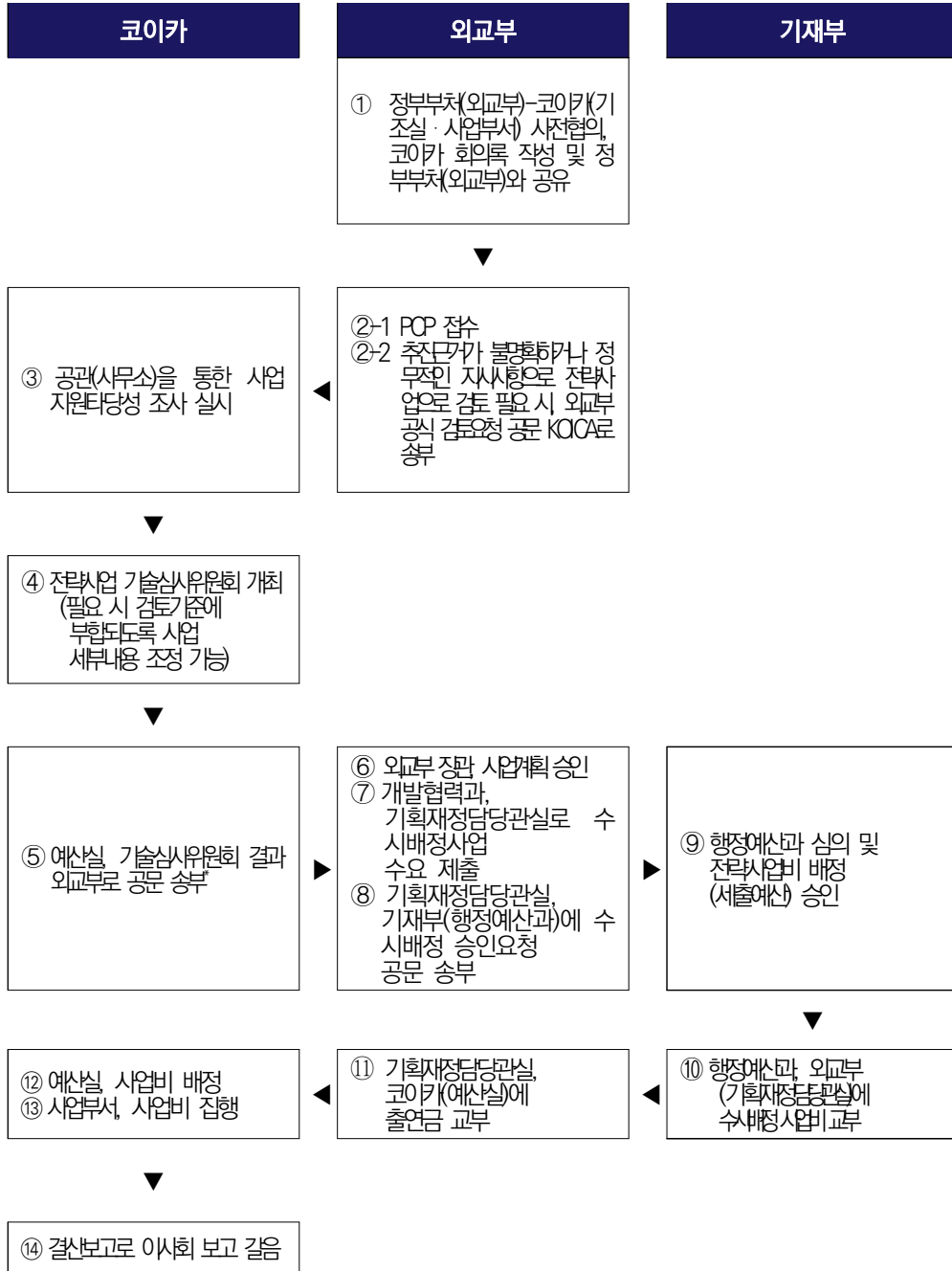
1. 괄호 안은 실집행액

자료: 외교부

전략적 협력강화(ODA) 사업은 ‘전략사업비’, ‘융합ODA 연계지원’ 사업으로 구성되며, 추진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정무적인 지시사항을 포함한 전략사업의 경우 심의·조정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배정을 진행하고 있다.

3) 코드: 일반회계 2437-401

[전략적 협력강화(ODA) 사업 추진 절차]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은 예산 심의·확정 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어 여타 ODA 사업과 유사·중복의 우려가 있는 바,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예산을 축소하고 기존 국별협력사업이나 전략적 협력강화(ODA)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외교부 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유사·중복 검토 절차 등을 거쳐 수행되는 한편, 전략적 협력강화(ODA) 사업은 정치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목적을 특정하지 않고 집행하고 있다.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않고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은 국회 예산 심의권 존중을 위하여 지양되어야 하나, 전략적 협력강화(ODA) 사업은 상기 필요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의 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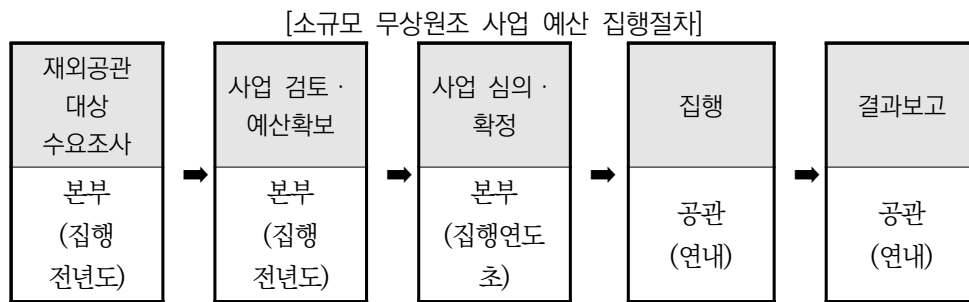
다만, 수원국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의 경우 예산 심의·확정 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어 여타 ODA 사업과 유사·중복의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외교부는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예산을 축소하고 기존 국별협력사업 혹은 전략적 협력강화(ODA)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1-3. 사업예산 집행절차 개선 필요

가. 현 황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은 외교부가 KOICA에 출연하여 집행하는 무상원조 사업 중 하나이나, 외교부 및 재외공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외교부는 KOICA에 출연된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예산을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 및 집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예산을 재외공관 사업비로 편성하거나 KOICA에서 국별협력사업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등 집행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의 예산 집행절차를 살펴보면, 외교부는 집행년도 초에 각 재외공관이 제출한 사업별 집행계획을 검토·승인한 후, 이를 KOICA에 통보하고 KOICA는 해당 금액을 재외공관으로 송부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즉, KOICA에 출연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및 재외공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재정법」상 출연금 제도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소규모 무상원조의 경우 외교부가 KOICA에 출연하여 집행하는 무상원조 사업 중 하나로서, 사업 특성상 외교부 및 재외공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KOICA는 사업심의, 예산 관리·집행, 국내조달, 현지조달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외교부에서 제출한 예산 집행절차를 보면 KOICA는 주로 재외공관이 제출한 사업별 집행계획을 통보받고 해당 금액을 다시 재외공관으로 송부하는 전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외교부는 물품구매 등의 사업은 재외공관 사업비로 편성하거나, KOICA에서 국별협력사업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등 집행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글로벌 보건기여를 위한 분담금 예산 통합관리 필요

가. 현 황

글로벌 보건기여 사업¹⁾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보건기구에 대한 우리 기여를 강화하여 글로벌 보건안보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1,00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글로벌 보건기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154,751	168,603	168,603	276,717	108,114	64.1
글로벌 보건기여	-	-	-	100,000	100,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외교부

송은혜 예산분석관(a79368@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131-404의 내역사업

나. 분석의견

신규 편성된 글로벌 보건 기여 사업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통해 수행하던 사업의 일부를 해당 기금의 재원 부족을 이유로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있어 사업의 성과 관리 및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활용하여 기금 사업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사업은 전년대비 64.1%(1,081억 1,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정부는 증액 사유에 대해 글로벌 보건 기여 확대 목적이라고 밝혔다.

2022년도까지 국제질병퇴치기금 내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던 글로벌 국제질병 퇴치 사업의 일부를 2023년도에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사업(일반회계)의 신규 내역사업(‘글로벌 보건기여’ 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라 전년대비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이다.

2023년도 개편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도까지 국제질병퇴치기금의 내역사업으로 추진되었던 UNITAID, GAVI, Global Fund, CEPI 백신개발 및 비축을 통한 신종감염병 대비 등 4개 사업 중 CEPI 관련 지원을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사업(일반회계)의 내역사업인 글로벌 보건기여로 이전한 한편, Global Fund 관련 사업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의 2023년도 예산안에 일부(96억원) 남기고 나머지(645억원)는 글로벌 보건기여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2023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 및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사업 비교]

구분	국제질병퇴치기금				일반회계		
세부사업	글로벌 국제질병퇴치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관련 내역사업	UNITAID 백신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질병퇴치 활동				글로벌 보건기여		
	GAVI 백신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질병퇴치 활동						
	Global Fund 백신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질병퇴치 활동						
지원기구	UNITAID, GAVI, Global Fund				GPEI, Global Fund, CEPI		
예산(안) (백만원)	2022		2023		2022	(신규)2023	
	UNITAID	11,305	UNITAID	6,800	-	GPEI	30,960
	GAVI	11,305	GAVI	6,800			
	Global Fund	19,219	Global Fund	9,600		Global Fund	64,500
	CEPI	6,783	CEPI	-		CEPI	4,515
	기타	70	기타	70		합계	100,000
	합계	48,682	합계	23,270			

주: 1.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사업 내 국제기구별 편성된 예산액은 기재부 2023년 편성환율 (1USD=1,290원)을 적용하여 환산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외교부는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른 기금재원 급감으로 공여액 미지급을 우려하여 기금사업 일부를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전하였다는 입장이며, 글로벌펀드에 대한 기여액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약액(1억불)²⁾은 국제기구 분담금 사업예산(글로벌 보건기여)에서 집행될 예정이며,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업예산(96억 원)은 2022년 미집행된 공약 이행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지원해오던 사업을 재원 부족을 이유로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분리하여 편성하는 것은 사업 추진경과 파악 및 성과관리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동일 국제기구에 지급하는 특정 분담금을 재원을 달리 하여 납부하는 것은 재정 운영의 복잡성을 심화시키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2) 제7차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22.9.21.)에서 정상 연설을 통해 공약이 발표되었으며, 3년간 1억불 (2023년 5천만불, 2024년 2천 5백만불, 2025년 2천 5백만불)을 공약하였다.

따라서, 기금과 일반회계로 재원을 분리하여 편성하기보다 일시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활용하여 기금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지원 규모는 일반회계로 이관된 사업의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하되,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수입(출국납부금³⁾)이 빠르게 회복⁴⁾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⁵⁾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출국납부금은 국내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포함된다. 즉,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에 근거한 출국납부금 1,000원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에 근거한 출국납부금 10,000원을 합하여 총 11,000원(1인당)이 부과된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출국납부금은 국제질병퇴치기금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권에 1,000원을 부과하여 징수되는 납부금을 말한다.

4)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주요 수입원(90% 이상)인 법정부담금(출국납부금) 납입액이 전년 동월대비('21년 8월 기준, 1억 2,090만원, '22년 8월 기준, 7억 9,437만원) 557% 증가하였으며, 무비자 입국, 입국 후 PCR 검사 의무 해제 등 조치에 따라 연말까지 수입 회복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출국납부금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A)	2022(B)	증감율(B-A)
1월	3,393	3,798	112	193	72.1
2월	3,792	3,621	92	161	74.4
3월	3,333	1,408	67	114	69.5
4월	3,384	170	83	158	89.0
5월	3,339	12	89	246	174.7
6월	3,501	41	91	380	318.0
7월	3,552	53	111	500	350.7
8월	3,752	78	121	794	-
9월	3,506	94	152	-	-
10월	3,013	78	122	-	-
11월	3,334	86	136	-	-
12월	3,138	104	172	-	-
합계	41,032	9,542	1,349	2,545	-

자료: 외교부

5) 코로나19 발생 이전 법정부담금 수납액(2018년 약 392억원, 2019년 약 410억원)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교수직 설치 사업¹⁾은 일정 수준의 한국학 기반이 조성되어 있고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해외 대학에 한국어·한국학 교수직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학기반확대 사업의 내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1억 9,900만원이 증액된 5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교수직 설치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학기반확대 사업	17,934	15,736	15,736	18,644	2,908	18.5
한국학 강좌운영	12,727	10,997	10,997	13,745	2,748	25
교수직 설치	4,567	2,671	2,671	5,870	3,199	119.8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외교부

1992년부터 추진된 교수직 설치 사업은 한국어 또는 한국학 교수직을 신설하려는 해외 대학을 대상으로 임용 교수의 급여를 지원하거나 재단과 대학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교수직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8~10개국 약 20~30개 대학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에는 계속사업으로 8개국 27개교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을 선정 중에 있다.

[연도별 교수직 설치 사업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¹⁾
국가	9개국	10개국	8개국	8개국	8개국
협력기관	22개교	23개교	23개교	25개교	27개교
예산	3,919	3,919	3,738	2,671	5,870

주: 1) 2023년도 사업규모는 2022.12월 신규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상기 수치는 계속사업에 해당함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교수직 설치 사업의 지원유형은 ‘기금 설치형(기본형)’과 ‘급여지원형(TTP)’로 구분되는데, 먼저 기금 설치형은 재단과 대학 1:1 매칭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 이자로 교수직을 운영하고 부족액은 대학이 부담하는 방식인 한편, 급여지원형은 급여 및 급여성 경비를 최대 70%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이외에도, 전자의 경우 기금 조성 완료 후 1년 이내에 임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후자의 경우 해당 대학과의 협약체결 직후 임용이 추진된다는 차이가 있다.

[교수직 설치 사업 지원방식]

구분	기금 설치형(기본형)	급여지원형(TTP)
재원 조성	• 재단과 대학 1:1 매칭으로 기금 조성 • 기금 이자로 교수직 운영. 부족액은 대학 부담 • 대학측 대응기금 제3자 재원모금 가능	• 급여 및 급여성 경비 최대 70% 지원
	• 1석당 150만불-250만불 (대학 측에서 동일 금액 매칭)	• 1석당 평균 30만불(연간 약6만불)
임용 시기	• 기금 조성 완료 후 1년 이내 원칙	• 협약체결 직후 임용 추진 • 임용 확인 후 1차 지원금 지급
교원 등급	• 종신 교수직(Tenured Position) 신설 ※부교수급 임용 가능	• 조교수급(TTP) 신설
교수직 유지	지속/영구 유지	지속/영구 유지
지원 기간	5년	3-5년
임용 자격	• 한국 연구 비율 50% 이상 • 한국어 자료로 연구 가능한 자 • 한국어 능통 (인문학 분야 임용 시) • 연구물 영문 출판 가능자	• 한국 연구 비율 50% 이상 • 한국어 자료로 연구 가능한 자 • 한국어 능통 (인문학 분야 임용 시) • 연구물 영문 출판 가능자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급여지원형의 재단과 대학 간 비용 분담 비율을 보면 재단이 최대 70%를 지원하고 있다.

[급여지원형의 대학별 지원 내역]

지역	국가	대학명	2022 협약액	비용 분담 비율(KF:대학)
북미	미국	뉴욕시립대퀸즈칼리지	USD63,687	70:30
		콜로라도대-볼더	USD73,170	69:31
		밴더빌트대	USD74,349	70:30
		노스캐롤라이나대-채플힐	USD77,489	70:30
		조지메이슨대	USD62,213	70:30
		아이오와대	USD65,474	70:30
		인디애나대	USD84,628	70:30
		노스웨스턴대	USD92,432	70:30
		UC산타바바라	USD77,979	70:30
		UC어바인	USD80,000	69:31
		뉴욕대	USD73,080	62:38
유럽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GBP64,975	70:30
		센트럴랭커셔대	USD56,631	70:30
	이탈리아	볼로냐대	EUR49,000	70:30
		시에나외국인대	USD33,873	70:30
	프랑스	라로셀대	USD43,632	70:30
아시아	일본	도쿄외국어대	USD43,562	51:49
대양주	호주	멜버른대	AUD31,694	57:43
		모나시대	AUD139,171	70:30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USD30,169	70:30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나. 분석의견

첫째, 교수직 설치 사업은 예산 확정 전에 신규사업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회 예산 확정 이후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2023년도 신규사업 신청기관이 2개교 접수되어 계획(4개교)보다 저조하므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교수직 설치 사업의 집행절차를 살펴보면, 대학과의 다년 협약을 통해 ‘계속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시에, 집행 전년도에 ‘신규사업’을 공모(7.1.~9.15.)하여 심의(9월~10월) 및 선정(12월 초)한 후 당해년도에 시행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즉, 교수직 설치 사업은 예산 확정 전에 신규사업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신규사업 공고 및 심의절차 진행에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신규사업을 포함한 차년도 사업계획은 국회 예산안 심의가 완료되는 시점인 12월말 확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규사업 신청은 9월 중으로 마감되고 신청결과를 토대로 9월~12월 초에 심의·선정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회 예산 확정 이후 신규사업 공고, 심의 및 선정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수직 설치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31억 9,900만원이 증액된(119.8%) 58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정부는 한국학기반확대 사업의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 해외 유력대학 내 한국학 석좌교수직 설치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국학기반확대 사업 예산 증액 사유]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편성사유
한국학기반확대	15,736	18,644	해외 유력대학 내 한국학 석좌교수직 설치 (기금 설치형 4개교, 급여지원형 5개교 추가)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8.30.)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3년도 예산안의 산출근거를 보면, 신규사업(기금 설치형 4개교, 급여 지원형 5개교) 대상 30억 600만원, 계속사업(기금 설치형 3개교, 급여 지원형 17개교) 대상 28억 400만원으로 총 58억 7,000만원 규모이다.

[2023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구분	신규사업	계속사업	합계
기금 설치형	4개교×694백만원 =2,776백만원	3개교×536.3백만원 =1,609백만원	4,385백만원
급여 지원형	5개교×58백만원 =290백만원	17개교×70.3백만원 =1,195백만원	1,485백만원
총계	3,066백만원	2,804백만원	5,870백만원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신규사업 신청은 2022년 9월 15일자로 마감되었는데, 기금 설치형은 2개교, 급여 지원형은 12개교에서 지원하여 당초 계획(4개교)보다 기금 설치형이 2개교 적게 접수되었으므로, 2개교 지원예산 규모(13억 8,800만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회 예산 확정 이후 신규사업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2023년도 신규사업 신청기관이 2개교 접수되어 계획(4개교)보다 저조하므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수직 설치 사업은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국가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2023년도 교수직 설치 계획(계속사업)을 보면, 전체 8개국 27개교를 대상으로 총 34억 7,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지역에 28억 7,400억원(82.8%), 유럽 지역에 2억 9,500만원(8.5%), 대양주 지역에 2억 4,900만원(7.2%), 아시아 지역에 5,300만원(1.5%)을 지원한다.

[2023년도 교수직 설치 사업(계속사업) 현황]

(단위: 개교, 백만원, %)

구분	설치개소	예산
미국¹⁾	15(55.6)	2,874(82.8)
유럽²⁾	5(18.5)	295(8.5)
대양주 ³⁾	2(7.4)	249(7.2)
아시아 ⁴⁾	1(3.7)	53(1.5)
합계	27(100.0)	3,471(100.0)

주: 1) 콜로라도대(볼더), 벨터빌트대, 조지메이슨대, UC버클리, 아이오와대, 인디애나대, 에모리대, 노스웨스턴대, UC어바인, UC산타바라, 뉴욕대, 노트르담대, 조지타운대

2) (덴마크)코펜하겐대, (영국)센트럴랭카셔대, (이탈리아)볼로냐대, 시에나외국어대, (프랑스)라로셀대

3) (호주)모나시대, (뉴질랜드)오클랜드대

4) (일본)도쿄외국어대

1. 상기 목록은 계속사업으로 신규사업은 금년도 말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결정 후 추진 예정(22.8월말 기준, 공모 진행 중)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즉, 교수직 설치 지역이 미국 및 유럽지역에 편중되어 운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외부 재원 유치를 통한 교수직 신설 제도가 있고 비교적 큰 규모의 자체 재원 마련 여건을 갖추고 있는 북미 및 유럽지역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교수직 설치 사업의 목적이 한국학 저변 확대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국 및 유럽지역에 국한된 사업지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대양주 및 아시아 지역으로의 사업 확산을 위해 비용 분담 비율 조정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외빈차고지 개축 사업의 자연가능성을 고려한 공사비 및 감리비 조정 필요

가. 현 황

외빈차고지 개축 사업¹⁾은 외빈차량운영팀 사무실 및 외빈차량 보관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의전장실 기본경비의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2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3년도 국정운영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의전장실 기본경비	443	399	399	2,530	2,131	534.1
외빈차고지 개축	-	-	-	2,200	2,200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외교부

동 사업은 2023년 1년간 현 용산 외빈차고지 내 5개동 건물(관리동(1), 정비동(1), 차고동(2), 창고(1) 등)에 대한 신축·보강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당 부지는 외빈차량운영팀(10명) 사무실 및 외빈차량(26대)을 보관·정비하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토지 개요]

지번	면적	지역/지구
이태원동	36-1	430㎡
	83-1	3,397㎡
	83-5	96㎡
	83-12	152㎡

주: 관리동1(120㎡), 정비동1(210㎡), 차고동2(468㎡, 413㎡), 창고1(36㎡) 등 5개동

자료: 외교부

송은혜 예산분석관(a79368@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131-301의 내역사업

나. 분석의견

외빈차고지 개축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설계비, 공사비 및 감리비를 동시계상하였으나 공사비는 공사가액의 범위 내에서 선금비율을 반영하여 2023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하고 공사비 잔액과 감리비는 2024년도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

외빈차고지 개축 예산은 현 용산 외빈차고지 5개동 건물에 대한 신축·보강 공사 목적으로 2023년도에 22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기본조사 설계비(420-01목) 7,000만원, 실시설계비(420-02목) 7,000만원, 공사비(420-03목) 19억 4,200만원, 감리비(420-04목) 3,000만원, 임차료(210-07목) 8,800만원이다.

[2023년도 외빈 차고지 개축 사업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비목	2023 예산안
외빈차고지 개축	기본조사설계비(420-01목)	70
	실시설계비(420-02목)	70
	공사비(420-03목)	1,942
	감리비(420-04목)	30
	임차료(210-07목)	88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2023년 1월~5월간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본공사를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빈차량 차고지 개축 사업 일정]

구분	총기간	설계		본공사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소요 일정	12개월 (‘23.1.~’23.12.)	2개월 (‘23.1.~’23.2.)	4개월 (‘23.2.~’23.5.)	9개월 (‘23.4.~’23.12.)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의 경우 동일 업체에서 진행하더라도 공고입찰, 계약 등에만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설계완료까지 3~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설계안을 토대로 본공사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작업 이후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²⁾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공사는 2023년 3~4분기에나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외교부 계획에 따르면 본공사는 9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므로 공사 완료 및 감리 등은 2024년도에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내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는 사업의 긴급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가지 이상 비목의 동시계상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부는 2023년도 예산에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를 동시에 편성하기보다, 공사비(420-03목)는 공사가액의 범위 내에서 선금비율³⁾을 반영하여 2023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하고 공사비 잔액과 감리비(420-04목)는 2024년도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

2) 건축허가신청, 관계기관 협의, 건축허가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연장」에 따라 선금지급한도는 100분의 80으로 확대(22.12.31. 선금 신청분까지 적용)되었다.

국가별 ODA 사업¹⁾은 ‘아시아태평양지역원조’, ‘아프리카지역원조’, ‘중남미지역원조’, ‘중동CIS지역원조’ 등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일치하는 프로그램 발굴 및 시행을 통하여 국가별 협력전략 기반의 맞춤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해당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별 ODA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5.7% 증가하여 총 6,600억 6,400만원 규모이다. 구체적으로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는 전년대비 13.8% 증가한 2,426억 9,000만원,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는 전년대비 34.9% 증가한 2,385억 1,700만원, 중남미지역 국가원조는 전년대비 46.4% 증가한 972억 2,500만원, 중동CIS지역 국가원조는 전년대비 88.3% 증가한 816억 3,200만원이다.

송은혜 예산분석관(a79368@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600

[2023년도 국가별 ODA 프로그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192,282	213,212	182,402	242,690	29,478	13.8
베트남	23,753	31,334	29,574	35,329	3,995	12.7
인도네시아	20,033	20,636	11,786	19,445	△1,191	△5.8
캄보디아	14,527	22,847	22,247	23,577	730	3.2
필리핀	21,906	23,387	20,087	23,319	△68	△0.3
방글라데시	10,650	13,668	13,668	14,936	1,268	9.3
몽골	12,835	12,414	9,414	12,825	411	3.3
라오스	18,846	19,264	19,264	23,292	4,028	20.9
스리랑카	8,997	9,312	8,702	10,574	1,262	13.6
네팔	7,961	8,777	8,427	8,538	△239	△2.7
파키스탄	8,797	7,711	3,311	8,678	967	12.5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	38,982	39,766	33,066	60,450	20,684	52.0
인도	1,356	1,810	760	987	△823	△45.5
미얀마	3,639	2,286	2,096	740	△1,546	△67.6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122,360	176,774	164,874	238,517	61,743	34.9
가나	4,663	6,710	5,810	9,548	2,838	42.3
에티오피아	17,322	23,694	21,694	33,494	9,800	41.4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	62,602	95,344	91,444	126,870	31,526	33.1
르완다	8,368	10,643	9,143	16,237	5,594	52.6
우간다	11,374	12,460	11,360	14,564	2,104	16.9
탄자니아	7,542	14,744	14,044	18,466	3,722	25.2
세네갈	8,319	9,529	7,729	12,209	2,680	28.1
이집트	2,170	3,650	3,650	7,129	3,479	95.3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66,104	66,397	59,497	97,225	30,828	46.4
콜롬비아	6,108	8,975	8,375	9,861	886	9.9
페루	6,321	3,918	3,918	8,428	4,510	115.1
볼리비아	9,508	9,977	9,477	8,599	△1,378	△13.8
파라과이	17,270	11,170	11,170	10,892	△278	△2.5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	26,897	32,357	26,557	59,445	27,088	83.7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51,772	43,351	42,801	81,632	38,281	88.3
우즈베키스탄	13,777	13,087	12,837	14,203	1,116	8.5
중동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	33,766	26,200	26,200	60,169	33,969	129.7
키르기스스탄	4,229	4,064	3,764	7,160	3,096	76.2
타지키스탄	-	-	-	50	50	순증
우크라이나	-	-	-	50	50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외교부

4-1. 공정률 관리, 해외사무소 활용 등 사업관리 내실화 필요

가. 현 황

2023년도에 수행 예정인 국가별 ODA 사업 중 2022년도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총 79건이다. 이 중 2022년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도에 계획변경으로 사업이 연장된 경우는 총 38건이고, 2023년에 사업이 종료될 계획이었으나 1~2년 추가 연장된 사업은 총 7건이며, 사업비 계획변경은 총 14개 사업이다.

2023년도에 종료 예정인 ODA 사업은 총 93건으로 이 중 24건(25.8%)의 사업이 공정률 50% 미만으로 확인되는데, 공정률이란 총 사업비 중 사업 시작년도부터 현재('22.9월말)까지 투입된 사업비 비율을 의미한다. 해당 사업들은 2023년도에 계획변경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종로계획 사업 공정률(50% 미만) 현황]

(단위: %)

국가명	계획명(사업 시작년도)	공정률
베트남	베트남 민간부문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정보시스템 구축사업('18-'23/550만불)	29.03
베트남	베트남 뚜옌꽝성 포용적 농촌개발 프로그램('19-'23/1,500만불)	48.30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취약계층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사업 ('20-'23/700만불)	8.42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해안쓰레기 관리정책 역량강화('21-'23/250만불)	0.69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역량강화사업('18-'23/510만불)	39.35
캄보디아	캄보디아 메콩델타 지역 통합물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21-'23/200만불)	8.31
필리핀	필리핀 경쟁위원회 사건처리역량강화 사업('20-'23/520만불)	1.04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사이버안전을 위한 디지털 수사 역량 확산 사업('20-'23/480만불)	10.78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활용 국가 간선도로망 안전성 강화 사업 ('20-'23/893만불)	40.24
몽골	몽골 국립과학수사원 법과학 역량강화 사업('20-'23/700만불)	8.86
동티모르	동티모르 젠더기반폭력 예방 및 대응 사업 (UN)('20-'23/730만불)	34.09
다국가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20-'23/400만불)	49.69
인도	인도 직업기술교육 역량강화사업('21-'23/200만불)	0.05
미얀마	미얀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촌지도 역량강화 사업('19-'23/950만불)	24.42
미얀마	미얀마 자동차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19-'23/1,000만불)	9.39
카메룬	카메룬 2개주 주민등록 전산화시스템 구축 시범사업('20-'23/485만불)	13.85
수단	수단 아바예이 지역 참여적 사회통합 및 경제 회복력 강화 사업('21-'23/650만불)	14.80
모잠비크	모잠비크 직업훈련교육 역량강화사업('19-'23/700만불)	32.99
우간다	우간다 캄팔라지역 고형폐기물 및 분뇨처리 역량강화사업(GGGI)('21-'23/225만불)	49.57
파라과이	파라과이 항공 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19-'23/1,113만불)	48.97
이란	이란 국립 직업훈련교사 훈련원 현대화사업('17-'23/750만불)	0.79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코자밴드지역 상하수도 시설 구축사업('16-'23/1,070만불)	0
이라크	이라크 중환자 전문의료 서비스 역량강화사업('16-'23/3,950만불)	31.63
이라크	이라크 한-이라크 직업훈련원 2차 지원사업('14-'23/500만불)	14.76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외교부는 종료예정 당해년도 혹은 직전년도에 계획이 변경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별 적정 공정률 관리, 해외사무소 활용 등을 통한 사업관리 내실화 노력이 필요하다.

ODA 사업은 평균 3~5년간 수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기간 중 여건이 변함에 따라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사업기간, 예산 등이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 종료예정 당해년도 혹은 직전년도에 계획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업기간별 공정률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 종료예정 당해년도 혹은 직전년도에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사유를 보면 수원국의 변경 요청 등의 사유도 존재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수행업체 선정 지연 등으로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다.

본부 차원에서 사업기간별 공정률 관리, 중간평가를 통한 환류 조치 등을 선제적으로 수행하였다면 계획변경이나 사업취소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며, 조기에 계획변경 등의 조치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교부는 현지사정 파악 및 문제해결 등을 위하여 재외공관과 한국국제협력단 산하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사무소 운영을 위해 매년 약 110~14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향후 이를 활용하여 해외 현지사정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발생에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해외사무소 지원 예산]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	2019	2020	2021	2022	2023
협력사업 지원	국제협력증진 (정책연구 및 전략수립 등)	해외사무소 운영	9,077	9,077	9,316	10,632	11,799
		해외사무소 공통경비	2,262	2,262	1,665	1,665	1,997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따라서 외교부는 국가별 ODA 사업이 종료예정 당해년도 혹은 직전년도에 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별 적정 공정률 관리, 해외사무소 활용 등을 통한 사업관리 내실화 노력이 필요하다.

4-2.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가. 현 황

한국국제협력단의 국가별 원조사업(ODA) 사업²⁾은 단위사업인 4개의 지역별 원조사업 내 31개 세부사업에 59개 국가를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³⁾ 2023년도에 추진될 국가별 ODA 사업은 총 382개의 내역사업이며⁴⁾, 이중 48개 신규사업을 제외한 334개 사업이 2022년에 이은 계속 추진사업으로 총 예산 규모는 6,600억 6,400만원이다.

2023년 계속 추진 내역사업의 2022년도(9월말 기준) 집행실적을 보면,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은 전체 334건 중 188건(56.3%), 집행률이 25% 미만인 사업은 138건(41.3%), 집행률이 1% 미만인 사업은 69개(20.6%)이다.

2) 코드: 일반회계 2433-402

3) 세부사업은 국가별로 편성되나 일부는 비중점 국가그룹 사업으로 편성하여 한 개 세부사업 내 해당 지역의 여러 비중점 지원국가를 합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예.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케냐, 수단 등은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 세부사업에 편성하여 지원).

4) 관리·운영 중인 내역사업은 총 382개이나 이 중 5개는 별도 예산편성 없이 관리 중으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22년도(9월말 기준) 집행률 1% 미만 사업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 비(\$)	사업 기간	2022 예산액	2023 예산안
베트남 해양환경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및 시범사업	350	'18-'23	795	411
베트남 광남성 땀끼시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 사업	900	'20-'25	1,388	1,600
베트남 다낭시 스마트 통합도시재난관리센터 구축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 사업	1,050	'20-'25	2,300	1,835
베트남 타이응웬성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지원사업	810	'22-'25	300	1,700
인도네시아 띠따룽강 유역 홍수예경보 시스템 구축 2차 사업	1,000	'20-'24	2,500	3,071
인도네시아 해안쓰레기 관리정책 역량강화	250	'21-'23	700	762
인도네시아 보고르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센터 역량강화 사업	1,100	'21-'28	1,200	800
인도네시아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양성 역량강화사업	740	'22-'26	200	623
인도네시아 국가 재난대응 공공의료체계 역량강화 사업(WHO)	1,200	'22-'25	4,141	2,880
캄보디아 농촌종합개발을 통한 평화마을 조성사업	1,000	'22-'26	854	2,912
캄보디아 건강형평성 및 보건의료 질 향상 프로그램 2차 사업	1,000	'22-'27	2,243	2,470
필리핀 GGGI 미마로파 낙후 농촌지역 기후복원력 강화 지원 사업	500	'19-'24	1,793	1,012
필리핀 팜팡가강 유역 수자원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2차 사업	580	'19-'24	1,374	1,972
필리핀 재해경감을 위한 메트로 마닐라 통합 홍수관리 체계 구축사업	1,270	'21-'26	2,857	1,813
필리핀 마카티시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구축사업	1,300	'22-'25	50	1,398
필리핀 기마라스주 지속가능한 스마트 수산양식장 구축 사업	1,000	'22-'26	50	1,481
필리핀 포스트 COVID-19 대응 청소년 생식보건 개선사업(UNFPA)	650	'22-'25	2,941	1,500
방글라데시 IOM 인신매매 통합대응 프로그램	586	'20-'24	1,694	1,696
방글라데시 차토그램 광역권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및 도시철도 건설 예비타당성조사사업	600	'22-'24	353	1,623
몽골 초중고등학교 급식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800	'22-'26	47	840
몽골 성과주의 확립을 위한 인사행정 역량강화사업	300	'22-'25	47	385
라오스 한-라 직업기술개발원 역량강화사업	585	'17-'23	500	518
라오스 남부 3개주 농촌개발 사업	900	'20-'25	1,667	1,650
라오스 남능강 유역의 효율적 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재해대응 역량강화사업	1,100	'20-'25	1,557	2,450
라오스 디지털혁신중소기업학과 설립 및 전문인력양성 기반 구축 사업	500	'22-'26	50	180

스리랑카 기술계 교사 양성 및 재교육 사업	1,495	'22-'25	2,320	2,617
스리랑카 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사업	700	'20-'24	100	100
네팔 박타푸르 취약지역의 빈곤층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및 의료인프라 개선사업	950	'22-'27	100	714
네팔 한국 귀환노동자 안정적 재정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 강화사업	800	'22-'28	50	1,037
파키스탄 SDG 6 달성을 위한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역량강화 사업	742	'19-'24	2,122	152
동티모르 젠더기반폭력 예방 및 대응 사업 (UN)	730	'20-'23	2,601	2,472
동티모르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강화 사업(WHO)	600	'22-'25	1,583	1,130
아프가니스탄 카불시 바르치 지역 식수개발사업	650	'14-'24	50	50
아프가니스탄 TVET 선도모델 구축 사업 (UNESCO)	1,000	'20-'24	383	50
한-메콩 생물다양성센터 건립 및 역량강화 사업	1,000	'21-'26	50	500
인도 직업기술교육 역량강화사업	200	'21-'23	1,034	563
가나 북부 2개주 포괄적 일차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1,200	'22-'27	1,850	1,714
가나 세무행정 현대화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220	'22-'24	50	636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강변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및 Sheger강 상류 수질 및 수변정화 사업	1,000	'21-'24	1,470	1,209
우간다 농산업 발전을 위한 청년 영농인 역량 강화 사업	500	'22-'26	50	1,500
우간다 고속도로 통합 매뉴얼 개발 및 주요 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750	'22-'25	50	2,000
알제리 사이버 보안센터 설립 사업	650	'19-'24	200	818
튀니지 산업재산권 공공행정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373	'22-'26	200	976
케냐 카지아도주 보건시스템 강화를 통한 모성 및 신생아 보건 개선 사업	605	'21-'26	1,770	1,870
수단 한-수 직업훈련원 역량 강화 사업	500	'20-'24	2,487	2,068
수단 소외열대질환(NTD) 퇴치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700	'20-'24	1,700	2,557
나이지리아 공립 초중학교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역량강화 사업	1,041	'21-'25	1,500	2,280
DR콩고 분쟁취약지역의 젠더기반폭력 예방과 통합지원을 통한 평화정착 사업 (UNDP, UNFPA)	860	'20-'26	1,500	2,000
DR콩고 킨샤사·키월루 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학습권 강화 및 사회통합 촉진 사업(UNICEF)	900	'21-'24	1,000	500
DR콩고 카사이성트랄 주 만성영양실조 예방 사업(WFP)	800	'22-'26	500	2,000
모잠비크 도로안전 시범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700	'20-'24	1,665	2,123
모잠비크 리콩고 강유역 홍수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	750	'21-'25	1,021	2,143

이집트 정부서비스청(GAGS) 공공 전자조달시스템 개선 사업	790	'22-'26	50	3,308
콜롬비아 WFP 분쟁 피해지역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권익 증진사업	450	'19-'24	475	128
콜롬비아 분쟁피해 2개 지역의 갈등 예방을 위한 평화구축 거버넌스 역량강화사업	640	'22-'26	1,470	1,613
콜롬비아 캐리비안 지역 농업 가치사슬 및 기술 역량강화 사업(UNDP)	940	'22-'25	1,983	1,975
볼리비아 라파스주 임상병리검사실체계 강화사업	700	'22-'26	265	1,819
아이티 UNDP 취약계층 여성역량강화 및 소득증진 사업	450	'18-'24	50	50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 설립사업	900	'22-'28	346	866
카리브해 해안리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백사장 침식 모니터링 및 조사사업	400	'17-'23	219	70
우즈베키스탄 질병부담 감감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사업	1,415	'22-'26	50	50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정보통신대학교 취창업 연계형 비즈니스 IT 교육 역량강화 사업	500	'22-'27	522	1,756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소아의를과대학교 교육 연구 역량강화 사업	500	'22-'27	225	1,200
요르단 제라시주 마스타바 지역 노후 상수도 관망 개선사업	913	'22-'26	100	710
이란 국립 직업훈련교사 훈련원 현대화사업	750	'17-'23	50	594
이라크 한-이라크 심장병 어린이 전문 병원 건립 사업	2,500	'20-'25	100	1,000
이라크 변압기 정비소 현대화 및 기술인력 역량강화 사업	500	'22-'26	100	2,000
팔레스타인 야타지역 교육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기술교육 고등학교 지원사업	650	'22-'27	108	936
키르기즈공화국 UNDP 소방구조 역량강화사업	770	'19-'23	109	750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2022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2023년도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가능성이 저조한 사업은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별 ODA 사업은 예측불가능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수원국과의 이견 등으로 기초협상이 지연되는 사업, 정정불안으로 중단·취소된 사업 등은 차년도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추진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 9월말 현재 집행률 1% 미만 사업(69개)의 집행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수원국과의 협의지연(4건), 사업자 선정지연(5건), 계획변경(2건), 정정불안 및 자연재해(12건), 사업 착수 준비(32건) 등의 사유로 사업착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년도(9월말 기준) 집행률 1% 미만 사업 예산 편성 내역]

집행부진 사유	주요 사례	(단위: 건, %)
		건수(비율)
수원국과의 협의지연	스리랑카 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수원국 주요 이해관계자 간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이견 발생 등으로 사업 착수 지연	4(5.8)
사업자 선정지연	캄보디아 농촌종합개발을 통한 평화마을 조성 사업, 현재 사업수행기관(PC) 선정 중	5(7.2)
계획변경 (추가조사 등 포함)	인도네시아 해안쓰레기 관리정책 역량강화 사업, 수원기관 측의 사업대상지 변경 및 사업 구성요소 변경 요청으로 연내 신규 사업대상지 조사 및 집행계획 수립	2(2.9)
수원국 정정불안 및 자연재해	아프가니스탄 카불시 바르치 지역 식수개발 사업 현지 장세 불안 상황 아래 사업 재개 여부 등 구체 지침 조만간 마련 예정	12(17.4)
사업 착수 준비	캄보디아 농촌종합개발을 통한 평화마을 조성사업, 2022년 신규사업으로 현재 수원국과의 협의의사록 체결 및 협의, 사업계획 수립, 사업수행기관 선정 등 사업착수 중	32(46.4)
기타	콜롬비아 WFP 분쟁 피해지역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권익 증진 사업, '22.10월 사업 진척도에 따라 용역비 지급 예정	14(20.3)

주: 2022년 종료사업은 제외함

자료: 외교부

약정금 지급일 미도래 등 2023년도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조한 사업 14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중 다수는 수원국과의 협의지연, 사업자 선정지연, 계획변경, 정정불안, 사업 착수 준비 등으로 사업착수가 되지 않아 차년도에도 사업일정이 순연되거나 당해년도 불용과다 등 집행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국제협력단은 2022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2023년도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스리랑카 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1억원)’ 사업의 경우 수원국 주요 이해관계자 간 이견으로 사업착수가 지연되면서 2022년 9월말 현재 사업 취소 절차 진행 중인 바, 2023년도 예산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4-3. 아프가니스탄 사업 예산 조정 필요

가. 현 황

아프가니스탄 사업⁵⁾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상원조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 3,3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아프가니스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38,982	39,766	33,066	60,450	20,684	52.0
아프가니스탄	623 ²⁾	433	433	100	△333	△76.9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2) 21년까지 아프가니스탄(ODA) 세부사업으로 수행하였으나, 22년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였다.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아프가니스탄 현지 정세 등을 고려하여 2023년도 예산안의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2023년에 아프가니스탄 사업으로 아프가니스탄 카불시 바르치 지역 식수개발 사업(5,000만원), 아프가니스탄 TVET 선도모델 구축 사업(UNESCO)(5,000만원) 등 2개 프로젝트(1억원)를 추진할 예정이다.

5) 코드: 일반회계 2433-402

[2023년도 아프가니스탄 사업 내역사업별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22					2023	
	본예산	전년도 이월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안	편성내역
아프가니스탄 카불시 바르치 지역 식수개발사업('14-'24/650만불)	50	587	637	0	0	50	직접지원/ 프로그램 (50)
아프가니스탄 TVET 선도모델 구축 사업 (UNESCO)('20-'24/1,000만불)	383	0	383	0	0	50	직접지원/ 프로그램 (50)
합계	433	587	1,020	0	0	100	-

주: 집행액은 2022년 8월말 기준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2022년 8월말 현재 아프가니스탄 카불시 바르치 지역 식수개발 내역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5억 8,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전액이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TVET 선도모델 구축 사업도 예산현액 전액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현지 정세 불안⁶⁾으로 인해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며,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이월은 불가능하여 이월액은 불용 처리할 예정이며, 2023년 예산안은 최소 유지·관리 비용 목적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사업은 전년대비 감액 편성되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 현지 정세 등을 고려하여 2023년도 예산안의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2021년 8월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한 후 아프가니스탄 현지 대사관은 폐쇄되었고, 2021년 11월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임시 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통일부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통일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남북협력기금으로 구성된다.

통일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405억 1,8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9억 9,500만원(11%)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0억 600만원, 남북협력기금 385억 1,200만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통일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21,72	1,673	1,673	2,006	333	19.9
- 일반회계	21,72	1,673	1,673	2,006	333	19.9
기 금	14,030	34,850	34,850	38,512	3,662	10.5
- 남북협력기금	14,030	34,850	34,850	38,512	3,662	10.5
합 계	16,202	36,523	36,523	40,518	3,995	11

자료: 통일부

통일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조 4,520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1억 8,900만원(△3%) 감액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187억 1,200만원, 남북협력기금 1조 2,333억 8,500만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통일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94,248	230,881	230,881	218,712	△12,169	△5.3
- 일반회계	194,248	230,881	230,881	218,712	△12,169	△5.3
기 금	33,517	1,271,405	1,271,405	1,233,385	△38,020	△3
- 남북협력기금	33,517	1,271,405	1,271,405	1,233,385	△38,020	△3
합 계	227,765	1,502,286	1,502,286	1,452,097	△50,189	△3

자료: 통일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통일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2023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며, 세입예산안은 20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300만원(19.9%) 증가하였다.

[2023년도 통일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1,72	1,673	1,673	2,006	333	19.9

자료: 통일부

2023년도 통일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187억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1억 6,900만원(3.7%) 감소하였다.

[2023년도 통일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94,248	330,881	329,911	318,712	△12,169	△3.7

자료: 통일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통일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남북협력기금으로만 구성된다.

2023년도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조 8,003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32억 6,000만원(15.6%) 증가하였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도래분 증가로 수입 지출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사업비는 전년 대비 2.9% 감액된 규모이다.

[2023년도 통일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남북협력기금	492,933	1,557,128	1,557,128	1,800,388	243,260	15.6

자료: 통일부

라.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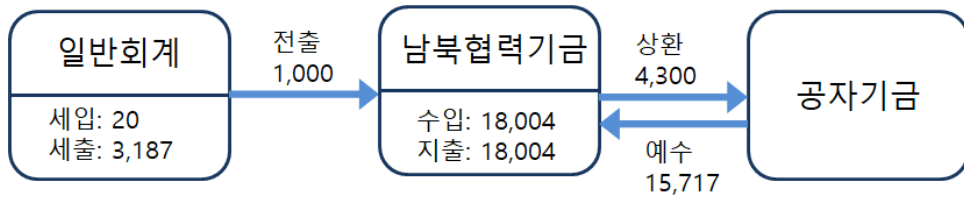
2023년도 예산안의 통일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으로 1,000억원이 전출된다.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1조 5,717억원을 예수받고, 다시 4,300억원을 원금 및 이자로 상환한다.

[2023년도 통일부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자료: 통일부

2023년도 통일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일반회계에서는 국내 최대 북한자료 보유기관인 ‘북한자료센터’를 ‘통일정보자료센터’로 확장·개관을 준비하기 위해 2023년도에 착공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예산을 증액(32억 4,000만원→106억 4,700만원) 편성하는 한편, 북한 경제연구 포럼 운영 사업을 정세분석 역량 강화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신규 편성(3억 5,000만원)하였다. ② 남북협력기금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사업인 방역·진단물품 제공, 방역·위생 교육 등을 위해 민생협력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보건의료협력 지원 사업을 51.1% 증액(954억 5,900만원→1,442억 4,400만원) 편성하였고,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적 북한 인권 증진 신규 내역사업을 편성(14억 5,400만원)하였다.

2023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통일부는 2020년부터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과 최근 코로나19 완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 경제연구 포럼 운영 사업에 편성된 북한 경제 연례 평가 및 북한경제 중장기 기초연구 수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은 기존 통일부가 수행중인 정책연구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한국은행 및 정부출연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과제와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 내역 사업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 사업은 북한 경제 분석·평가를 통해 정세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의 경제사회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인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의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보건의료협력증진 사업은 남북 관계 및 사업 수행 여건이 단기간에 해소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집행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51% 증액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 사업은 사업비를 지원할 국제기구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와 실질적인 개선 논의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예산 집행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동 사업의 교육 자료 개발, 인권자료 개발 및 인권 보고서 작성 사업은 통일부의 기존 사업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규사업 추진시 기존 사업의 예산 조정이나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경제교류협력보험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경험사업이 재개된 후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대규모의 보험금 지급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내외적 여건과 현실적인 지출소요를 반영하여 기금 계획액을 적정한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 수입 규모는 실제 상환가능성과는 별개로 단순히 원금상환일정 및 만기도래 여부에 따라 계획액을 전년대비 증액 편성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한 연체 및 징수불가한 금액을 파악하고 이를 회수 예상액에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입계획을 마련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신규로 편성된 세부사업은 없다.¹⁾

한편, 통일부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민생협력지원’ 사업, ‘공자예수원금상환’ 등 총 3개의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다.

[통일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2022 ¹⁾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개)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3,240	3,240	10,647	7,407	228.6
남북협력 기금 (2개)	민생협력지원	513,092	513,092	625,915	112,823	22.0
	공자예수 원금상환	105,500	105,500	430,000	324,500	307.6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국내 최대 북한자료 보유기관인 ‘북한자료센터’를 ‘통일정보자료센터’로 확장·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바, 2022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2023년도에 공사계약 및 착공 등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필요한 예산(부지매입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을 증액 편성하였다.

남북협력기금에서는 북한 영유아 등 지원, 감염병 등 보건의료, 산림·농축산·환경 협력, 인도지원·협력 체계 구축·지원을 위한 ‘민생협력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북한의 제도적 수용, 내재화 지원을 위해 유엔·비정부기구 등 다자협력과 남북인권협력을 통한 기술협력(국제인권 분야 조약 이행 관련 국

1)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2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한다.

가보고서 작성, 인권 교육·자문 등) 지원을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였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은 당초 상환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 탈북민 입국 인원 및 하나원 수료인원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가. 현 황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¹⁾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자활의지 제고를 위해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정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70억 2,400만원 감액된 209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14,823	28,005	28,005	20,981	△7,024	△25.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통일부는 2020년부터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과 최근 코로나19 완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정착 초기에 900만원을 지급하는 정착기본금 사업,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하는 주거지원금 사업,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착장려금 사업, 제공한 정보의 대가를 지급하는 보로금 사업, 취약한 상황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위한 가산금 사업,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사업으로 구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2337-301

성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 개요]

내역사업명	사업 목적 및 내용
정착기본금	■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교육생의 초기 자산 형성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900만원 지급(수료시 600만원, 분기별 3회 각 100만원)
주거지원금	■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정착장려금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장려금 지급
보로금	■ 북한이탈주민이 제공한 정보의 대가로 최대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산금	■ 취약한 상황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해 고령 가산금 한부모 가정아동보호 가산금 등을 지급
고용지원금	■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급여의 일부를 최장 4년간 지원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 재작성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방역을 위해 북한의 국경지대 감시·관리가 강화되고 중국 등 제3국 이동이 제한되면서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019년 1,047명에서 2020년 229명, 2021년 63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국인원 및 입·수료인원]

(단위: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9월
입국인원	1,397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63	19
입소인원	1,541	1,311	1,528	1,352	1,189	1,167	437	73	44
수료인원	1,735	1,297	1,444	1,367	1,111	1,371	538	87	30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23년도 예산안의 정착기본금과 주거지원금의 기준인원을 하나원 수료 기준 550명으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수료

인원 추이를 감안할 경우 하나원 수료 인원이 기준인원 수준인 550명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중국 등 제3국 이동 제한이 완화된다면 하나원 수료인원도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세부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안	편성사유
합 계	14,823	28,005	20,981	
①정착금기본금	921	5,081	3,721	* '21년, 1,000명, '22년, 770명, '23년, 550명 ¹⁾
②주거지원금	5,350	14,509	10,228	
③정착장려금	7,506	7,022	5,907	
④보로금	490	937	937	
⑤가산금	279	258	163	
⑥고용지원금	277	198	25	

주: 1) 기준인원 : '20년, 1,200명 21년, 1,000명, '22년, 770명, '23년, 550명

자료: 통일부

2020년 이후 정착기본금과 주거지원금의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면 각각 2020년 74.1%, 78.5%, 2021년 14.9%, 32.5% 2022년 9월 현재 3.7%, 10.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내역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0	정착기본금	6,372	6,372	6,372	4,723	74.1	1,649
	주거지원금	13,300	13,300	13,300	10,444	78.5	2,856
2021	정착기본금	6,186	6,186	6,161	921	14.9	5,240
	주거지원금	17,456	17,456	16,456	5,350	32.5	11,106
2022.9	정착기본금	5,081	5,081	5,081	190	3.7	4,891
	주거지원금	14,509	14,509	14,509	1,455	10.0	13,054

주: 2022.9 현재 정착기본금 수령인원 : 50명

자료: 통일부

따라서, 통일부는 2020년부터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과 최근 코로나19 완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정세분석 역량 강화 사업은¹⁾은 한반도정세 및 북한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북한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북한지역 위성 영상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 경제, 사회상 변화를 분석하며, 북한 및 남북관계, 통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신진학자를 발굴·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 6,300만원이 증액된 18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정세분석 역량 강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정세분석 역량 강화	1,245	1,483	1,459	1,846	363	24.5
북한 경제연구 포럼 운영	-	-	-	350	350	10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통일부

내역 사업인 북한 경제연구 포럼 운영 사업은 정부와 북한경제 연구자간 종합적 소통체계로서 북한경제 연구 포럼 운영, 북한경제에 대한 연례적 평가 및 북한경제의 구조적·심층적 분석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에 3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북한경제 연구자가 정례적 북한경제 평가를 공유하여 협업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북한경제 평가 보고서를 발간, 물가·환율 등 주요 북한경제지표의 정례적 조사를 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533-307

첫째, 북한 경제연구 포럼 운영 사업에 편성된 북한 경제 연례 평가 및 북한경제 중장기 기초연구 수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은 기존 통일부가 수행중인 정책연구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한국은행 및 정부출연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과제와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 내역 사업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도 북한 경제연구 포럼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비 목 (세목코드)	세부내용(산출내역)	금 액
일반용역비 (210-04)	■ 행사운영 위탁(포럼2회, 세미나 4회): 100 - 임차료 : 32, 사례비 : 40, 운영비 : 27	100
일반용역비 (260-01)	■ 주요 북한 경제지표조사 : 50	50
정책연구비 (260-02)	■ 북한경제 연례 평가 및 중장기 기초연구 수행: 200 - 북한경제 연례 평가(100), 중장기 기초연구(100)	200
합 계		350

자료: 통일부

북한 경제 연구 관련 사업은 통일부가 2022년 수행중인 다른 세부사업의 정책 연구과제인 ‘주요지표를 활용한 북한경제 평가’ 및 ‘북한 경제 분석을 위한 대체 데이터 발굴 및 활용방안 연구’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존 연구용역 사업을 활용하여 북한 경제연구 연구 포럼 운영 사업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 과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통일부 수행 북한경제 관련 정책연구과제 목록]

(단위: 만원)

연도	연구과제명	용역수행기관	예산
2022	주요지표를 활용한 북한경제 평가	한반도경제협력원	5,000
	북한 경제 분석을 위한 대체 데이터 발굴 및 활용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500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리고 통일부의 연구용역(260목)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매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북한경제지표조사 및 북한경제 연례 평가 연구용역을 위해 별도의 내역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4년간 통일부 연구용역(260목)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아전용등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9	5,271	5,271	90	448	5,809	4,971	85.6	409	429
2020	5,338	5,338	409	161	5,908	5,105	86.4	325	478
2021	11,618	11,618	325	409	12,352	9,041	73.2	1,469	1,842
2022.9	8,682	8,632	1,469	26	10,127	3,289	32.5	-	-
2023(안)	5,955	-	-	-	-	-	-	-	-

자료: 통일부

그리고 한국은행,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과제)과의 유사·중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은 북한 관련 주요 경제지표를 조사, 발표하고 있으며 자체 연구사업을 통해 북한경제전망, 실태평가 등을 수행 중이고, KDI는 경제연구실을 설치하여 매년 북한경제전망을 실시하고 월간 단위 북한경제리뷰 및 현안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통일연구원에서도 기본 연구사업, 수시연구로 북한 재정금융부문 연구 등 북한 경제 현황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 및 정부출연기관 수행 정책연구과제 목록]

용역수행기관	연구과제명
한국은행(경제연구원)	최근 5년(2017~2021)의 북한 경제 및 향후 전망
	북한 수출입단가 지수 측정 : 북중무역데이터를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체제에 관한 연구 : 실태와 평가
	북한의 장기경제성장률 추정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KDI 북한경제리뷰(월간)
	대북제재의 영향력과 북한의 경제적 미래
	2021 통계로 본 북한의 경제, 사회상
	2020/2021 The DPRK Economic Outlook(매년)
통일연구원 기본연구사업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매년 연구수행)	북한 재정금융 부문의 현황 분석
	북한 재정금융 부문의 제도 변화가 거시경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북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왜 실패했을까
	코로나19 충격과 북한경제

자료: 기관 홈페이지

따라서, 북한 경제연구 연구 포럼 운영 사업에 편성된 북한 경제 연례 평가 및 북한경제 중장기 기초연구 수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은 기존 통일부가 수행중인 정책연구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한국은행 및 정부출연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과제와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 내역 사업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북한 경제 분석·평가를 통해 정세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의 경제사회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인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의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의 경제·사회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

하는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통일부는 두 사업은 사업목적, 내용, 참여자 등이 차이가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과 북한경제연구 포럼 사업 비교]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	북한경제연구 포럼 사업
목적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 경제·사회 현황 분석	■북한경제 평가 및 심층분석
주요 내용	■기업수, 농·축·수산업, 무역업, 사경제 등, 주민 소득, 지출, 의식주 등	■북한경제연구 포럼, 북한경제 연례평가, 북한 경제지표 조사
수행 방법	■북한 이탈주민 설문조사 ■전문 조사원과 대면조사	■정부와 북한경제 연구자 간 포럼 및 세미나
결과 활용	■북한 경제사회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정세분석역량 강화	■북한 경제 연구 역량 강화 ■내실있는 북한경제 분석·평가 가능

자료: 통일부

다만, 북한 경제 분석·평가를 통해 정세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 경제사회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의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협력 증진지원 사업 및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 사업 예산 규모 조정 필요 등

가. 현 황

민생협력지원 사업¹⁾은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을 통해 통일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농축산 협력 및 산림복구, 환경·보건의료 분야 협력 등 민생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128억 2,300만원이 증액된 6,259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도 민생협력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민생협력지원	1,708	513,092	513,092	625,915	112,823	21.9
보건의료협력	199	95,459	95,459	144,244	48,785	51.1
협력적북한인권 증진지원	-	-	-	-	1,454	순증

주: 1)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통일부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남북협력기금 2141-402

3-1. 보건의료협력 증진지원 사업실적 및 집행여건을 감안한 감액 필요

가. 현 황

내역사업인 보건의료협력 사업은 북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등 민생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계획액은 전년대비 487억 8,500만원 증액된 1,442억 4,400만원으로 계획되었다.

[2023년도 보건의료협력 사업 세부 계획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민생협력지원	17,108	513,095	513,092	625,915	112,823	21.9
보건의료협력	199	95,459	95,459	144,244	48,785	51.1
보건의료 체계 지원	-	34,000	34,000	34,000	-	-
질병통제 체계 구축 지원	199	48,700	48,700	97,485	48,785	100.2
의료인력 교육 지원	-	8,500	8,500	8,500	-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	4,259	4,259	4,259	-	-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남북 관계 및 사업 수행 여건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집행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51% 증액은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이를 감안한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협력 사업은 보건의료 체계 지원, 질병통제 체계 구축 지원, 의료인력 교육 지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증액된 질병통제 체계 구축 지원 사업은 인도적 차원 대북지원 사업에 해당하고, 북한 지역의 감염병 예방·관리와 통제는 우리 국민의 건강 보장과 산업의 안정적 운영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는 재원 편성의 취지에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액된 487억 8,500만원의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보건의료협력 사업은 남북 간 합의로 구체화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 할 것이며, 북한의 협력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방역·진단물품 제공, 방역·위생 교육 등 기술협력 등을 준비 하기 위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3년도 보건의료협력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구 분	사업내용	유형	산출내역
보건의료 체계 지원	민간단체 대북 보건의료체계 지원사업 대상 기금지원	민간단체	전년 동
	국제기구 대북 보건의료체계 지원사업 대상 기금지원	국제기구	전년 동
	지자체 대북 보건의료체계 지원사업 대상 기금지원	지자체	전년 동
질병통제 체계 구축 지원	민간단체 질병통제체계 구축 지원사업 대상 기금지원	민간단체	-
	국제기구 질병통제체계 구축 지원사업 대상 기금지원	국제기구	-
	보건의료 협력 관련 전문지식 기반 연구용역	일반연구비	-
	지자체 대북 보건의료체계 지원사업 대상 기금지원	지자체	-
의료인력 교육 지원	민간단체 대북 의료인력 교육 지원사업 대상 기금지원	민간단체	전년 동
	국제기구 대북 의료인력 교육 지원사업 대상 기금지원	국제기구	전년 동
	지자체 대북 보건의료체계 지원사업 대상 기금지원	지자체	전년 동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민간단체	전년 동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북 보건의료협력 사업 관련 기금지원	민간단체	전년 동

자료: 통일부

그런데 북한 당국이 대외적 지원에 호의적이지 않고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향후 집행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재원의 증액 편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9년과 2021년에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해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사유로 증액을 했으나, 북한과의 협의가 되지 않아 집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증액 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최근 집행실적을 보면 2018년에는 전액 불용되었고, 2019년 이후 평균 집행률이 2.7%, 2022년 9월 현재 집행률은 0.1%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의료협력 사업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구 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018	보건의료 체계 지원	21,000	21,000	-	-	21,000	0	0.0	-	21,000
	질병통제 체계 구축 지원	45,000	45,000	-	-	45,000	0	0.0	-	45,000
	의료인력 교육 지원	2,200	2,200	-	-	2,200	0	0.0	-	2,200
	합계	68,200	68,200	-	-	68,200	0	0.0	-	68,200
2019	보건의료 체계 지원	21,000	21,000	-	-	21,000	3394	16.2	651	16,955
	질병통제 체계 구축 지원	45,000	45,000	-	-	45,000	191	0.4	82	44,727
	의료인력 교육 지원	2,200	2,200	-	-	2,200	0	0.0	-	2,20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4,259	4,259	-	-	4,259	1,438	33.8	104	2,717
	합계	72,459	72,459	-	-	72,459	5,023	6.9	837	66,599
2020	보건의료 체계 지원	21,000	21,000	651	-	21,651	549	2.5	-	21,102
	질병통제 체계 구축 지원	31,000	31,000	82	-	31,082	-	-	-	31,082
	의료인력 교육 지원	2,200	2,200	-	-	2,200	-	-	-	2,20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4,259	4,259	104	-	4,363	-	-	-	4,363
	합계	58,459	58,459	837	-	59,296	549	0.9	-	58,747
2021	보건의료 체계 지원	34,000	34,000	-	-	34,000	-	-	-	34,000
	질병통제 체계 구축 지원	49,700	49,700	-	-	49,700	199	0.4	-	49,501
	의료인력 교육 지원	7,500	7,500	-	-	7,500	-	-	-	7,50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4,259	4,259	-	-	4,259	-	-	-	4,259
	합계	95,459	95,459	-	-	95,459	-	0.2	-	95,260
2022.9	보건의료 체계 지원	34,000	34,000	-	-	34,000	-	-	-	-
	질병통제 체계 구축 지원	48,700	48,700	-	-	48,700	112	0.2	-	-
	의료인력 교육 지원	8,500	8,500	-	-	8,500	-	-	-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4,259	4,259	-	-	4,259	-	-	-	-
	합계	95,459	95,459	-	-	95,459	112	0.1	-	-

자료: 통일부

따라서 남북 관계 및 사업 수행 여건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집행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51% 증액은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2.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 지원 사업 유사·중복 사업 감당한 조정 필요

가. 현 황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 지원 사업은 유엔 등 국제기구, 국내외 NGO 등의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기술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에는 14억 5,400만원이 신규로 계획되었다.

[2023도 민생협력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민생협력지원	1,708	513,092	513,092	625,915	112,823	21.9
협력적북한인권 증진지원	-	-	-	1,454	1,454	순증

주: 1)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국제기구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와 실질적인 개선 논의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예산 집행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동 사업의 교육자료 개발, 인권자료 개발 및 인권 보고서 작성 사업은 통일부의 기존 사업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규사업 추진시 기존 사업의 예산 조정이나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국제사회와의 인권협력 증진과 인권교육, 기술협력 등 역량 강화를 위해 UN OHCHR(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제 인권 및 개발 협력 관련 국제기구 등에 지급하는 해외경상이전 사업이다.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	사업 내용	예산
■ 국제사회와의 인권협력 증진	조약기구에 제출할 인권 관련 보고서 작성, 조약기구 권고 이행 지원, 인권 및 법조인력 국제교류 지원	484
■ 인권교육, 기술협력 등 역량 강화	법령입안 자문, 교육훈련 자료 개발, 사법분야 기술협력, 학교 인권교육 자료 개발 지원	970
합 계		1,454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북한이 UN 등 다자메커니즘 하에서 비교적 호응하고 있는 UPR(보편적 정례인권 검토),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을 활용한 협력적 분야에서의 인권개선 노력을 병행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기구를 통한 사업은 국제기구의 요청과 협의를 거쳐 동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임에 비해, 동 사업은 해외 경상이전을 통해 동 사업을 수행할 국제기구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훈련 자료 개발, 학교 인권교육 자료개발지원 사업은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추진 사업에서 수행하는 콘텐츠, 참고자료 개발 사업과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의 북한의 인권실태 및 인권 침해 사례 조사기록, 북한 인권실태 파악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인권협력 증진을 위한 인권 관련 보고서 작성, 조약기구 권고 이행 지원, 인권 및 법조인력 국제교류 지원 등의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국제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북한인권 정책개발 및 북한인권 국제네트워크 구성 사업에서 실시하는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인권 관련 통일부 내 사업 및 국가인권위원회 사업 현황]

구분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 지원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추진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지원
목적	북한과 직접적 협력을 통한 북한의 자발적 인권개선 노력 견인	체계적인 북한인권 정책수립 및 추진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실태 및 구체적인 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기록,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파악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유엔 등 국제기구 등을 통한 국제공조 강화
주요 내용	•북한—국제사회/민간 협력을 통한 인권 기술협력 지원 (예: 법제도 개선 자문, UPR 및 조약기구 보고서 작성 지원, 국제 인권레짐 협력, 인권교육, 인권역량 강화 등 지원) •인권보고서 작성	• 정책 추진체계 운영 및 정책 개발 자문 • 민간협력을 통한 공감대확산, 국제사회 협력 • 콘텐츠, 참고 자료 개발 등	•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실태 및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기록 • 북한인권 실태 및 인권 기록에 관한 각종 국내외 문헌 자료와 정보의 수집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파악 •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자료 생산 및 공유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유엔인권사무소와 관련기관간 협력 강화 • 국제인권기구의 북한인권 분야 적용방안 마련을 위한 교류 • 북한인권 관련 국제협력 강화 •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자료집 제작 • 유엔 조약기구 및 UPR 북한보고서 작성
수행 방법	민간보조 (국제기구, INGO 등)	직접수행	직접 수행	직접 수행

구분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 지원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추진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지원
기대 효과	북한과 직접 협력 지원을 통해 ‘인권’ 분야 관여 기회 마련 및 북한의 인권 정책 변화 견인	정책 추진체계, 민관협력, 북한 인권 공감대 확산 등 체계적인 인권정책 추진에 기여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북한인권실태 국내외 설명 •남북인권 대화, 대북지원 시 기초자료 활용	•북한인권 관련 사회적 갈등 예방 •북한인권 관련 콘텐츠 발굴을 통한 북한인권 기록물 수집·관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1,454백만원 (‘23년 신규)	(일반회계) 380백만원(‘22년) 484백만원(‘23년)	(일반회계) 732백만원(22년) 736백만원(23년)	(일반회계) 188백만원(‘22년) 188백만원(‘23년)

자료: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 사업의 경우 국제기구를 통한 사업임에도 사업비를 지원할 국제기구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북한이 아직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와 실질적인 개선 논의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예산 집행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동 사업의 교육자료 개발, 인권자료 개발 및 인권 보고서 작성 사업은 통일부의 기존 사업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규사업 추진시 기존 사업의 예산 조정이나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¹⁾은 남북 당국 간 및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산의 고통을 해소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22억 300만원 감액된 180억 2,700만원이 계획되었다.

[2023년도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이산가족교류지원	2,280	20,230	20,230	18,027	△2,203	△10.8
이산가족교류활성화 기반조성사업	1,596	1,701	1,701	1,453	△248	△14.5

주: 1)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통일부는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예산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각 사업에 부합하는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이산가족교류활성화 기반조성, 이산가족 면회소 운영 중 이산가족교류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320-02) 및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된 4억 5,300만원을 제외한 예산액 175억 7,400만원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 국가가 조성 또는 재정상 원조하기 위해 반대 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적 급부인 보조금에 해당하는 민간경상보조(320-01)로 편성되었다.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남북협력기금 2140-403

[2023년도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 비목별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1 결산	2022		2023 계획안
		당초	수정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684	14,166	14,166	12,211
· 민간경상보조(320-01)	684	14,166	14,166	12,211
이산가족교류 활성화 기반조성	1,596	1,701	1,701	1,453
· 일반연구비(260-01)	-	-	-	200
· 민간경상보조(320-01)	1,526	1,450	1,450	1,00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70	251	251	253
이산가족 면회소 운영	-	4,363	4,363	4,363
· 민간경상보조(320-01)	-	4,363	4,363	4,363
합 계		20,230	20,230	18,027

자료: 통일부

이는 국가가 직접 추진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경우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²⁾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근거 법령상 위탁 대상³⁾으로 규정되지 않아 통일부가 직접 처리해야 할 사업의 예산도 대한적십자사에 보조금 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237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목)

- 국가가 직접 추진해야할 사업으로서 개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민간에 대행시키는 경우 제반 비용

3)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업무의 위탁)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신청 관련 업무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 업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전자 검사의 경우 통일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⁴⁾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⁵⁾하여 함에도 2023년 예산안에 보조사업(320-01)으로 편성하였다.

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유전자검사) ⑤ 통일부장관은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등)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1.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동의서 접수 및 검사대상물의 채취에 관한 업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2. 유전자검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국가기관 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3. 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보관·유지 및 폐기에 관한 업무(폐기 요청 및 폐기 결정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질병관리청장

5)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227

- 일반연구비(260-01) : 국가로부터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

[2023년도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편성비목	근거	적정비목
이산가족 상봉행사지원	대면상봉	5,925	민간경상보조 (320-01목)	§9	일반용역비 (210-14목)
	고향방문	2,736			
	화상상봉	3,550			
	합계	8,661	-	-	-
이산가족교류 활성화기반조성	민간교류 경비지원	40	민간경상보조 (320-01목)	§11	민간경상보조 (320-01목)
	민간교류 주선단체 지원	60		§12	
	대한적십자사업무 위탁	103	민간위탁 사업비 (320-02목)	§9	법정민간대행 사업비 (320-08목)
	서신 제작교환	150			
		300	민간경상보조 (320-01목)		
	해외이산가족 실태조사	200	일반연구비 (260-01목)	§6	일반연구비 (260-01목)
	유전자검사	600	민간경상보조 (320-01목)	§8의2	민간위탁사업비 (320-02목)
	합계	1,453	-	-	-
이산가족면회소 운영	이산가족면회소 유지 · 관리	3,863	민간경상보조 (320-01목)	§9	법정민간대행 사업비 (320-08목)
	이산가족면회사무소 운영	500			
	합계	4,363	-	-	-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 재작성

각 비목별로 업무 추진의 절차나 방식이 상이할 뿐 아니라 일정 기준에 따라 구분된 비목에 맞게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예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요소이므로, 통일부는 각 사업에 부합하는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¹⁾은 남북한 교역이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57억 2,500만원 감액된 42억 7,500만원이 계획되었다.

[2023도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경제교류협력보험	-	10,000	10,000	4,275	△5,725	△57.3

주: 1)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경협사업이 재개된 후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대규모의 보험금 지급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내외적 여건과 현실적인 지출소요를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액을 적정한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의 계획액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현행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상 가지급 비율 30%²⁾가 아닌, 향후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인 가지급 비율 50%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남북협력기금 3040-400

2)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26조(가지급금) 경협보험 보험금의 가지급금은 보험금액의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

[2023년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의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계획안	4,275	- 개성공단 중단 시 지급예상 보험금 3,347억원 × 가 지급비율 50%(개정고시(안)의 가 지급비율 50%를 감안) × 수령기업 비율 2.6% = 4,275

자료: 통일부

그런데 수령 기업 비율로 2022년도에는 5.9%를 적용하였으나, 2023년 계획안에서는 2.6%를 적용한 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경제교류협력보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개정안 관련 논의(가 지급비율 30%→50%)가 2019년부터 있었으나,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존의 보험금 청구권 또한 그 소멸시효³⁾가 2019년 2월 완성됨에 따라 향후 새로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보험금 지급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률 (C/A)	불용액
	당초	수정(A)						
2019	9,500	9,500	-	9,500	828	-	8.7	8,672
2020	4,750	4,750	-	4,750	-	-	-	4,750
2021	4,275	4,275	-	4,275	-	-	-	4,275
2022.9	10,000	10,000	-	10,000	-	-	-	

자료: 통일부

3)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단시일 내에 남북간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이 재개된 후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대규모의 보험금 지급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일부는 대내외적 여건과 현실적인 지출소요를 반영하여 계획액을 적정한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¹⁾는 경협·교역대출, 특별대출 및 개성공단운영대출 등 남북교류협력분야 융자금에 대한 원금 회수액으로, 2023년 계획액은 전년대비 76억 4,100만원이 증액된 182억 4,100만원을 계획하였다.

[2023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9,218	10,600	10,600	18,241	7,641	72.1

주: 1)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수입 규모는 실제 상환가능성과는 별개로 단순히 원금상환일정 및 만기도래 여부에 따라 계획액을 전년대비 증액 편성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한 연체 및 징수불가한 금액을 파악하고 이를 회수 예상액에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입계획을 마련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기타민간융자원금 회수 예상액을 전년대비 72.1%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융자금의 상환일정 및 만기도래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금 액	산출내역
2023계획안	18,241	산출내역(A+B+C+D): 18,241 ■ 일반교역대출 예상(A) : 461 ■ 일반경협대출 예상(B) : 6,534 ■ 개성공단운영대출 예상(C): 4,937 ■ 특별대출 예상(D): 6,308

자료: 통일부

그러나 최근 5년간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남북관계 및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원리금 상환유예로 2022년을 제외하고 계획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낮게 결정되고, 징수결정된 금액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들의 경영악화에 따른 연체 등으로 인하여 수납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최근 수납률은 감소 추세로 5년 동안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이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사업 편성 및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계획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B/C)	미수납액
2017	66,417	34,785	8,658	13.0	24.9	26,127
2018	53,084	30,744	7,905	14.9	25.7	22,839
2019	36,041	27,101	6,647	18.4	24.5	20,454
2020	62,143	32,555	10,552	17.0	32.4	22,003
2021	73,099	36,798	9,218	12.6	25.0	27,580
2022.8	10,600	32,094	4,513	42.6	14.1	-
2023계획안	18,241	-	-	-	-	-

자료: 통일부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경협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태에서 기업 손실 최소화 및 사업기반 유지 지원을 위해 남북경협 재개시까지 상환유예 조치를

실시 중이고,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연체된 금액이 1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사업 원리금상환 유예 현황]

(단위: 개사, 억원)

연 도	상환유예		연체	
	기 업	금 액	기 업	금 액
2019	268	1,232	9	38
2020	263	1,678	7	22
2021	247	2,353	7	53
2022.8	164	1,056	4	12

자료: 통일부

남북관계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상황, 남북교역·경협기업들의 경영상황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전년대비 수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상환가능성과는 별개로 단순히 원금상환일정 및 만기도래 여부에 따라 계획액을 전년대비 증액 편성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연체 및 징수불가한 금액을 파악하고 이를 회수 예상액에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입계획을 마련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현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5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과 동일하다.

[2023년도 예산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5	5	5	5	0	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338억 6,0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억 3,200만원(0.4%) 증가하였다.

[2023년도 예산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1,262	34,025	33,728	33,860	132	0.4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23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격년 회의방식 변화(2022년 지역회의 → 2023년 출범회의), ‘자문건의 기반시설’ 사업 종료 등으로 인해 자문회의운영 사업 예산이 감액(2022년 51.5억원 → 2023년 41.7억원)되었고, ②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지역평화통일준비 역량강화사업 규모 조정 등으로 자문위원 역량강화사업이 감액(2022년 29.3억원 → 2023년 28.7억원)되었고, ③ 공무원 시급 인상으로 인해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 예산이 증액(2022년 120.7억원 → 2023년 123.3억원)되었으며, ④ 특히 청소년들의 통일인식 제고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우호적 통일환경 조성 등을 위한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예산이 확대(2022년 45.1억원 → 2023년 48.9억원)되었다.

2023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타 위원회와 동시 개최되어 일부 비목이 중복 편성되거나 신규 구성 시에 개최실적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없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횟수에 따른 예산 규모 조정 필요

가. 현 황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사업¹⁾은 정책 자문·건의를 위한 법정위원회 운영 및 기반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자문회의 운영사업의 세부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억 1,200만원이 감액된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658	1,317	1,292	680	△612	△47.4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 분석의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타 위원회와 동시 개최되어 일부 비목이 중복 편성되거나 신규 구성 시에 개최실적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사업은 법정회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법정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송은혜 예산분석관(a79368@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031-300의 세부사업

[관련 법정위원회 현황]

구분	소집	대상	결과 보고	비고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	상임위원(500명)	의장	연1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상임위원장 승인)	분과위원 (10개×50명 내외)	의장	연4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50명)	의장	연4회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중 운영위원회는 연 4회 개최를 기준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운영위원 50명의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사업추진비 등 4,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 운영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운영위원회 운영 4,480만원
- (국내여비) 165만원×4회= 660만원
- (국외업무여비) 362.5만원× 4회= 1,450만원
- (사업추진비) 220만원×4회= 880만원
- (일반수용비) 372.5만원× 4회= 1,490만원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운영위원회의 연도별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상임위원회 혹은 국내출범회의 등 타 법정회의와 동일한 일자에 개최되고 있으며, 2022년에도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같은 날 병행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개최방식이 2023년도 계속될 경우 소요비용이 타 법정회의 예산으로 충당되어 일부 비목이 중복 편성되는 문제가 있다.

[연도별 운영위원회 개최 현황]

연도	병행 개최 내역	중복계상 예산
2018	운영위원회(4분기)-상임위원회 합동회의	겸임 자문위원(35명)의 국내외여비, 오찬비
2020	운영위원회(4분기)-상임위원회 합동회의	겸임 자문위원(35명)의 국내외여비, 오찬비
2021	국내출범회의-운영위원회 개최	운영위원(50명)의 국내외여비, 오찬비

주: 1. 운영위원회 직후 상임위원회가 연계 개최되었음
2. 국내출범회의 직후 운영위원회가 연계 개최되었음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외에도, 분과위원회의 경우 개최실적을 고려한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규정(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규정)」 제24조²⁾에 따르면, 분과위원회는 연 4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017년 자문회의 임기 개시일이 변경된(7.1.→9.1.) 이후 자문회의가 신규 구성되는 홀수년도에 개최실적이 연 3회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연도별 분과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회, 백만원)

연도	개최횟수	예산액	집행액
2018	4	368	353
2019	3	368	336
2020	4	368	356
2021	3	369	34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에 따라, 2019년도 및 2021년도의 경우 개최실적 감소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23년도 예산에 운영위원회 4회분 전액을 편성하기보다 연 1회 동일 일자에 개최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복 계상이 예상되는 편성 내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분과위원회의 과거 집행 사례를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규정」

제24조(개회) 분과위원회는 각 위원회 별로 매년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방위원회





국방부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국방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2개 특별회계(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및 2개 기금(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으로 구성된다.

국방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2조 6,065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4,624억원(21.6%)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149억원,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3,937억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6,120억원, 군인복지기금 6,183억원, 군인연금기금 7,676억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국방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5,537	7,974	7,974	12,206	4,232	53.1
- 일반회계	2,064	2,001	2,001	2,149	148	7.4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749	2,947	2,947	3,937	990	33.6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1,724	3,026	3,026	6,120	3,094	102.2
기 금	11,401	13,467	13,467	13,859	392	2.9
- 군인복지기금	4,159	5,974	5,974	6,183	209	3.5
- 군인연금기금	7,242	7,493	7,493	7,676	183	2.4
합 계	16,938	21,441	21,441	26,065	4,624	21.6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국방부

국방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1조 9,186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조 1,513억원(8.1%)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36조 7,169억원,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5,991억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1,424억원, 군인복지기금 6,137억원, 군인연금기금 3조 8,465억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국방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323,231	354,524	345,005	374,584	29,579	8.6
- 일반회계	316,923	346,953	337,434	367,169	20,216	5.8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4,228	6,242	6,242	5,991	△251	△4.0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2,080	1,329	1,329	1,424	95	7.2
기 금	40,520	42,668	42,668	44,602	1,934	4.5
- 군인복지기금	5,189	6,099	6,099	6,137	38	0.6
- 군인연금기금	35,331	36,569	36,569	38,465	1,896	5.2
합 계	363,751	397,192	387,673	419,186	31,513	8.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국방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국방부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1조 7,178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84억원(1.6%)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192억원,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6,027억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8,959억원이다.

[2023년도 국방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570	2,081	2,081	2,192	111	5.3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6,500	7,665	7,665	6,027	△1,638	△21.4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7,705	7,716	7,716	8,959	1,243	16.1
합 계	16,775	17,462	17,462	17,178	△284	△1.6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기준

자료: 국방부

국방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41조 6,075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조 1,018억원(8.1%)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0조 1,089억원,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6,027억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8,959억원이다.

[2023년도 국방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47,394	379,195	369,676	401,089	31,413	8.5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4,498	7,665	7,665	6,027	△1,638	△21.4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7,154	7,716	7,716	8,959	1,243	16.1
합 계	359,046	394,576	385,057	416,075	31,018	8.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기준

자료: 국방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국방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4조 7,340억원으로 전년 대비 △75억원(△0.2%) 감소하였다. 기금별로는 군인복지기금이 8,147억원, 군인연금기금 3조 9,193억원이다.

[2023년도 국방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변경(A)		B-A	(B-A)/A
군인복지기금	8,309	10,203	10,203	8,147	△2,056	△20.2
군인연금기금	36,488	37,212	37,212	39,193	1,981	5.3
합 계	44,797	47,415	47,415	47,340	△75	△0.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기준

자료: 국방부

라. 재정구조

2023년도 예산안의 국방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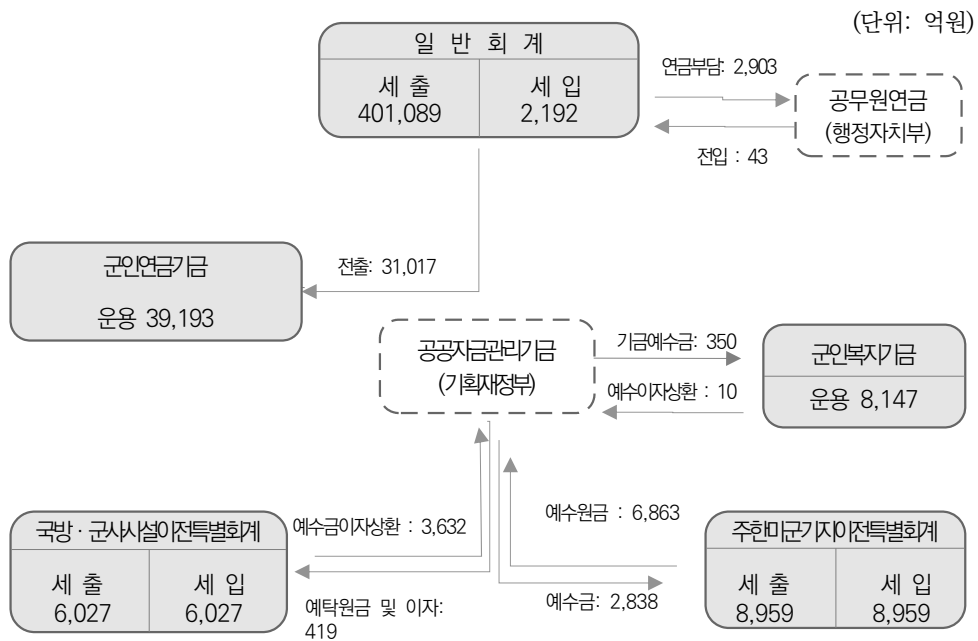
일반회계는 군인연금기금으로 3조 1,017억원, 공무원연금기금으로 2,903.4억원 전출하고,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 43.4억원이 전입된다.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3,632억원을 예탁하고, 예수원금 및 이자로 419억원을 받는다.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2,838억원을 예수하고, 6,863억원의 예수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다.

군인복지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350억원을 예수하고, 10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한다.

[2023회계연도 국방부 재정흐름도]



주: 총계기준
자료: 국방부

2023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강화 및 장병 의식주 획기적 개선을 위한 국정과제 소요를 집중 투자하는데 있다. 특히,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하여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병 수령액을 확대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현존 전력 운용의 필수 소요를 반영하였고, 미래전 수행역량을 갖춘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첨단 ICT 신기술 도입 및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에도 투자하였다.

2023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존 국방개혁 2.0 및 국방중기계획에서 군 구조 개편 등과 연계된 완전한 병 봉급 인상계획을 폐기하고, 이번 병 봉급을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군구조 개편 등 타 국방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국방분야 중장기 전략과 연계한 병 봉급 인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예산 산출내역에 적금 가입률 95%, 월 40만원 납입액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의 적금 가입률 및 월평균 가입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가입률, 가입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 밖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 BTL 사업 분석, 체력단련장 이용요금 현실화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 필요, 소음영향도 조사거부 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총 6개이며, 총계 기준 148억원 규모다.

국군복지단과 전라제주시설단이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신규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이관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안은 38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해병1사단 제1전차대대는 해병대 군수단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부대관리 및 포항시의 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이전요청에 따라 해병군수단 제1군수대대를 영내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14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다. 육군 부대개편 8차 사업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23년부터 1사단, 3사단, 6사단, 7군지단, 특수기동지원여단, 육군검찰단, 해체/이전부대 역사관 등 22개 부대를 미래 부대구조로 개편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95억 4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방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국군복지단 기본경비	586
	국군복지단 사업 및 지원비	3,174
	전라제주시설단 기본경비	40
	전라제주시설단 사업 및 지원비	45
국방군사시설 이전특별회계	해병1사단 제1전차대대	1,466
	육군 부대개편 8차	9,504
합 계		14,815

자료: 국방부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병내일준비지원’, ‘장비연료’, ‘전투장구 지원’ 사업 등 총 27개 사업이 있다.

[국방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¹⁾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 회계 (13개)	병내일준비지원	219,009	219,009	661,021	442,012	380
	정보체계	77,516	77,516	122,592	45,076	58.20
	장비연료	625,562	625,562	852,046	226,484	36.20
	주요기관용탄약	124	124	192	68	54.80
	병영생활관	188,503	133,404	355,251	166,748	88.50
	전투장구지원	26,257	26,257	51,170	24,913	94.90
	정책기획지원	4,743	4,693	6,640	1,897	40.00
	연합지휘통신체계사용	18,744	18,744	24,537	5,793	30.90
	부사관인건비	6318581	6308808	6674580	355,999	5.6
	병인건비	2332432	2332432	2852461	520,029	22.3
	군무원인건비	2375653	2371689	2510203	134,550	5.7
	기본급식	1553816	1666281	1716975	163,159	10.5
	기동장비유지	693,310	652,205	832,199	138,889	20.0
국방군사 시설이전 특별회계 (9개)	1군지사이전	78,368	78,368	92,680	14,312	18.3
	1급양대 이전	5,526	5,526	8,374	2,848	51.5
	부대개편 4차	525	525	48,463	47,938	49.7
	101정보통신단 이전	525	525	18,219	17,694	3,370.3
	부대개편 6차	11,819	11,819	136,214	124,395	338.6
	부대개편 7차	518	518	42,108	41,590	256.3
	군사안보지원학교	102	102	1,273	1,171	145.8
	군사350군사안보지원부대	380	380	454	74	345.1
	해병1군수대대	380	380	931	931	145.0
주한미군 기지이전 특별회계(2개)	연합토지관리계획	7,280	7,280	11,304	4,024	55.3
	환경조사 및 치유	64,524	64,524	81,252	16,728	25.9
군인 복지기금(1개)	복지시설운영	331,611	331,611	348,830	17,219	5.2
군인 연금기금 (2개)	퇴직급여	3218527	3218527	3434156	215,629	6.7
	여유자금운용	64,275	64,275	72,772	8,497	13.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기준

자료: 국방부

병사의 봉급 인상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로,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방부는 2023년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병사 봉급 150만원(병장 기준)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¹⁾의 지원금 약 55만원을 합하여 병사들에게 월 205만원의 소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병사 봉급의 단가를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여 편성하였으며,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에 대한 매칭지원율을 2배 이상 확대(2022년 33% → 2023년 71%)하여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

[2023~2025년 병사 봉급 및 매칭지원금 지급 계획]

(단위: 만원)

구 분	병(병장기준) 봉급 및 매칭지원금(최대)					
	2023년 (130만원)		2024년(165만원)		2025년(205만원)	
	봉급	매칭지원금	봉급	매칭지원금	봉급	매칭지원금
계	100	30	125	40	150	55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로, 지난 10년간 병 인건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병 인건비 예산 6,267억 7,500만원, 2014년은 전년대비 12.6% 증가한 7,061억 8,200만원이었으며,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각각 전년대비 16.6%, 18.3%, 7.5% 증가하였다.

최형수 예산분석관(jjaps@assembly.go.kr, 6788-4642)

1)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역사업으로 1% 이자지원 사업과 매칭지원금(또는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013~2017년도 병 인건비 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본예산	626,775	706,182(12.6)	823,367(16.6)	973,659(18.3)	1,047,205(7.5)

자료: 국방부

2018년도의 경우 전년대비 73.4% 증가한 1조 8,16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2019년은 전년대비 6.8% 감소한 1조 6,919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병사의 봉급 단가는 동일하나 병력수급이 줄어든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2020년은 전년대비 24.0% 증가한 2조 964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2021년 및 2022년도에 각각 전년대비 6.5%, 4.5% 증가한 2조 2,325억 8,700만원, 2조 3,324억 3,200만원이 편성되는 등 지난 10년간 병 인건비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8~2022년 병 인건비 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본예산	1,816,140(73.4)	1,691,963(△6.8)	2,096,479(24.0)	2,232,587(6.5)	2,332,432(4.5)

자료: 국방부

1-1. 국방분야 중장기 계획에 따른 완만한 병사 봉급 인상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2)에 따라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방운영체제의 혁신, 군구조개편 및 병영문화의 개선 등에 관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이하 “국방개혁 2.0”³⁾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기준연도로부터 5년간을 대상으로 국방중기계획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참고로, 국방개혁 2.0은 국방개혁 2.0의 기본개념, 군구조 개혁, 국방운영 개혁, 병영문화 개혁, 방위사업 개혁 및 소요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방중기계획(2022~2026)은 부대계획 분야, 방위력개선 분야 및 전력운영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국방개혁 2.0을 대체할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혁신 4.0)은 수립 중에 있다.

[국방개혁 2.0 및 국방중기계획(2022~2026) 목차]

국방개혁 2.0	국방중기계획(2022~2026)
제1장 국방개혁 2.0 기본개념	I. 개 요
제2장 군구조 개혁 추진계획	II. 분야별 주요내용
제3장 국방운영 개혁 추진계획	1. 부대계획분야
제4장 병영문화 개혁 추진계획	2. 방위력개선분야
제3절 장병 복지향상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3. 전력운영분야
제5장 방위사업 개혁 추진계획	⑤ 획기적 복무여건 개선으로 자랑스러운 군 육성
제6장 소요재원	

자료: 국방개혁 2.0 및 국방중기계획(요약)을 바탕으로 재작성

병사의 봉급 인상 계획과 관련하여, 국방개혁 2.0 및 국방중기계획은 ‘장병 복지향상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과제의 하위 주제로, 병사 봉급 인상을 단계별

2) 제5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운영체제의 혁신, 군구조개편 및 병영문화의 개선 등에 관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여야 한다.

3) 2018년부터 국방개혁 2.0(국방개혁기본계획)이 수립·시행 중이다.

로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방개혁 2.0과 국방중기계획에는 병사의 봉급 수준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⁴⁾의 50%까지 인상하고 이후에는 2025년까지 하사 1호봉⁵⁾의 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격년제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병사 봉급 인상계획]

(단위: 원)

구분	2018 (전년대비 ¹⁾ 88%인상)	2020 (18·19년대비 33%인상)	2022 (20·21년대비 25% 인상)
병장	405,700	540,892	676,115
상병	366,200	488,183	610,173
일병	331,300	441,618	552,023
이병	306,100	408,071	510,089

주: 1) 2017년 병장월급은 21만 6,000원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기존 국방개혁 2.0 및 국방중기계획에서 군 구조 개편 등과 연계된 완전한 병 봉급 인상계획을 폐기하고, 이번 병 봉급을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군구조 개편 등 타 국방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국방분야 중장기 전략과 연계한 병 봉급 인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격년제로 병사 봉급을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병사 봉급 인상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격년제로 인상해 오다가 2021년에 12.5%, 2022년에는 11.1%로 2022년 목표 인상을 25%를 나누어서 인상하였다.

4) 월 1,352,230원, 시간당 6,470원이다.

5)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2025년 하사 1호봉의 봉급은 192만 5,800원이다.

[2018~2022년 병사 봉급 실제 인상률 현황]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인상률	88	동결	33	12.5 (계획 동결)	11.1 (계획 25)

자료: 국방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따라 국방부는 기존 국방중기계획에 격년제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수정하여 2021~2025,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 2021년 및 2022년 인상률을 배분하여 반영하였다.

현재의 국방중기계획(2022~2026)은 2023년에 병사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을 유지하고, 하사봉급(1호봉⁶⁾)의 40%를 목표로 하며, 2024년에는 하사봉급의 45%, 2025년에는 하사봉급의 50% 수준으로 완만한 병사 봉급 인상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중기계획(2022~2026) 전력운영 분야 주요내용]

(단위: 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병사봉급	병장	608,500	676,100	726,100	841,400	962,900	991,800
	상병	549,200	610,200	655,300	759,400	869,100	895,200
	일병	496,900	552,100	592,900	687,000	786,200	809,800
	이병	459,100	510,100	547,800	634,800	726,500	748,300
전년대비인상률		12.5	11.1	7.4	15.9	14.4	3.0
17년 최저임금 대비		45	50	50	-	-	-
하사봉급(1호봉) 대비		-	-	40	45	50	50
소요재원(억원)		22,326	23,407	23,599	27,273	31,122	31,999

자료: 국방부

6)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2025년 하사 1호봉의 봉급은 192만 5,800원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2023년 병 인건비 예산의 봉급 단가를 병장 100만원(47.9%), 상병 80만원(31.1%), 일병 68만원(23.2%), 이병 60만원(17.6%)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기존의 완만한 인상 계획을 폐기하고 병사 봉급 인상분을 예산에 반영⁷⁾하였다.

[국방부 병사 봉급 단가 인상계획]

(단위: 원, %)

구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2022. 현재	676,100	610,200	552,100	510,100
2023	1,000,000(47.9)	800,000(31.1)	680,000(23.2)	600,000(17.6)
2024	1,250,000(25)	1,000,000(25)	800,000(17.6)	720,000(20)
2025	1,500,000(20)	1,200,000(20)	960,000(20)	864,000(20)

자료: 국방부

최근 몇 년 동안 연차적으로 병사 봉급을 상당 수준 인상하였고, 내년부터 매 청지원금의 추가 지원과 향후 5년간의 봉급 추가 인상은 그 동안 병사 봉급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고 실제 수혜 대상인 병사들에게 실효성과 형평성이 담보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병사 봉급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7)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2025년에 병사와 하사 간의 봉급 역전현상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병사 수령액 인상안 및 하사 기본급 비교(월기준)]

(단위: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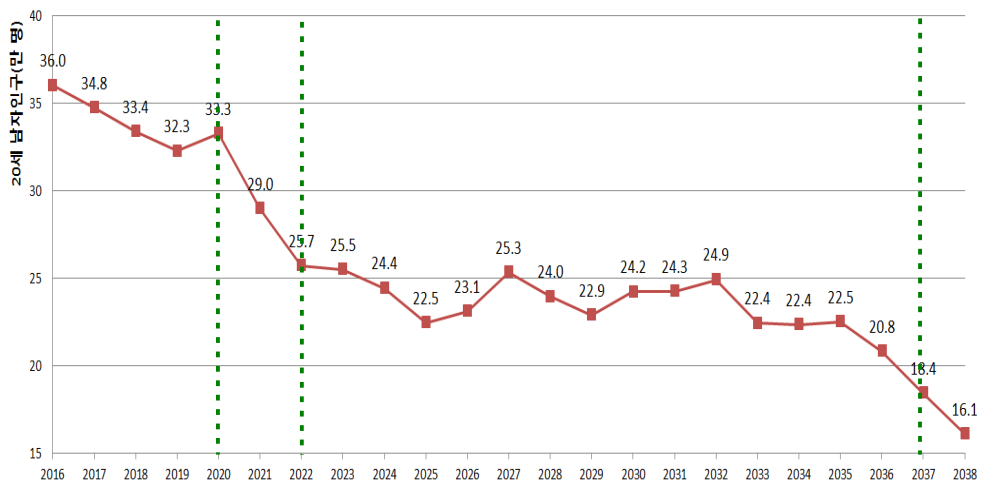
구분		2022	2023	2024	2025
병사 수령액	병사봉급 (병장 기준)	676	1,000(47.9)	1,250(25)	1,500(20)
	장병생활준비 금·청지원금	140	300	400	550
	소계	816	1,300	1,650	2,050
하사 기본급	하사 1호봉 ¹⁾	1,705	1,815	1,869	1,925

주: 1) 국방중기계획 22~26년

첫째, 급격한 인구 감소로 앞으로 50만 명의 군과 18개월의 징집병 복무기간은 유지가 어렵다는 문제⁸⁾가 있음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병역 제도 개편안을 구상해야 할 시점이므로, 병사 봉급 인상은 병력 감축을 비롯한 보다 종합적인 대책 속에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현재 20세 남자인구는 약 33.3만명이나, 2022년에는 25.7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37년에는 20만명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세 남자 인구 전망]



자료: 국방부

이에 ‘국방개혁 2.0’은 병역자원 부족을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작전·전투조직 중심의 국방인력구조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상비병력을 감축하고 전투·작전 숙련도가 높은 간부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군 인력구조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장기적인 군 인력구조 개편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병사 봉급 인상은 군 간부의 인력수급과 간부 계급구조 개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군 인력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8) 「2040 국방인력운영체계 설계방향」, 한국국방연구원

둘째, 병사 봉급 인상은 국방분야의 병력운영비 비중을 확대하고, 이는 전체 국방예산 중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바, 우리나라의 점증주의 예산편성의 특성상 향후 방위력개선투자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곤란하게 하게 할 수 있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투자의 비중이 69.4%, 30.6%에서 2026년 70.3%, 29.7%로 전력운영비의 비중이 방위력개선투자의 비중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병사 봉급 인상은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로 이는 전력운영비 증가로 이어져 방위력개선투자의 집중적인 투자를 더욱 곤란하게 할 수 있다.

[2022~2026년 국방 분야 부문별 지출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국방	546,112	571,268	595,135	617,592	638,430	4.0
전력운영비	379,195 (69.4)	401,089 (70.2)	416,442 (69.9)	433,537 (70.2)	448,853 (70.3)	4.3
방위력개선투자	166,917 (30.6)	170,179 (29.8)	178,693 (30.1)	184,055 (29.8)	189,577 (29.7)	3.2

주: 괄호 내 수치는 국방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 밖에 국방혁신 4.0이 수립 중인 상태에서 부대 개편 및 첨단전력화 등 타 국방분야의 계획 및 예산소요는 불가피하게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장기 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병사 봉급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국방 제 분야의 종합적 운영방향을 고려하여 병사 봉급 인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분야 중장기 전략에 기반한 병사 봉급 인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2. 초급간부와 병사의 봉급 차이 축소에 따른 군 간부 획득의 어려움

가. 현 황

국방부는 병사 봉급 인상을 위해 2023년 병 인건비 사업⁹⁾ 예산을 5,200억 2,900만원이 증액된 2조 8,524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병 인건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병 인건비	2,265,331	2,332,432	2,332,432	2,852,461	520,029	22.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군 간부 지원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병사의 봉급 인상은 군 간부와 병사의 봉급역전 현상 우려를 제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군 간부 획득의 어려움 및 사기저하를 심화시켜 군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 개편에 차질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학군사관후보생 및 학사사관후보생의 경쟁률을 살펴보면, 학사사관후보생의 경우 2017년 5.2:1의 경쟁률이 2021년 2.6:1의 경쟁률로, 학군사관후보생의 경우 3.6:1의 경쟁률에서 2021년 2.6:1의 경쟁률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학군사관후보생 및 학사 사관후보생 선발 경쟁률]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학 사	5.2 : 1	4.0 : 1	3.3 : 1	2.7 : 1	2.6 : 1
학 군	3.6 : 1	3.3 : 1	3.1 : 1	2.7 : 1	2.6 : 1

자료: 국방부

9) 코드: 일반회계 1101-153

또한, 부사관 운용률(정원 대비 현원)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중사 이상의 경우 95% 이상의 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하사의 경우 85.4%으로 타 부사관에 비해 낮은 편이며, 임기제 부사관¹⁰⁾의 경우에도 매년 운용률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83% 수준에 그치는 등 초급간부인 하사의 운용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부사관 운용률]

(단위: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원사	98.2	99.1	99.0	99.9	99.8
상사	95.8	95.6	109.3	99.7	96.0
중사	104.6	99.2	98.8	96.9	97.8
하사	81.1	81.4	84.9	84.3	85.4
임기제부사관	45.3	44.6	63.0	74.9	83.0

자료: 국방부

이렇게 군 간부 지원을 및 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병사 복무기간이 단축되었고, 병사 급여수준이 최근 상당부분 개선되어 군 간부에 지원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참고로, 병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인 반면, 학군장교(육군)는 2년 4개월, 학사장교는 3년¹¹⁾이다.

10) 「병역법」

제20조의2(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후 4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을 임기로 하는 부사관(이하 "임기제부사관"이라 한다)으로 복무할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2.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11)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장교 등은 6~17주의 후보생 교육을 거쳐 임용되므로 의무복무기간에 훈련기간이 제외되어 실제 복무기간은 더 길 수밖에 없다. 반면, 병사는 훈련기간에 의무기간에 포함되어 산정되고 있다.

[의무복무 기간 비교]

구 분	병	학군장교	학사장교
의무복무기간	육군·해병대 18개월	육군 2년 4개월	3년
	해군 20개월	해군·해병 2년	
	공군 21개월	공군 3년	

자료: 국방부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병사 봉급 인상 계획에 따라 병사들의 월 최대 수령액(봉급 및 매칭지원금을 합한 금액)은 2023년 130만원, 2025년 205만원인 반면, 국방중기계획(2022~2026)에 따라 하사 1호봉의 기본급은 2023년 181만원, 2025년까지 192만원으로, 2025년에는 병사의 수령액이 하사 1호봉의 기본급 보다 많아지는 봉급 역전 현상의 우려가 제기¹²⁾될 수 있다.

[병 수령액 인상안 및 하사 기본급 비교(월기준)]

(단위: 천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
병사 수령 액	병사봉급 (병장 기준)	676	1,000(47.9)	1,250(25)	1,500(20)
	장병내일준비 적금매칭지원 금	140	300	400	550
	소계	816	1,300	1,650	2,050
하사 기본 급	하사 1호봉 ¹⁾	1,705	1,815	1,869	1,925

주: 1) 국방중기계획 22~26년

더욱이 2023년 하위 군 간부의 봉급¹³⁾ 인상분은 부처공통 처우개선 1.7% 인상분만 반영되어, 하사 1호봉 기준으로 약 3만원 정도만 인상(약 173만원)될 예정으로 국방중기 계획의 181만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¹⁴⁾.

12) 언론보도(<https://www.asiae.co.kr/article/2022083115274465644>)

13) 공무원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에 따라 지급된다.

14) 이는 군 간부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전체 공무원 월급 인상분과 연계되어 그 인상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병사의 봉급은 병 인건비 증액으로 보다 쉽게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22년 기준 하사 1호봉의 급여는 기본급(170만원)과 수당(81만원)을 합하여 월 251만원 수준으로, 병사의 수령액보다 많아 봉급 역전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2년 기준 하사 1호봉의 월 251만원은 세전(稅前) 금액이고 세후 금액은 이보다 더 적을 것이며, 병사 봉급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군 간부의 수당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군 간부 및 병사의 보수 격차는 좁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병사의 봉급을 향후 2025년까지 인상하게 되면 군 간부 획득의 어려움이 가속화되어, 전술한 군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 개편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현직의 군 간부들의 사기저하¹⁵⁾가 심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국방부는 병사 봉급의 완만한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초급간부 획득을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5) 이와 관련하여, 「군인복지기본법」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군인의 복지실태조사(2021) 결과를 살펴보면, 보수분야에서 군 간부의 경우 소득 만족도의 응답 비율이 전년대비 8.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소득의 불만족 응답 비율이 전년대비 3.9%p 증가한 20.3%인 것으로 나타났다.

1-3. 병사 계급 간 봉급 차이의 적정성 확보 필요

가. 현 황

2023년 병 인건비 예산의 계급별 단가는 이병 60만원, 일병 68만원, 상병 80만원, 병장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병과 일병의 봉급 차이는 8만원, 일병과 상병 12만원, 상병과 병장 20만원으로, 이병과 병장 간의 봉급 차이는 40만원의 차이가 난다.

[병사 계급간의 봉급 인상 차이]

(단위: 천원, %)

구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23	600	680(+80)	800(+120)	1,000(+200)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병사 계급 간 봉급 차이가 부사관 및 위관장교 등 군내 구성원의 계급 간 봉급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병사 계급 간 봉급 차이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이등병에서 병장 간 봉급 차이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병 봉급을 100%로 봤을 때, 일병 108%, 상병 120%, 병장 133%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2023년의 경우 이병 봉급을 100%로 봤을 때, 일병 113%, 상병 133%, 병장 166%로 기존에 국방부가 유지했던 계급 간 봉급 차이 비율이 보다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병사 계급 간 봉급 차이]

(단위: 원, %)

구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18	306,100(100)	331,300(108)	366,200(120)	405,700(133)
2019	306,100(100)	331,300(108)	366,200(120)	405,700(133)
2020	408,100(100)	441,700(108)	488,200(120)	540,900(133)
2021	459,100(100)	496,900(108)	549,200(120)	608,500(133)
2022	510,100(100)	552,100(108)	610,200(120)	676,100(133)
2023	600,000(100)	680,000(113)	800,000(133)	1,000,000(166)

자료: 국방부

게다가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장 봉급을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4년과 2025년 이병과 병장 간의 봉급차이는 74%p로, 2023년의 66%p 보다 8%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계급별 병사 봉급 인상계획안]

(단위: 천원, %)

구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22	510(100)	552(108)	610(120)	676(133)
2023	600(100)	680(113)	800(133)	1,000(166)
2024	720(100)	800(111)	1,000(139)	1,250(174)
2025	864(100)	960(111)	1,200(139)	1,500(174)

자료: 국방부

반면, 부사관 및 위관급 장교의 기본급을 살펴보면, 부사관의 경우 2022년 기준 하사(1호봉) 170만원, 중사(1호봉) 179만원, 상사(1호봉) 222만원으로, 하사와 중사간의 기본급 차이는 5%p, 중사와 상사 25%p, 하사와 상사 30%p 차이가 난다.

위관급 장교의 경우 2022년 기준 소위(1호봉) 175만원, 중위(1호봉) 192만원, 대위(1호봉) 247만원으로, 소위와 중위 간의 기본급 차이는 9%p, 중위와 대위 32%p, 소위와 대위 41%p 차이가 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부사관 및 위관 장교의 계급 간 차이가 약 40%p인 반면, 국방부의 병사 봉급 인상 계획에서의 병사 간 봉급 차이는 약 70%p로 군 내

구성원 집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봉급 차이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병사 계급 간 봉급 차이의 적정성을 확보¹⁶⁾할 필요가 있다.

[군 간부의 기본급 비교]

(단위: 만원, %)

구 분	부사관(2022년 기준)			위관장교(2022년 기준)		
	하 사	중 사	상사	소 위	중위	대위
기본급	170.5 (100)	179.1 (105)	222 (130)	175.5 (100)	192 (109)	247.6 (141)

자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을 바탕으로 재작성

16) 한편, 부사관 및 장교들은 진급심사 시에 수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간에 따라 진급하게 되는 병의 진급구조와 다르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은 병사들이 전역 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병역의무이행자를 대상으로 이자 1%를 추가 지급하고, 적금 원리금총액의 71%를 국가가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병역의무대상자인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해경,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현역과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요원은 국방부 예산으로,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방부 소관 예산안은 현역 및 상근예비역 등을 위해 6,610억 2,100만원, 병무청은 각 부처 사회복무요원을 위해 1,078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병내일준비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국방부		병무청
	계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및 대체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합 계	692,119	661,021	107,822
이자지원금	11,847	11,050	1,651
매칭지원금	680,272	649,971	106,171

자료: 국방부, 병무청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18년 병 봉급이 인상됨에 따라, 2018년 8월에 처음 출시되었는 바, 병사들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 및 시중 14개 은행과 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5% 수준) 적금상품이다.

국민은행 등 14개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해당 은행들이 연 4~5%의 장병

내일준비적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이고, 가입한도는 은행별로 월 20만원, 개인별로 월 40만원이며, 이자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운영 현황]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협약은행	국민, 기업,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부산, 대구, 경남, 수협, 광주, 전북, 제주, 우체국 등 14개 은행
가입기간	· 육군·해군·해병·의경·상근예비역·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 6~18개월 · 공군: 6~22개월 · 사회복무요원: 6~21개월 · 대체복무요원: 6~24개월
가입한도	은행별 월 20만원, 개인별 월 최대 40만원
혜택	· 은행이자 최대 5% + 국가이자지원 1% · 이자소득비과세 · 매칭지원금: 원리금의 71%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향후, 국방부는 2025년까지 매칭지원율을 100%로 상향하고, 가입자의 납입한도액을 54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전역 시 최대 1,025만원(월 환산 5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022~2025년 매칭지원율 상향 계획]

(단위: 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매칭지원율	33%	71%	82%	100%
납입한도액	40	40	47	54
월별 지원금액 환산 (최대)	14.1	30	40	55
전역시 지원금 (최대)	254.5	541.2	733.4	1,025.9

자료: 국방부

또한, 국방부는 이를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2023년에는 병장기준 130만원(봉급 100만원, 매칭지원금 30만원), 2024년에는 165만원(봉급 125만원, 매칭지원금 40만원), 2025년에는 205만원(봉급 150만원, 매칭지원금 55만원)을 병사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2023~2025년 병 봉급 및 매칭지원금 지급 계획]

(단위: 만원)

구 분	병(병장기준) 봉급 및 매칭지원금(최대)					
	2023년 (130만원)		2024년(165만원)		2025년(205만원)	
	봉급	매칭지원금	봉급	매칭지원금	봉급	매칭지원금
계	100	30	125	40	150	55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1.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 등을 고려한 적정 예산편성 필요

가. 현 황

병내일준비지원 사업¹⁾은 복무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420억 1,200만원이 증액된 6,61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병내일준비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병내일준비지원	-	219,009	219,009	661,021	442,012	201.8
1% 이자지원	-	2,553	2,553	11,050	8,497	332.8
매칭지원금	-	216,456	216,456	649,971	433,515	200.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국방부

동 사업의 대상자별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현역 6,300억 1,600만원, 상근예비역 224억 1,600만원, 전환복무자 80억 7,400만원이다.

[병내일준비적금 대상자별 예산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요원
1% 이자지원	11,050	10,478	398	168	6
매칭지원금	649,971	619,538	22,018	7,906	509
합계	661,021	630,016	22,416	8,074	515

자료: 국방부

1) 코드: 일반회계 2242-304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의 예산 산출내역에 적금 가입률 95%, 월 40만원 납입액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의 적금 가입률이 각각 54%, 73% 수준이고, 월평균 가입액은 35만원 수준이므로 가입률, 가입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3년도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예산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1% 이자지원금은 2023년 전역예정인원 20만 4,077명과 개인별 최대 납입액 40만원에 18개월 납입기준 1% 이자지원금(57,000원)을 곱하여 전년대비 84억 9,700만원 증액된 1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다음, 매칭지원금 사업의 경우 2023년 전역예정인원 20만 4,077명, 매칭지원금 535만원을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2023년 월별 전역예정 병사를 기준으로 2022년에는 매칭지원금 월 14만원, 2023년에는 월 30만원²⁾을 지원하여 전년대비 4,335억 1,500만원 증액된 6,49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 가령, 월 40만원 납입 적금가입자가 2023년 6월 전역예정이면 2023년 6개월치 매칭지원금(30만원×6개월)과 2022년 12개월치 매칭지원금(2022년 매칭지원금 14만원×12개월)을 합한 금액 348만원을 전역시 일시에 받게 된다.

[2023년도 병내일준비지원 사업 예산 산출내역]

구 분	산출내역
1% 이자지원금	(2022) 2,553 → (2023 요구) 11,050백만원 · (산출) 11,050백만원 : '23년 전역예정 인원 (204,077명) 95% 가입 기준 × 57,000원 - 단가: 월 40만원 × 1% 이자지원금(18개월 납입기준) = 57,000원 - 인원: 만기해지(해지일이 전역일로 설정)시 지원하여 월별 전역예정 인원(현역·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요원)에서 가입률 95%를 고려하여 산정
매칭지원금	(2022) 216,456 → (2023 요구) 649,971백만원 · (산출) 재정지원금 : 754만원 × 71% = 535.34만원 - 국가재정에서 최대 535.34만원까지 추가 지원하여 사회복귀시 수령토록 지원 - 단가: 원금 720만원(40만×18회) + 이자 34만원(18개월간 단리 연 6%³⁾) = 754만원 - 인원: 월별 전역인원을 기준으로 '22년까지 지원금액은 14.1만원 × 12개월, '23년부터 월 30만원씩 누적하여 지원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되 복무기간 고려 18 ~ 21개월 도달시 일정금액 지원 * 월 40만원 납입, 가입률 95%, 연이율 6% 기준 (육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는 18개월 / 해군 20개월 / 공군 21개월로 적용)

자료: 국방부

그런데 실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가입대상자는 31만 9,792명이며 이 중 현역 29만 9,672명(99.5%), 상근예비역 8,010명(54.4%), 전환복무자 2,904명(97.3%) 및 대체복무요원 564명(73.2%) 등 31만 1,150명이 등 적금 상품에 가입하였다.

현역 및 전환복무자의 경우 각각 99.5%, 97.3%로 타 의무복무자에 비해 가입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상근예비역 및 대체복무요원은 가입률이 각각 54.4%, 73.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가입액은 35.5만원이며, 이 중 현역은 35.8만원, 상근예비역은 29.8만원, 전환복무자 및 대체복무요원은 각각 31.4만원, 24.4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월 평균 가입액은 현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장병내일준비 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시중은행 최대금리 5%에 정부 1% 이자지원금을 합쳐서 6%를 말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현황]

(단위: 명)

구 분	계(전체)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요원
인원현황	319,792	301,324	14,712	2,985	771
가입인원 (가입률)	311,150 (97.3%)	299,672 (99.5%)	8,010 (54.4%)	2,904 (97.3%)	564 (73.2%)
월평균 가입액	35.5만원 ¹⁾	35.8만원	29.8만원	31.4만원	24.4만원

주: 1) 총 월 가입금액 1,106억 6,700만원(현역 1,072억 3,000만원, 상근예비역 23억 8,800만원, 전환복무자 9억 1,100만원, 대체복무요원 1억 3,800만원)÷전체 가입인원(31만 1,150명)=35.5만원

1. 가입현황은 은행연합회에 협조하여 은행의 현황을 종합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현황과 다를 수 있음
2. 인원현황은 2022년 5월 기준, 가입인원 및 월평균 가입액은 2022년 8월 기준

자료: 국방부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은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축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청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예산편성 시 대상자의 가입률을 95%로 산정하여 편성하였으나, 2022년 8월 기준 현역 외의 상근예비역 및 대체복무요원의 가입률은 55%~73%로 저조하며, 가입액도 평균 35.5만원으로 편성 시 기준인 월 40만원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물론, 2023년도의 경우에는 매칭지원율이 71%로 상승함에 따라 미가입자의 적금 가입을 유인할 수 있는 효과는 있겠으나, 현역의 적금 가입률이 이미 99.5%로 높은 수준이고, 상근예비역은 일반 생활지역에서 인접하여 복무를 수행함에 따라 현역과 소비성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사업은 실제 소요에 비해 일부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가입률, 가입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편의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자는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요원(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이 대상이며, 14개 시중은행⁴⁾에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 창구(또는 은행직원 부대방문)에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

신병교육기관(훈련소, 신병교육대대 등)	자대전입 후
· 부대 인사담당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통합발급, 개인(훈련병) 분배 · 훈련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방문/가입안내 · 희망하는 은행에 가입신청서 작성, 가입자격확인서 제출	· 본인이 행정반의 ‘국방인사정보체계’에 들어가서 가입자격확인서 신청하고 부대 인사담당자 승인 후 출력 · 휴가, 외출시 가입자격확인서를 지참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장병내일준비 적금 비대면 가입이 현재 2개의 은행만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병사들이 폭 넓게 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금 가입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입자격 확인서의 발급기관은 가입대상에 따라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병무청으로 나뉘며, 이 중 현역 및 상근예비역인 경우 훈련소 또는 부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어 있다.

4)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및 우정사업본부 14곳이다.

[가입대상별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처]

가입 대상	발급 기관	발급신청 방법	발급문서 수령방법
현역병· 상근예비역	국방부	• (신병교육기관) 인사실무자가 일괄 발급한 후 개인에게 지급	• 일괄 발급 및 지급
		• (일반 부대) 본인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직접 신청 및 출력	• 본인 출력
의무경찰	경찰청	• 본인이 복무 중인 의경부대(행정반)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수령
의무 해양경찰	해양 경찰청	• 본인이 소속 해양경찰관서 의경지도관에게 신청	• 방문 수령
의무 소방원	소방청	• 본인이 소속 소방관서 의무소방담당자(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담당자 포함)에게 신청	• 방문 수령
사회 복무요원	병무청	• (온라인) 사회복무포털 (https://sbm.mma.go.kr)	(온라인) • 본인 출력
		• (오프라인) 복무기관 담당자	(오프라인) • 방문 수령

자료: 국방부 보도자료

그런데 적금기간을 18개월(육군 병사 기준)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입대와 동시에 적금에 가입하여야 하나, 훈련소의 경우 훈련병들이 신병교육기관에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받고 훈련소를 직접 방문한 은행직원을 통해 가입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⁵⁾이 있다.

또한, 자대배치 받은 병사의 경우에도 본인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직접신청을 하고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받아 휴가나 외출 시 은행에 직접방문하여 가입⁶⁾을 해야하는 불편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국방부는 군인공제회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발급권한을 공식 위임하여 현역 병사가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것을 나라사랑플랫폼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등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⁷⁾한

5) 언론보도(<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42>)

6) 가족들이 병사를 대신해 가입하는 대리신청제도가 있으나 가족들이 대리신청을 위해서도 가족관계증명서와 장병 신분증 그리고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7) 군인공제회는 2022년 3월 31일에 해당 은행, 금융결제원과 업무협약을 맺음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나라사랑카드 제휴은행인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만을 통해 서만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고 그 외 나머지 12개 시중은행은 여전히 대면으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남아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적금 가입 시 기존에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우대금리⁸⁾를 적용하는 것이 금융거래의 관행임을 고려할 때, 두 개의 은행만을 비대면으로 가입을 허용해주는 것은 병사들의 금융상품 선택 기회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방부는 2개의 은행 외에도 다른 시중은행에도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병사들이 폭넓게 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금 가입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터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해졌다.

8) 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의 경우, 주택청약우대이자율(0.3%), 신한카드 우대이자율(0.2%), 자동이체우대이자율(0.2)을 적용해준다(2022년 1월 1일 기준)

3-1. 지속적인 보전금 증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개요 및 현황

군인연금의 가입자는 「군인연금법」 제2조에 따라 현역 또는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으로 부사관, 준사관, 장교가 해당한다. 군인연금의 가입자로서 기여금 납부 의무와 연금수급 권리를 갖게 되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¹⁾

[군인연금 가입자]

구 분	주요 내용
가입자	현역 또는 소집하여 복무하는 군인
예외조항	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
가입자 수	2022년 8월 기준 193,704명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군인연금 기여금부담률은 국가와 군인이 각각 7%이다. 20년²⁾ 이상 복무하여야 연금수급권이 발생하고 연금지급률은 복무기간 1년 당 1.9%이다.

[군인연금제도 주요 항목(2022.8. 기준)]

기여금부담률	연금수급요건	연금지급률
7%	20년 이상 복무	1.9%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형수 예산분석관(jjaps@assembly.go.kr, 6788-4642)

- 1) 다만, 군인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사관, 병, 군간부후보생도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다.
- 2) 다만, 「군인연금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20년으로 한다는 간주규정이 있어 복무기간이 19년 6개월 이상이면 연금수급권이 발생한다.

군인연금 가입자 수는 2017년 182,000명에서 2022년 8월 기준 193,704명으로 1만 1,704명이 증가하였다. 가입자 수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계급별로 정원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운영되는 특징에서 기인한다.

[연도별 군인연금 가입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8	연평균 증가율
가입자 수	182,000	183,000	186,000	189,000	192,000	193,704	1.4

자료: 국방부

군인연금 수급자 수는 2017년 9만 1,071명에서 2022년 8월 기준 10만 764명으로 연평균 2.0% 증가하였다. 연금급여별 수급자 수는 퇴역연금이 2017년 6만 9,005명에서 2022년 8월 기준 7만 6,067명으로 연평균 2.0% 증가하고 유족연금은 2017년 2만 919명에서 2022년 8월 기준 2만 3,549명으로 연평균 2.2% 증가하였다. 상이연금은 2017년 1,147명에서 2022년 8월 기준 1,148명을 기록하여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 군인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8	연평균 증가율
수급자 수	퇴역연금	69,005	70,409	71,983	73,318	75,064	76,067	2.0
	유족연금	20,919	21,574	22,164	22,700	23,241	23,549	2.2
	상이연금	1,147	1,144	1,134	1,135	1,149	1,148	0.1
합 계		91,071	93,127	95,281	97,153	99,454	100,764	2.0

주: 2020년 분할연금 제도 신설로 퇴역연금 수급자 수에 분할연금 수급자 수 포함

자료: 국방부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군인연금기금을 통해 군인연금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다. 군인연금기금을 관장하는 국방부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계획을 확정한다.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은 군인이 납부하는 연금기여금, 기금적립금의 투자 수익으로 발생하는 재산수입, 국가가 납부하는 기여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등의 국가부담금과 보전금 등을 포함한 국고지원으로 구성되고, 지출은 퇴역연금 등 군인연금급여 지급, 군인연금 운영에 소요되는 기금운영비로 구성된다.

2023년 군인연금계획 수입 및 지출은 전년대비 1,980억 9,800만원이 증액된 3조 9,193억 1,100만원이다.

[군인연금 기금운용계획 구성]

(단위: 백만원)

항 목			내 용	2022년계획	2023년계획
수입	자체 수입	연금기여금	군인이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7.0%)	719,369	736,572
		재산수입	기금 적립금의 금융자산 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	14,275	14,772
		기 타	합산·연계반납금, 환수금 등 기타 경상이전수입	15,607	16,242
	국고지원		- 일반회계전입금 - 국가부담금: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기여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으로 구성	1,242,659	1,260,392
			보전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상이전수입 및 국가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국가에서 보전하는 금액	1,679,303	1,841,333
			정부예금회수	50,000	50,000
			계	3,721,213	3,919,311
지출	군인연금급여		- 군인연금법에 의해 지출하는 각종 연금 및 일시금 - 연금: 퇴역연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 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재난부조금	3,655,682	3,846,260
	기금운영비		군인연금 급여 지급 및 운영에 소요되는 제 경비	1,256	279
	여유자금운용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64,275	72,772
			계	3,721,213	3,919,311

자료: 국방부

군인연금 재정수지를 살펴보면, 지출은 2017년 3조 660억원에서 2021년 3조 5,331억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하였다. 수입의 증가율이 지출의 증가율보다 높지만, 규모의 차이로 재정수지 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1조 4,306억원의 적자가 연평균 3.1% 증가하여 2021년에는 1조 6,141억원을 기록하였다.

[연도별 군인연금 재정수지 현황(결산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202.8	연평균 증가율
수입(A)	16,354	17,227	18,073	18,894	19,190	13,527	4.1
지출(B)	30,660	32,208	33,646	34,482	35,331	24,963	3.6
재정수지(A - B)	△14,306	△14,980	△15,573	△15,588	△16,141	△11,436	3.1

주: 수입 기타항목은 사업외 수익(합산 및 연계 반납금, 환수금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자료: 국방부

군인연금기금 수입은 개인기여금, 국가부담금, 보전금, 그 밖의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개인기여금은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7%를 국가에 납부하게 된다.³⁾ 국가부담금⁴⁾은 연금지급을 위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부사관 이상인 군인의 보수예산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군인연금기금으로 전출하고 있다.⁵⁾

보전금은 군인연금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군인연금법」 제45조에 따라 수지차보전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2022도 수입 계획액은 3조 6,569억 3,800만원이며, 2022년 8월 기준 2조 5,358억 5,600만원이 수납되었다.

3) 「군인연금법」

제42조(기여금) ① 군인은 군인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기여금을 내야 하며, 그 납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4) 그 밖에도 국가부담금에는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전투가산부담금, 기금운영비 부담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타 수입에는 건물대여료, 이자수입 등이 포함된다.

5) 「군인연금법」 제44조(부담금) 제4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7퍼센트로 하며, 그 납부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연금기금 수입 결산 현황(2022.8.)]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결산	2021결산	2022년 8월			
			계획		수입액(B)	수납률(B/A)
			당초	수정(A)		
군인연금기금 수입	3,467,261	3,520,191	3,656,938	3,656,938	2,535,856	69.3
보전금	1,577,855	1,601,186	1,679,303	1,679,303	1,183,126	70.5

자료: 국방부

보전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결산 기준 보전금은 1조 6,012억원으로 전체 군인연금기금 수입의 45.5%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군인연금 수입에서 차지하는 보전금 비중이 2011년 52.0%에서 2021년 45.5%로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22년 군인연금 수입원천별 결산현황]

(단위: 억원, %)

연도	총수입	자체세입		국가부담금		보전금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1	23,560	3,521	15.0	7,773	33.0	12,266	52.0
2012	25,674	4,010	15.6	9,164	35.7	12,500	48.7
2013	27,436	4,855	17.7	8,889	32.4	13,692	49.9
2014	28,561	5,265	18.4	9,563	33.5	13,733	48.1
2015	28,556	5,229	18.3	9,896	34.6	13,431	47.1
2016	29,580	5,587	18.9	10,328	34.9	13,665	46.2
2017	31,011	5,965	19.2	10,389	33.5	14,657	47.3
2018	32,327	6,251	19.3	10,976	33.9	15,100	46.7
2019	33,813	6,536	19.3	11,537	34.1	15,740	46.5
2020	34,673	6,847	19.7	12,047	34.7	15,779	45.5
2021	35,202	7,020	19.9	12,170	34.6	16,012	45.5
2022.8	25,358	4,772	18.8	8,755	34.5	11,831	46.7
연평균 증가율	4.1	10.6		4.6		2.7	

주: 22년 8월 말 기준 실적은 기타재산이자수입 등 자체세입의 경우 연말에 일시에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군인연금의 보전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여금부담률 인상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군인연금의 경우 1973년,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기금고갈에 따른 보전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21년 기준 공무원연금의 보전금은 3조 2,400억원, 군인연금의 보전금은 1조 6,012억원 규모이다.

최근 5년간 보전금 규모를 보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2015년도 연금 개혁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전금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2020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고, 군인연금의 경우 동일 기간 동안 보전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보전금 규모가 군인연금에 비해 큰 것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가입자 수가 2021년 기준 126만 1,421명, 수급자 수는 59만 4,952명인 반면, 군인연금의 경우 2021년 기준 19만 2,000명, 수급자 수는 9만 9,454명으로 가입자 규모의 차이 등에서 기인한다.

[최근 5년간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보전금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무원연금	22,820	22,806	20,563	25,644	32,400
군인연금	14,657	15,100	15,740	15,779	16,012

자료: 인사혁신처, 국방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2015년 보험료율을 9%로 인상하고 급여 지급율을 1.7%까지 인하하는 제도개편을 실시하였다. 반면, 군인연금은 2013년 제도개편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였지만, 다른 직역연금보다 낮은 7%로 유지하고 있으며 급여 지급율에 대해서는 개편을 실시하지 않아 1.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직역연금 제도개편 현황]

구분	개편연도	주요내용
공무원연금	2015년	· 보험료율 인상(7.0→9%) · 급여 지급율 인하(1.9→1.7%) · 지급개시연령 단계적 상향(60세→65세))
군인연금	2013년	· 보험료율 인상(5.5→7%)
사학연금	2015년	· 보험료율 인상(7→9%) · 급여 지급율 인하(1.9→1.7%)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교육부

이에 따라 2021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9%이고, 군인연금의 기여율은 7%로, 평균 퇴직연금액은 공무원연금이 월 242만원인데 비하여 군인연금은 월 282만원이다⁶⁾.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제도 비교: 2021년 기준]

항목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기여율	9%	7%
평균 기여금(월)	44만원	29.7만원
평균 퇴직연금액(월)	242만원	282만원

자료: 공무원연금공단(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의 평균연금), 국방부

이와 관련하여,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군인연금 재정 전망에 따르면, 타 직역연금 개혁과 유사하게 단계별⁷⁾(8~9%)로 기여금부담률을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에는 2,193억원, 2040년에는 2,648억원, 2050년에는 3,142억원의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13년 7월 제도개편이후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 남북 대치의 안보상황 하에서 군 인적자원의 획득 및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주요 선진국의 군인연금의 경우 군복무 특수성을 인정하여 기여금 면제 등 타 공적연금과 우대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7) 2020년 8%, 2021년 8.25%, 2022년 8.5%, 2023년 8.75, 2024~2060년 9%

[재정전망 수지와 기여금부담률 인상에 따른 재정수지 비교: 2020~2050년]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재정전망 수지(A)	△17,217	△24,560	△31,074	△37,114	2.7
기여금부담률 인상에 따른 수지(B)	△16,325	△22,367	△28,426	△33,972	2.5
차이(=B-A)	892	2,193	2,648	3,142	4.3
재정전망 대비 정책 현안의 증가율(=B/A-1)	△5.2	△8.9	△8.5	△.5	△8.5

주: 1. 연평균 증가율 산정 기간: 재정전망 2018~2050년, 정책 현안 2020~2050년

2. 연평균 증가율은 기하평균이고, 재정전망 대비 정책 현안의 증가율에 대한 연평균은 산술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2021년 최근에 실시한 한국국방연구원의 군인연금 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 기여금부담률을 현행 7%에서 9%로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2035년에 보전금 규모가 4,500억원, 2045년 약 4,600억원, 2065년 약 4,700억원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정전망 수지와 기여금부담률 인상에 따른 재정수지 비교: 2020~2050년]

(단위: 천억원)

분석지표	구분	2021	2025	2035	2045	2055	2065
수입액	현행	15	15.7	15.8	16	16.2	16.3
	인상안	19.2	20.1	20.3	20.6	20.9	20.9
	차이	4.2	4.4	4.5	4.6	4.6	4.7
지출액	현행	32.9	35.4	40.3	45.2	49.5	53.7
	인상안	32.9	35.4	40.3	45.2	49.5	53.7
	차이	0	0	0	0	0	0
보전금	현행	17.8	19.7	24.5	29.2	33.2	37.4
	인상안	13.7	15.3	20	24.7	28.6	32.7
	차이	△4.2	△4.4	△4.5	△4.6	△4.6	△4.7

자료: 한국국방연구원, 군인연금제도 발전방향 연구(2021.11)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기여금부담률을 타 직역연금의 부담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면 이에 따른 재정수지의 개선 및 보전금 감소의 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는 바, 향후 국방부는 기여금부담률 인상 외에도 지급률 인하 등 보전금 규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군인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3-2. 잉여 보전금에 대해 정산하는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보전금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 지출을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부족액을 보전하는 것이지만, 두 연금 간 보전금 산정 및 정산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보전금 산정시 기금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수입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군인연금은 기금운용수익금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보전금은 보험료 수입 등 기금수입에서 연금급여 등 지출을 차감하여 그 부족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산정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모두 책임준비금 적립을 위해 기금운용수익의 사용을 제한하였으나, 공무원연금의 경우 보전금 절감을 위해 기금운용수익의 일부를 보전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21조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보전금 산정시 기금수입에 기금운용수익금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군인연금의 경우 「군인연금법」 제45조를 근거로 보전금 산정 시 기금수입에 기금운용수익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정산 시에도 보전금을 과소추계한 경우 차차년도에 이를 보전해주고, 과다추계한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고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8) 2013년 안전행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운용수익을 반씩 나누어 절반은 공단에 적자 보전으로 전입하고 절반은 지불준비금으로 기금에 적립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지적하였다.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보전금 산정기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산정	산정 기준	- 경상비지출(연금지급금+기금운영비) - 경상비수입 (경상이전수입+국가부담금+ 기금운용수익금) - 기금운용수익금= [기금운용수익 - (유형자산평가이익+장기 유가증권평가손익)] × 전입률⁹⁾	경상비지출 (연금지급금+기금운영비) - 경상비수입 (경상이전수입+국가부담금)
	법적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21조 제2항 및 제71조 제8항¹⁰⁾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인사처 지침	「군인연금법」 제45조 ¹¹⁾
정산	정산 방법	보전금을 과소추계하여 부족할 경우 차차년도 (원금) 정산, 과다추계하였을 경우 기금으로 적립하고 차차년도에 적게 받음	보전금을 과소추계하여 부족할 경우 차차년도 (원금) 정산, 과다추계하였을 경우 기금으로 적립(정산하지 않음)
	법적 근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7조 ¹²⁾	「군인연금법」 제48조 ¹³⁾

자료: 인사혁신처, 국방부

9) 기금운용수익금 중 기금수입 포함 비율은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에 따라 0~50%이다.

10) 「공무원연금법」

제21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 수입

라.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②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공무원연금법」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⑧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연금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1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보전금에 충당할 수 있다.

11) 「군인연금법」 제45조(보전금)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1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② 법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나. 분석의견

공무원연금 사례와 「군인연금법」 제45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전금의 잉여금 부분에 대해 정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21년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3조 2,576억원이며, 이 중 기금운용수익금 3,463억원이 수입에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연금 보전금 중 기금운용수익금]

(단위: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보전금	22,820	22,806	20,563	25,644	32,400	32,576
기금운용수익금	1,002	0	2,508	0	992	3,463

주: 기금운용수익금은 기금운용수익 중 일부를 보전금에 충당한 금액임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로 한다.

1. 해당 연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업무처리에 드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급여총액"이라 한다)의 지출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2. 전전년도의 기여금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전전년도의 기여금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보다 부족한 금액

13) 「군인연금법」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국가는 군인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에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부족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되었을 때
2. 전역자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청구자의 수가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의 예상인원을 초과하였을 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책임준비금은 다음다음 연도 보전금에 반영하여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군인연금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군인연금의 보전금 산정 시 기금은 용수익을 수입에 반영하지 않고 있고, 보전금이 남을 경우 결산상 잉여금을 책임준비금으로 간주하여 군인연금기금에 적립하고 있다.¹⁴⁾ 군인연금이 2017~2020년 동안 추가로 더 지원받은 보전금은 694억원 규모이다.

[군인연금 국고보전금 계획 및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 및 집행	실집행		결산상 잉여금
		금액	실집행률	
2017	1,452,326	1,430,692	98.5	21,634
2018	1,510,000	1,497,990	99.2	12,010
2019	1,574,008	1,557,299	98.9	16,709
2020	1,577,855	1,558,745	98.8	19,110
2021	1,601,186	1,614,047	100.8	△12,861
2022.8.	1,679,303	1,183,126	70.5	39,589

주: 현재 결산상 잉여금(당기 수지)는 8월말 기준이므로 연말까지 지출액 증가 예상에 따라 감소될 것으로 보임.

자료: 국방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결산상 잉여금(아래표 잔액)은 각각 216억원, 120억원, 167억원, 191억원 규모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기금에 적립되어 금융자산 등에 투자되었다. 다만 2021년의 경우에만 연금급여 부족분으로 기금 적립금에서 약 129억원이 집행되었다.

14) 보전금을 과소 편성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차차년도에도 부족액만큼 더 받는다. 2021년 128억원이 부족했으며 정부 감액기조로 인해 이 중 80억만이 2023년도 예산 요구 시 정부안에 반영되었다.

[최근 5년간 군인연금 자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8
경상수입 등 (a)	16,353	17,227	18,073	18,894	19,190	13,527
보전금(b)	14,523	15,100	15,740	15,779	16,012	11,831
총수입 (a+b=c)	30,876	32,327	33,813	34,673	35,202	25,358
총지출(d)	30,660	32,207	33,646	34,482	35,331	24,963
잔액 (c-d=e)	216	120	167	191	△129	395
자산 합계 (g=h+i)	11,676	11,623	12,444	13,017	13,483	13,492
금융자산 (h)	8,889	8,846	9,686	10,269	10,523	10,532
부동산 자산 등(i)	2,787	2,777	2,758	2,748	2,960	2,960
자산 평가이익	295	132	668	398	622	444

주: 자산 현황은 기말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방부

결산상 잉여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1960년도 제도 도입 시기부터 6.25전쟁 등으로 연금수급자가 발생하였으며 이후에도 IMF 구제금융 시기 이후의 기금적립금 사용 후 미보전 등으로 기금의 고갈은 더욱 심화됨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2016년에 군인연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책임준비금으로서 최소한 6개월분의 연금지출액이 적립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¹⁵⁾ 국방부는 연금지급금의 6개월분(1조 7,663억 6,000만원¹⁶⁾) 이상이 적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향후 6개월분 달성한 후에 결산잉여금의 규모를 감안한 보전금 규모 조정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15) 한국사회보험연구소, 「군인연금기금 책임준비금의 적정 규모 기준 설정 연구」, 2016

16) 2021년 기준 군인연금 지출액은 3조 5,327억 2,000만원으로 월평균 지출액은 2,943억 9,300만원이다.

그러나, 「군인연금법」 제45조는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전금이 남을 경우 정산하는 것이 법 취지에 타당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법 취지에 따라 보전금의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보전금 예산편성 시 정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¹⁷⁾

17) 전술한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보전금은 전전년도의 기여금·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제외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나, 「군인연금법」 및 시행령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국방부 BTL 사업 분석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¹⁾은 기존에 국가재정으로 건설·운영해 왔던 도로·철도·항만 및 학교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²⁾의 한 종류이다.

그러므로 학교·병원·군 병영생활관 등 수익성이 낮아 사용료 징수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기 곤란한 시설의 경우 BTL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BTL은 민간의 수요위험을 정부가 부담하게 되므로, 시설비·임대료에 대한 정부지급금 부담이 발생한다.

지급금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는 매년 다음 연도에 실시할 BTL 사업의 총한도액과 시설별 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받도록 하고 있다.³⁾

국방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군 병영생활관, 관사·간부숙소 및 교육시설 등 군주거시설 신축에 BTL 방식을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3~2022년까지 국방부는 BTL 사업에 총 1조 2,607억원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고, 고시사업수와 실시협약수는 21개, 운영사업수는 1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형수 예산분석관(jjaps@assembly.go.kr, 6788-4642)

1) BTL은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하고, 준공 후 시설 소유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Transfer)하되, 민간이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임대료(Lease)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2)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서 투자비 회수방법에 따라 크게 6가지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이 대표적이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국방부 소관 군주거시설 BTL사업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개)

구분	한도액	고시액	민간사업비	민간투자비	고시사업수	실시사업수	운영사업수
2013	244,500	211,700	168,131	173,127	5	5	5
2014	-	-	-	-	-	-	-
2015	90,900	90,900	87,796	94,094	2	2	2
2016	248,500	224,000	196,714	215,482	4	4	4
2017	133,480	128,560	124,838	136,048	2	2	2
2018	181,400	149,710	156,862	171,664	3	3	3
2019	43,400	41,418	-	-	1	1	-
2020	244,100	238,200	-	-	4	4	-
2021	-	-	-	-	-	-	-
2022	74,500	-	-	-	-	-	-
계	1,207,800	1,084,488	734,341	790,415	21	21	16

주: 1. 한도액은 국회 제출 한도액임.

2. 민간사업비는 공사비이고, 민간투자비는 공사비에 건설이자와 GDP디플레이터가 포함된 금액임.

자료 : 국방부

국방부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현황을 살펴보면, 향후 2023년도 5,805억원, 2024년도 5,820억원, 2025년도 5,998억원 등 2028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소관 군주거시설 BTL사업 정부지급금 향후소요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군 주거 시설	병영생활관	2,696	2,849	2,858	3,030	3,093	3,195	3,241
	관사	2,087	2,146	2,149	2,152	2,155	2,177	2,322
	간부숙소	769	810	813	816	879	918	1,103
	소계	5,552	5,805	5,820	5,998	6,127	6,290	6,666

자료 : 국방부

1-1. BTL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당위성 입증 강화 필요

가. 현 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6항 및 KDI의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는 경제적 분석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을 소관부처의 '정책적 타당성 판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다만, 세부요령은 정책적 타당성 판단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사업추진의 법적근거·필요성, 수요추정·규모산정의 근거, 사업의 기대효과, 재원조달 가능성, 추진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6항]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적격성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사업이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가 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적·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1. 경제성 분석
2. 정책적 필요성 분석
3.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BTL 사업의 정책적 분석에서 법적 근거와 정책적 당위성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을 뿐 수요추정 및 사업규모의 계량적 근거나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정책적 분석을 내실있게 수행하여 BTL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당위성의 입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3년에 한도액안이 편성된 국방부 8개 모든 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타면제사업(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에 해당되어 별도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한도액을 제출하였다.

한편, 8개 사업 모두 정책적 분석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와 정책적 당위성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을 뿐 수요추정 및 사업규모의 계량적 근거나 재원 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실제 재원조달 가능성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2023년 육군 철원 간부숙소 BTL 사업에 대한 정책적 분석 검토의견으로 사업의 필요성, 기존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정성, 사업의 기대효과 등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2023년 육군 철원 간부숙소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정책적 분석에 대한 검토의견」 일부]

구 분	주요내용
사업의 필요성	(검토의견) 주무관청은 대상시설의 수요 추정 및 시설규모 산정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추가자료 등을 기초로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할 필요 (추후 조치사항) 대상시설의 선정 및 수요는 각 군의 수요제기 현장을 방문하여 대관협의 등 건축가능 여부 확인 등
기존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성	(검토의견) 기존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성 분석에 관한 분석을 보완할 필요 (추후 조치사항)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사용연한 정도와 재활용 여부 및 안전진단 결과 등 안전성에 대해 검토 완료
사업의 기대효과	(검토의견) 정량적·정성적 효과 및 이에 대한 상세한 근거자료 보완할 필요 (추후 조치사항) 장병주거 및 생활여건의 개선으로 전투력 향상 기여 등에 대한 근거자료 보완 완료
재원조달가능성	(검토의견) 주무관청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 분석내용을 보완할 필요 (추후 조치사항) 향후 정부지급금 추계를 산정하여 예측한 결과 국방예산대비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완 완료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검토의견) 구체적인 상위계획 및 해당 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완할 필요 (추후 조치사항)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시설예산 획득·편성 전망 등의 정책을 검토한 후에 부합한다는 근거자료 보완 완료

특수평가 항목	(검토의견) 주무관청은 특수평가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으나, 본 사업추진과 관련된 특수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 (추후 조치사항) 특수평가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어 별도로 검토하지 않음
---------	--

자료 : 국방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상기 검토의견에 대해 국방부는 추후에 조치사항을 완료하였으나, 이전에도 동 사안에 대해 국회에서 지적⁴⁾한 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는 BTL 사업에 대한 정책적 분석을 형식적으로 수행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요추정, 사업규모의 계량적 근거 및 자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BTL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당위성의 입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9년 임대형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검토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11.)

1-2. BTL사업의 민간투자 적격성 기준 조정 필요

가. 현 황

2023년도 국방부 BTL사업의 한도액안은 5,315억원으로 관사 870세대, 간부 숙소 1,520실, 교육시설 6동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지역은 서울·인천·논산·대전·전남·장성 지역과 강원도 화천·철원지역으로 구분된다.

2023년 BTL 한도액안은 5,315억원은 2023년도 국방부 예산안 57조 1,268억원의 0.93%에 해당한다.

[2023년도 군주거시설 BTL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사업위치 : 서울·인천·대전·논산·장성·철원·화천 총사업비 : 5,315억원 사업규모 : 관사 870세대, 간부숙소 1,520실, 교육시설 6동 사업기간 : 2023 ~ 2027년(예정, 추가사업 고려 중), 정책에 따라 유동적임

자료: 국방부

[2023년도 국방부 소관 군주거시설 BTL사업 상세 내역]

(단위: 억원, m³)

구 분	한도액	지역	동별 건축연면적	건축물
육사 태릉 교육시설	730	서울	4,485/13,207/3,914	교육관 1동 교육생숙소 1동 다목적체육관 1동
장성 교육시설	480	장성	7,110/3,102/7,380	기갑특기병생활관 1동 화생방특기병생활관 1동 공병특기병생활관 1동
화천 관사/간부숙소	463	화천	8,936/7,287	관사 90세대 간부숙소 190실
화천 간부숙소	903	화천	27,608	간부숙소 720실
부평 관사	936	인천	42,700	관사 360세대
논산 관사	569	논산	26,310	관사 220세대
철원 간부숙소	805	철원	24,662	간부숙소 610실
유성 관사	429	대전	19,763	관사 200세대
계	5,315		195,924	관사 870세대, 간부숙소 1,520실 등

자료 : 국방부

나. 분석의견

VfM 재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정지출 절감 측면에서 2023년 BTL 한도액안 8개 사업들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VfM 분석 결과 외에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BTL 사업별로 한도액 승인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기반시설을 BTL 방식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민간투자 적격성 분석’(이하 ‘VfM(Value for Money) 분석’)을 받아야 하고, ‘타당성 분석’ 등을 실시해야 한다. 그 중 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타당성 분석’과 정부 재정사업 대비 BTL 사업의 비교우위 여부를 판단하는 VfM 분석은 BTL 한도액 편성의 타당성·적정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6항은 심의위원회가 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적·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낮다고 결정할 경우 경제적 분석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으나,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VfM 분석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년도 국방부는 육사 태릉 교육시설 등 8개 사업 모두 민간투자 적격성 유무 평가에서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받았다.

[군 교육시설 및 관사·간부숙소의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결과]

구 분	육사 태릉	장성 교육시설	화천 관사/간부숙소	화천 간부숙소
총사업비(억원)	730	480	463	903
PSC 낙찰률	95.27%	95.27%	95.27%	95.27%
PFI 적용률	97.86%	97.86%	97.86%	97.86%
PFI 낙찰률	93.23%	93.23%	93.23%	93.23%
VfM값(억원)	3.42	3.76	2.90	6.86
적격성 유무	있음	있음	있음	있음
구분	부평 관사	논산 관사	철원 간부숙소	유성 관사
총사업비(억원)	936	569	805	429
PSC 낙찰률	95.27%	95.27%	95.27%	95.27%
PFI 적용률	97.86%	97.86%	97.86%	97.86%
PFI 낙찰률	93.23%	93.23%	93.23%	93.23%
VfM값(억원)	10.66	4.27	6.88	4.17
적격성 유무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자료 : 국방부

그런데 국방부에서 실시한 민간투자 적격성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부 민간투자대안(PFI)의 추정 낙찰률이 실제 BTL 사업의 낙찰률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BTL 사업 선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민간투자대안(PFI)

낙찰률을 최근 BTL 사업의 낙찰률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VfM 분석은 민간이 시행하는 BTL 사업(민간투자대안, PFI)과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재정사업(정부실행대안, PSC)의 실제 소요비용을 비교하여, 둘 중 소요비용이 더 적은 방식에 우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⁵⁾

그 과정에서 PFI의 경우 PSC 공사비⁶⁾에 ‘유사 ‘BTL 사업의 낙찰률’(이하 ‘실시협약률’⁷⁾)인 ‘PFI 적용률’⁸⁾을 곱하여 실제 소요비용을 추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PFI 적용률이 저평가되어, 최근 높아진 ‘BTL 사업의 실시협약률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5) 민간투자대안(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은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BTL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말하며, 정부실행대안(PSC: Public Sector Comparator)은 정부가 직접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말한다.

6) PSC 공사비는 추정공사비(설계가 기준)에 PSC 낙찰률을 곱한 값이다.

7) 실시협약률은 ‘BTL 사업의 고시금액’ 대비 ‘실시협약금액’ 비율이며, PFI 공사비 산정을 위해 사용하는 ‘PFI 적용률’과 동일하다.

8) ‘PFI 적용률’은 ‘BTL 사업의 고시금액’ 대비 ‘실시협약금액’ 비율이며, ‘BTL 사업의 낙찰률’로도 정의된다. BTL 사업의 고시금액은 추정공사비(설계가 기준)에 PSC 낙찰률을 곱한 값인 PSC 공사비이므로, 다음의 공식이 성립된다.

$$PFI \text{ 적용률} = \frac{BTL \text{ 사업의 실시협약금액}}{BTL \text{ 사업의 고시금액}} = \frac{\text{추정공사비} \times PFI \text{ 낙찰률}}{\text{추정공사비} \times PSC \text{ 낙찰률}} = \frac{PFI \text{ 낙찰률}}{PSC \text{ 낙찰률}}$$
$$PFI \text{ 낙찰률} = PSC \text{ 낙찰률} \times PFI \text{ 적용률}$$

[2023년도 부처별 · 시설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PFI 적용률]

(단위: %)

부처명	시설유형	사업명	PFI 적용률	PFI 적용률 설정기준
교육부	대학시설	국립대 기숙사 4개	97.87	2017년~2021년(5년간) 교육부 BTL사업의 실시협약률 평균
		국립대 시설개선 9개		
	교육시설	서울 5교 등 15개		
국방부	국방시설	태능 교육시설등 8개	97.86	'10~'21년 국방부 BTL사업의 실시협약률 평균
환경부	완충저류시설	창원시 산업단지	-	민간제안 임대료 적용
	하수관거시설	여수, 의정부		
		대구	93.98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의 실시협약률 평균
경찰청	공공보건 의료시설	경찰병원	96.37	BTL 사업의 실시협약률 평균 ('07~'17년 의료, 교육, 병영, 국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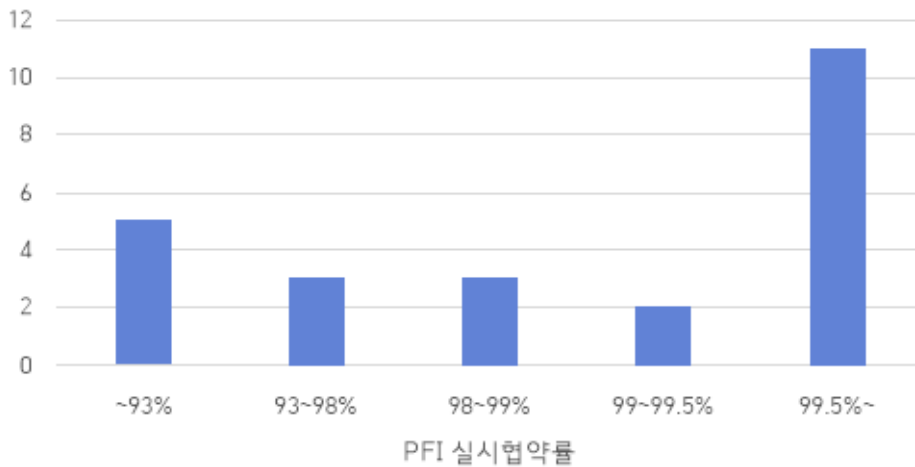
자료: 각 사업별 적격성조사 보고서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보고서

예를 들어, 대학시설 BTL 사업은 최근 5년간 교육부 BTL 사업의 실시협약률 평균값인 97.87%를 PFI 적용률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0~2021년 자료, 경찰청은 2007~2017년 자료에 근거하여 PFI 적용률을 채택하였다.

국방부는 실시협약률 분포도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실시협약률은 99.5% 이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시협약률 분포가 정규분포 형태를 취한다면, PFI 적용률은 실시협약률의 평균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포가 우편향되어 있으므로, 평균값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국방시설 BTL 사업은 최근 5년간 실시협약률 평균은 99.03% 수준이나, PFI 적용률은 97.86%로 설정하여, 최근 실시협약률보다 약 1.17%p 가량 낮게 설정되었다.⁹⁾

9) 이는 낙찰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2017년(91.4%)의 실적을 포함하여 PFI 적용률을 산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방부 BTL 사업 PFI 실시협약률 분포도('10~'21년)]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추정 낙찰률(PFI 적용률)이 최근 낙찰률(실시협약률)보다 낮게 설정될 경우, PFI의 정부부담액을 과소평가하여, BTL 방식의 적격성이 없는 사업을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PSC 공사비 산정시 적용하는 낙찰률(PSC 낙찰률)은 모든 BTL 사업에 대해 턴키(Turn-Key) 낙찰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턴키발주가 부적절한 2023년 BTL 사업에 대한 PSC 낙찰률은 적정 발주방식의 낙찰률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fM 분석은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을 위해 'PSC 낙찰률'에 턴키 낙찰률을 적용하고, 'PFI 낙찰률'을 아래 표와 같이 'PSC 낙찰률'에 'PFI 적용률'¹⁰⁾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VfM 분석에 적용하는 PFI 낙찰률은 BTL 대상사업의 추정 턴키 낙찰률에 PFI 적용률을 곱하여 산정한다.¹¹⁾ PFI 낙찰률은 PSC 낙찰률에 PFI 적용률을 곱한 값이므로, 항상 PSC 낙찰률보다 낮게 산정된다.

10) 사업별 BTL 한도액은 PSC 낙찰률을 적용한 '총사업비의 추정치'이므로, PFI 적용률은 BTL 사업의 추정낙찰률이다.

11) BTL 한도액은 설계가에 PSC 낙찰률을 반영한 총사업비이므로, BTL 사업의 낙찰률은 PFI 적용률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VfM 분석 과정에서 PFI 총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한 PFI 낙찰률은 PSC 낙찰률에 PFI 적용률을 곱한 값이다.

[2023년도 시설유형별 BTL 적격성 검토시 적용 낙찰률]

(단위: %)

구분	부처명	사업명	낙찰률		
			PSC (턴키)	PFI	
				적용률	낙찰률 ¹⁾
국가 사업	교육부	국립대 기숙사 4개	95.24	97.87	93.21
		국립대 시설개선 9개			
	국방부	태능 교육시설 등 8개	95.27	97.86	93.23
	경찰청	경찰병원	95.24	96.37	91.78

주: 1) PFI 낙찰률 = PSC낙찰률 × PFI적용률

자료: 각 사업별 PIMAC 검토보고서

그런데 2023년 BTL 한도액안 대상사업들은 재정사업으로 발주시 턴키 및 대안 발주방식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으므로, PSC 낙찰률은 턴키 낙찰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방부는 2023년 BTL 한도액안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발주방식을 ‘종합심사제¹²⁾(추정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사), 간이종합심사제(추정공사비 100 ~ 500억원 미만 공사)’ 혹은 턴키(Turn Key)¹³⁾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래 [표]와 같이 재정사업을 종합심사제로 발주할 경우, 종합심사제의 예상낙찰률은 86.98%이므로 PSC 공사비는 PFI 공사비보다 약 10% 낮아질 수 있다.

[BTL 한도액안 대상사업들의 가능한 발주방식 및 예상 낙찰률]

(단위: %)

구분	예상 낙찰률	비고
종합심사제	86.98	시설본부 건설계획과 자료
턴키방식	98.82	시설본부 민자사업과 자료
민자사업(BTL)	96.70	98.82%(턴키 낙찰률) × 97.86%(PFI적용율)

자료: 국방부

12) 종합심사제는 선 설계후 시공사 선정시 입찰금액심사 및 공사수행능력평가 후 최종 낙찰자 선정하는 방식으로, 과거 최저가 낙찰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다.

13) 턴키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괄입찰 방식이며, 턴키 발주 대상 공사는 200억원 이상 사업 중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한다.

국방부 종합심사제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PSC 공사비를 산정할 경우, 2023년 BTL 한도액에 포함된 사업 대부분이 VfM 미흡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2023년 BTL 한도액에 포함된 사업들에 대해 적절한 PFI 적용률과 PSC 낙찰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VfM 분석을 위한 할인율이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게 설정되어 재정지출의 현재가치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BTL 사업 선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할인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사업 대비 BTL 사업의 비교우위 여부를 판단하는 VfM 분석은 PSC와 PFI에 대한 정부부담액 규모를 비교하는 것이다. PFI에 대한 정부부담액이 PSC의 정부부담액보다 작을 경우, 해당 사업은 BTL 추진의 적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PSC와 PFI에 대한 정부부담액은 지출 시기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출 시기 차이에 따른 보정을 위해 PSC와 PFI에 대한 정부부담액은 현재가치로 산정된다. 현재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이 사용되는데, 과도한 할인율은 정부부담액의 현재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VfM 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는 사업추진 유형별로 재원조달 방식을 비교한 것이다. 일반재정사업방식은 건설기간에 세출예산으로 건설비를 조달한다. 반면, PSC는 세출예산이 아닌 '5년 만기 국고채'로 건설비를 조달하고, 5년 후 상환하는 방식이다. PFI는 BTL 사업자가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 AA-'로 자금을 조달하고, 정부로부터 받는 임대료로 조달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사업추진 유형별 재원조달 방식]

구분	재원조달 방식	
	건설비(재정지출 조건)	운영비
일반재정사업	세출예산(건설기간)	세출예산
PSC	5년 만기 국고채(5년 후 일시상환)	
PFI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 AA-(20년 간 분할상환)	

자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세부요령·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표준 실시협약안」, 2010년도 민간투자 정책연구 보고서, 2011. 03.,을 바탕으로 재작성

사업추진 유형에 따라 재정지출 시기가 다르므로, 사업추진 유형별 정부부담액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현재가치(현재가, 불변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2023년 BTL 한도액안 사업인 경찰병원의 정부부담액을 비교하였다. 아래 [표]와 같이 사업추진 유형별 경찰병원 정부부담액은 경상가와 현재가에서 차이를 보인다.

[사업추진 유형별 경찰병원 정부지출액]

(단위: 억원)

구분	재정사업				PFI	
	일반		PSC ¹⁾			
	경상가	현재가	경상가	현재가	경상가	현재가
2024	12,928	11,542	-	-	-	-
2025	14,760	12,687	235	202	-	-
2026	6,484	5,363	1,203	995	2,158	1,785
2027	1,060	844	1,670	1,330	3,248	2,588
2028	1,073	823	1,682	1,290	3,259	2,500
2029	1,085	801	14,623	10,800	3,271	2,416
2030	1,097	780	16,232	11,543	3,283	2,335
2031	1,110	760	6,999	4,793	3,295	2,256
2032	1,122	740	1,122	740	3,307	2,180
2033	1,135	721	1,135	721	3,319	2,107
2034	1,148	702	1,148	702	3,332	2,036
2035	1,161	683	1,161	683	3,344	1,968
2036	1,174	665	1,174	665	3,357	1,902
2037	1,188	648	1,188	648	3,370	1,838
2038	1,201	631	1,201	631	3,383	1,777
2039	1,215	614	1,215	614	3,396	1,717
2040	1,229	598	1,229	598	3,409	1,660
2041	1,243	583	1,243	583	3,423	1,605
2042	1,257	567	1,257	567	3,436	1,551
2043	1,271	553	1,271	553	3,450	1,499
2044	1,286	538	1,286	538	3,464	1,450
2045	1,301	524	1,301	524	3,478	1,401
2046	435	173	435	173	1,161	462
합계	56,963	42,540	60,010	39,895	67,141	39,035

주: 1) PSC는 국고채 5년물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5년 후 상환한다는 가정으로 분석됨. 따라서 PSC 자금투입은 사업시행 5년 후에 집중됨.

1. 할인율 3.28%

자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경찰 특화 의료·연구복합센터 민간투자사업(BTL) 타당성분석에 대한 검토의견 (추가분석)」, 2022. 8.을 바탕으로 재작성

아래 [표]에 따르면, 경상가를 기준으로 ‘일반재정사업 < PSC < PFI’ 보이며, 현재가의 경우 ‘일반재정사업 > PSC > PFI’이다. 즉, 경상가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에는 ‘일반재정사업’의 유형으로 경찰병원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부담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며, 현재가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에는 PFI 방식이 합리적이다.

[사업추진 유형별 정부지출액의 경상가 및 불변가(경찰병원)]

(단위: 억원)

구분	일반재정사업		PSC		PFI
경상가	56,963	<	60,010	<	67,141
현재가	42,540	>	39,895	>	39,035

자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경찰 특화 의료·연구복합센터 민간투자사업(BTL) 타당성분석에 대한 검토의견 (추가분석)」, 2022. 8.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현상은 할인율이 아래 [표]와 같이 ‘5년 만기 국고채’ 및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 AA-’의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나타난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65조의2¹⁴⁾은 BTL 사업에 대한 재무적 할인율을 실질(불변) 2.5%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실질 할인율에 물가상승률을 더하여 3.86%을 경 상 기준 재무적 할인율로 사용하였다.

[채권 수익률 및 할인율(경찰병원)]

(단위: %)

구 분	5년 만기 국고채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 AA-	할인율
금리	1.82	2.09	3.86

자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경찰 특화 의료·연구복합센터 민간투자사업(BTL) 타당성분석에 대한 검토의견 (추가분석)」, 2022. 8.을 바탕으로 재작성

14)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65조의2(재무적 할인율) ① 제65조제2항제2호의 적격성 판단에서 재무적 실질 할인율은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4.5%,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2.5%를 적용하고, 혼합형 민자사업의 경우 수익형 부분은 4.5%, 임대형 부분은 2.5%의 할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재무적 할인율은 경제 및 사회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할인율 조정을 검토한다. 단, 급격한 경제상황 변화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국가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할인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

할인율이 채권 수익률보다 높게 되면, 원금상환 시기가 늦어질수록 채권 조달 비용의 현재가는 작아진다. 따라서 VfM 분석과 같이 높은 할인율을 사용할 경우, 대부분 사업의 재원은 국고채 혹은 민간투자자로 조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PSC는 낮은 금리의 단기일시상환대출, PFI는 높은 금리의 장기분할상환대출과 유사하므로, 높은 할인율을 사용하여 높은 금리의 장기분할상환대출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전술한 문제점을 조정하여 VfM 분석 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하여 실시한다면 2023년 국방부 8개 사업 모두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따라서 VfM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정지출 절감 측면에서 2023년 BTL 한도액안 8개 사업들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VfM 분석 결과 외에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BTL 사업별로 한도액 승인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기준]

(단위: %)

구분	국방부안	국회예산정책처안
PSC 자금조달	국고채권(5년)	국고채권(10년) 국고채권(20년)
PFI 적용률	97.86 (‘10~’21년 평균)	99.03 (최근 5년 평균)
PSC 낙찰률	95.27 (‘12~’21년 평균 턴키낙찰률)	87.84 (종합심사제 예상 낙찰률)
할인율	3.86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고시)	2.045 (국고채 5년물 이자율에 장기프리미엄을 가산)

15)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중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보고서 참고

가. 현 황

복지시설운영 사업¹⁾은 매점, 복지회관, 체력단련장 등 군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재료비, 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172억 1,900만원 증액(5.2%)된 3,488억 3,000만원이다.

[2023년도 복지시설운영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복지시설운영	290,328	331,611	331,611	348,830	17,219	5.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국방부

또한, 군 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입은 기타잡수입과 입장료수입으로 편성되며, 2023년도 계획안 중 기타잡수입은 전년대비 32억 9,800만원 감액(Δ 1.2%)된 2,779억 2,700만원이고, 입장료 수입은 전년대비 162억 1,200만원 증액(16.3%)된 1,158억 1,200만원이다.

[2023년도 기타잡수입/입장료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기타잡수입	230,055	281,225	281,225	277,927	Δ 3,298	Δ 1.2
입장료수입	111,154	99,600	99,600	115,812	16,212	16.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군 복지시설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하여 수도권·비수도권 체력단련장 가격차별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유사 복지시설과 비교하여 이용요금이 현저히 낮으므로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21년도 군 복지시설의 수지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은 3,415억 1,100만원이고 지출은 2,713억 4,600만원으로 수익은 701억 6,500만원 수준이다.

2021년 수지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마트와 체력단련장에서 749억 4,400만원, 복지회관에서 27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휴양시설에서 적자 74억 7,900만원이 발생²⁾하였다.

[최근 5년간 군 복지시설 수지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수입(a)	348,136	346,778	353,031	318,796	341,511
	지출(b)	249,763	262,054	270,832	258,757	271,346
	수익(a-b)	98,373	84,724	82,199	60,039	70,165
체력 단련장	수입(a)	97,738	100,595	113,882	110,827	123,530
	지출(b)	76,645	89,929	86,832	86,707	90,755
	수익(a-b)	21,093	10,666	27,050	24,120	32,775
복지회관	수입(a)	45,755	36,455	33,694	22,927	22,651
	지출(b)	35,432	28,222	25,503	19,106	19,951
	수익(a-b)	10,323	8,233	8,191	3,821	2,700
휴양시설	수입(a)	93,208	84,798	75,072	50,649	53,799
	지출(b)	80,205	78,332	73,640	51,677	61,278
	수익(a-b)	13,003	6,466	1,432	△1,028	△7,479
마트	수입(a)	111,435	124,930	130,383	134,393	141,531
	지출(b)	57,481	65,571	84,857	101,267	99,362
	수익(a-b)	53,954	59,359	45,525	33,126	42,169

자료: 국방부

2) 국방부는 휴양시설의 적자가 발생한 사유를 코로나19 확산시기인 2021년과 2022년에 휴양시설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일부 시설은 감염자를 위한 격리시설로 활용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군 복지시설 중 체력단련장은 34곳(국군복지단이 4곳, 육군 11곳, 해군 5곳, 공군 14곳)이 있으며, 2021년 기준 체력단련장의 총수입은 1,235억 3,000만원, 총 지출은 907억 5,500만원이고 수익은 327억 7,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체력단련장은 수익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주 체력단련장의 경우에는 1억 1,9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체력단련장 34곳 중 서울·경기에 위치한 체력단련장³⁾은 12곳이며, 12곳의 2021년도 수입은 601억 6,100만원, 지출 451억 6,200만원, 수익은 149억 9,900만원으로 체력단련장 총수익의 약 46% 정도를 차지하였다.

[2021년도 체력단련장 수지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	지출	수익
계		123,530	90,755	32,775
국군 복지단(4)	태릉	9,819	6,396	3,423
	남수원	8,114	6,628	1,486
	동여주	4,640	3,928	712
	처인	6,891	5,966	925
육군(11)	계룡	6,610	5,910	700
	구룡	7,560	6,480	1,080
	자운	4,050	3,540	510
	남성	1,910	1,600	310
	선봉	1,960	1,600	360
	무열	2,290	1,830	460
	비승	3,100	2,630	470
	창공	2,910	2,070	840
	함안	2,090	1,700	390
	사자	2,730	1,760	970
	상무	1,820	1,710	110
해군(5)	한산대	5,608	3,079	2,529
	만포대	6,242	4,208	2,034
	낙산대	2,374	1,896	478
	충무대	2,091	1,577	514
	덕산대	3,738	3,337	401
공군(14)	광주	2,446	1,242	1,204
	사천	2,539	1,899	640

3) 서울·경기에 위치한 체력단련장을 살펴보면, 국군복지단은 태릉, 남수원, 동여주, 처인이고, 육군은 선봉, 비승, 사자이며, 해군은 만포대, 덕산대이고, 공군은 수원, 성남, 오산 체력단련장이다.

	김 해	2,800	1,221	1,579
	원 주	2,069	2,188	△119
	수 원	2,475	2,013	462
	대 구	2,433	1,289	1,144
	성 남	3,025	1,998	1,027
	예 천	2,193	1,411	782
	청 주	2,197	1,407	790
	강 릉	1,868	1,329	539
	충 주	2,485	1,192	1,293
	서 산	5,507	2,958	2,549
	공 사	2,002	1,306	696
	오 산	2,944	1,457	1,487

자료: 국방부

반면, 군 체력단련장과 유사한 시설인 국민연금공단의 골프장 영업이익을 살펴 보면, 화성상록골프장은 2021년도 89억 2,900만원, 남원상록골프장은 27억 9,400만원, 김해상록골프장은 46억 7,000만원으로, 김해상록골프장(18홀)의 영업이익이 태릉 체력단련장(18홀)의 수익 34억 2,300만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수도권 소재 체력단련장 매출액 및 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구 분		화성상록골프장(27홀)	남원상록골프장(18홀)	김해상록골프장(18홀)
2019	매 출 액	19,432	8,196	11,410
	영업이익	6,560	2,322	3,690
2020	매 출 액	18,294	6,814	11,047
	영업이익	6,818	1,057	3,643
2021	매 출 액	20,198	9,060	11,794
	영업이익	8,929	2,794	4,670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이렇듯 공무원연금공단 운영 골프장과 군이 운영 중인 체력단련장의 수익차이가 나는 주요 원인은 이용요금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체력단련장의 3만원대 요금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지방 소재의 체력단련장의 경우 2만원(카트비 2만원~1만원) 초중반의 가격에 형성되어 있

며 주중과 주말에 가격 차이가 없는가 하면, 공무원연금공단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경기도 화성상록골프장의 경우 주중 10만원⁴⁾, 주말 13만원(카트비 8만원)으로 주중과 주말의 가격이 다르고, 경기도와 남원 및 김해 등 소재지별로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어 다양한 가격차별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군 체력단련장 이용요금 현황]

(단위: 원)

구 분		정회원 ⁵⁾			비회원		
		평일	주말	카트비	평일	주말	카트비
국군 복지 단	태릉	36,300	36,300	6,000	161,000	191,000	20,000
	남수원	36,300	36,300	6,000	120,000	173,000	20,000
	동여주	29,700	29,700	6,000	120,000	173,000	20,000
	처인	36,300	36,300	6,000	120,000	173,000	20,000
육군	계룡 / 구룡	29,000	29,000	6,000	106,000	150,000	20,000
	자운	22,000	22,000	4,000	61,820	72,700	10,000
해군	한산	25,300	25,300	5,000	88,000	94,000	15,000
	총무	22,000	22,000	5,000	40,000	65,000	10,000
공군	광주	22,000	22,000	4,000	52,000	76,000	12,000

자료: 국방부

4) 아래 표 참고

[공무원연금공단 운영 골프장 이용요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일반인		공무원		비 고
	주 중	주 말	주 중	주 말	
화성상록골프장	170	220	100	130	카트비 80
남원상록골프장	110	150	70	100	
김해상록골프장	130	170	80	110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5) 준회원의 경우 이용요금이 4만원~6만 6,000원, 카트비 3,300원~1만 7,000원이다.

이러한 점⁶⁾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방부는 군 체력단련실의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주중과 주말 체력단련장의 가격차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군 복지시설의 수익구조 개선⁷⁾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⁸⁾.

6) 또한, 군 체력단련실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국군복지단의 경우 정회원(대우회원 일부 포함)만 체력단련장 예약이 가능하고, 일반인의 경우 예약 권한이 없으며, 지방 소재 체력단련장의 경우에는 이용현황에 따라 일반인이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tee 배정비율은 현역, 예비역, 기타로 구분되어 국군복지단 및 각군 사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공단 골프장의 운영방식은 군 체력단련장과 달리 공무원 외에도 일반인도 예약 권한이 있다. 다만, 일반인 및 공무원의 경우 이용요금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며, 여러 명이 중첩되어 예약했을 경우에는 추천 방식으로 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7) 한편, 장병격려사업 및 취업활동지원 사업 등 장병들의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8) 국방부는 군인의 경우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위수지역 안에 위치하도록 하는 군 복무의 특수성과 군 체력단련장이 군인의 사기 및 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체력단련장 운영비용 상승 추세, 민간 골프장 요금과의 격차 등을 고려하여 2023년 상반기 중에 입장료 인상을 검토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가. 현 황

소음피해 관리 및 지원 사업¹⁾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 및 보상금²⁾ 지급 등을 위한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8억 2,700만원 증액된 1,39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소음피해 관리 및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시설정책지원	37,245	151,441	151,441	172,444	21,003	14.0
소음피해 관리 및 지원	2,667	111,313	111,313	139,140	27,827	25.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2022년까지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부하는 곳이 16곳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이자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조치를 취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쳐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 군비행장 및 군사격장 개소수는 총 1,182개소로, 군용비행장이 48개소, 군

최형수 예산분석관(jjaps@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533-320

2) 소음피해의 정도를 1~3종 구역으로 구분하고, 제1종 구역에 주민에게는 월 6만원, 제2종 구역은 월 4만 5,000원, 제3종 구역은 월 3만원을 보상한다.

사격장은 1,134개소가 있으며, 이 중 주둔 비행장³⁾과 대형화기 사격장이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 대상이 되며, 소형화기 사격장의 경우 2022~2024년까지 샘플링 조사(52개소)를 통해 일괄조사 제외 여부⁴⁾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개소수]

구 분	총계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개소수	1,182	계	주둔	비주둔	계	대형화기	소형화기
		48	45	3	1,134	130	1,004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2020년 착수⁵⁾한 1차 조사 대상인 103개소에 대한 조사를 2021년도에 완료하고,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1년 말 소음대책지역(1차)을 지정·고시하였다.

1차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보상금은 2022년부터 지급할 시작하였으며, 2020년 11월 27일(군소음보상법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2021년분과 함께 지급하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2차·3차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보상금 소급액에 법정 이자⁶⁾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된다.

3) 비주둔 비행장은 비상시 비행장으로 활용함에 따라 평상시에는 소음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없다.

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소형화기사격장의 경우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통해 소음영향도 조사를 제외할 수 있다.

5) 2020년도 예산에는 '환경보전시설(2533-301)' 세부사업에서 217억 9,700만원이 소음영향도 조사를 위하여 편성되어 있다.

6)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정이자 5%를 지급하게 된다.

[연차별 소음영향도 조사 계획]

(단위: 개소, 억원)

구분	대상	총사업비
계	191	389
1단계 (2020.6.~ 2021.11)	103(비행장 42, 항공사격장 9, 대형화기사격장 52)	240
2단계 (2021~ 2022)	16(대형화기사격장 16)	24
3단계 (2022~ 2023)	42(비행장3, 대형화기사격장 17, 소형화기사격장 22)	71
4단계 (2023~ 2024)	소형화기사격장 30 *거부지역 추가 편성 가능	54
5단계 (2024~ 2025)	샘플링 조사결과에 따라 추진	-

자료: 국방부

그런데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 지역 191개소 중 비행장 1개소, 사격장 15개소⁷⁾에서 지역주민들이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이유로 국방부는 비행장 및 사격장의 이전요구, 보상기준 하향, 보상금 상향 등의 이유라고 설명한다.

[소음영향도 조사 거부지역]

구 분	거부 비행장 및 사격장
화천	하오고개, 신월동, 광불령, 작은매지, 가래골, 장평동사격장
양평	양평비행장, 비승사격장
철원	수피령, 용호동, 3사단 수류탄사격장
연천	답동리사격장
가평	거점사격장
논산	함박사격장
충주	안강사격장

자료: 국방부

7) 거부지역 16곳 중에 12곳은 2021년 소음영향도 조사 시에, 4곳은 2022년 소음영향도 조사 시 발생하였다.

그런데 군 시설로 인한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적법한 보상이라는 군 소음 보상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소음대책지역 지정 및 보상금 지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점, 소음영향도 조사와 소음대책지역 지정 시점이 늦어 질수록 법정 이자 가산액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설득 방안을 마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¹⁾는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공유재산의 매수·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동 특별회계에는 1군지사 이전, 부대개편 및 그 밖의 부대이전 소요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특히, 부대개편 사업은 총 8차에 걸쳐 진행되며, 2022년 8월 기준 부대개편 3차 사업까지 완료되었다. 2023년 예산안에는 부대개편 4차 사업부터 8차 사업까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부대개편 8차 사업은 2023년 예산안에 92억 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동 특별회계에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은 15개 세부사업이 있고, 이 중 종료된 부대개편 1~3차 사업을 제외하면 12개 세부사업이 사업 진행 중에 있다.

최형수 예산분석관(jjaps@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4100(군방군사시설이전사업)-4131(군시설이전사업)

[국방시설 건설 및 이전 관련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현황(2022.8.기준)]

회 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공정률 (%)
국 특 회 계	1군지사 이전	1군지사 이전	329,559	2010-2023	공사2년차 15%
	광주기지영외 탄약고이전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309,216	2005-2025	지반공사 중
	60사단 160 /162연대 이전	60사단 160/162연대 이전	559,922	2021-2024	설계40%
	1급양대 이전	1급양대 이전	21,382	2019-2023	공사1년차 15%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48,586	2022-2025	설계착수 준비
	해병대 1군수대대	해병대 1군수대대 이전	36,061	2022-2025	설계15%
	101정보통신단 이전	101정보통신단 이전	61,748	2020-2024	공사계약 심의중
	부대개편 4차	7군단 12군지단 유류중대	27,783	2019~2024	공사계약 중
		공정사단 본부 및 A여단	28,799	2019~2023	공사30%
		5군지여단 정비/급양대	45,921	2019~2023	공사30%
		8기보사단 222/631포대	26,118	2019~2023	공사50%
		강릉병원	23,722	2019~2024	설계완료
	부대개편 5차	39사단 117여단 예비군훈련대	35,755	2020~2024	공사착공
		53사단 126여단 예비군훈련대	43,629	2020~2022	설계완료
		32사단 99여단 예비군훈련대	39,849	2020~2024	공사40%
		1군단 예비군훈련대	46,684	2020~2024	공사계약 중
		13군지단본부/16보급 대대	64,961	2020~2023	설계완료
		13군지단 606수송대대	29,868	2020~2023	설계완료
		춘천병원	48,731	2020~2024	공사1%
	부대개편 6차	15사단 · 50여단 군수지원대대	22,089	2020~2024	설계60%
		31사단 96여단 예비군훈련대	25,889	2021~2024	설계완료
		31사단 503여단 예비군훈련대	33,383	2021~2024	설계60%
		32사단 505여단 예비군 훈련대 · 3대대	48,386	2021~2024	설계60%

회 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공정률 (%)
		35사단 106여단 예비군 훈련대	39,619	2021~2024	설계중단
		양주병원	38,665	2021~2024	설계30%
	부대개편 7차	25사단 사단 CCC	21,719	2022~2026	설계30%
		31사단 해안감시기동대	21,253	2022~2026	설계30%
		육군수사단 지작사 지역 광역수사단	31,390	2022~2026	설계30%
		육군수사단 2작사 지역 광역수사단	38,564	2022~2026	설계30%
		7공병여단 571교량대대	30,255	2022~2026	설계30%
		5사단 본부	22,204	2022~2026	설계30%
		50사단 501여단 예비군 훈련대	38,319	2022~2026	설계60%
		17사단 직할대	149,686	2022~2026	설계착수
		17사단 10화생방대대	43,946	2022~2026	설계착수
		17사단 본부대	21,225	2022~2026	설계착수
		22사단 56여단 2대대	35,695	2022~2026	설계30%
		22사단 55여단 1대대	34,883	2022~2026	설계30%
		22사단 53여단 2대대	28,689	2022~2026	설계30%
	부대개편8차	3사단 본부	22,861	2023~2026	신규
		3사단 정보대대(-), 공병 대대, 22여단 군지대대	24,237	2023~2026	신규
		6사단 본부	22,572	2023~2026	신규
		6사단 2여단 1대대, 군지 대대, 포병대	29,126	2023~2026	신규
		6사단 19여단 1·2대대, 군수지원대대, 포병대	21,435	2023~2026	신규
		특수기동지원여단 본부/ 직할	47,518	2023~2026	신규
		육군 검찰단	49,498	2023~2026	신규
		1사단 CCC	23,972	2023~2026	신규
		고양병원	65,687	2023~2026	신규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2022년도까지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2023년도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가능성이 극히 저조한 사업은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군 시설이전사업은 설계, 공사 및 관련 지자체 협의 지연 등으로 일시적으로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연례적으로 공정률이 저조한 사업, 공사계약 심의 중인 사업, 사업타당성을 재조사한 사업 및 그린벨트 해제 협의 중인 사업 등은 차년도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중 집행액이 70%미만 사업은 1군지사 이전 등 7개의 세부사업이 있다.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중 집행액이 70%미만 내역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기간	'22.까지 예산	'22.8 까지 집행	공정률
1군지사 이전	1군지사 이전	329,559	2010~2023	256,277	158,169	공사2년차 15%
60사단 160/162연대 이전	60사단 160/162연대 이전	55,922	2021~2024	2,230	646	설계40%
1급양대 이전	1급양대 이전	21,382	2019~2023	13,430	8,959	공사1년차 15%
군사안보지원 학교 이전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48,586	2022~2025	518	0	설계착수 준비
해병대 1군수대대	해병대 1군수대대 이전	36,061	2022~2025	380	0	설계15%
부대개편 4차	7군단 12군지단 유류중대	27,783	2019~2024	15,619	921	공사계약중
	강릉병원	23,722	2019~2024	6,079	1,198	설계완료
부대개편 5차	39사단 117여단 예비군훈련대	35,755	2020~2024	11,835	4,024	공사착공
	53사단 126여단 예비군훈련대	43,629	2020~2022	12,647	1,545	설계완료
	32사단 99여단 예비군훈련대	39,849	2020~2024	9,118	1,476	공사계약중
	1군단 예비군훈련대	46,684	2020~2024	10,687	1,742	공사계약중
	13군지단본부/ 16보급대대	64,961	2020~2023	12,523	2,125	설계완료
	13군지단 606수송대대	29,868	2020~2023	3,236	930	설계완료
	춘천병원	48,731	2020~2024	16,224	2,593	공사1%

자료: 국방부

동 사업의 집행부진 주요사유는 공사비 연말 정산 및 설계지연에 따른 공사계약 지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군지사 이전은 2010년부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공정률이 15%에 그치고 있고, 강릉병원은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지연이 장기화될 것

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사업도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 심의 협의 중에 있는 등 사업지연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중 집행액이 70%미만 내역사업 현황]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집행상황
1군지사 이전	1군지사 이전	공사 2년차로 연말기성 정산예정
60사단 160/162연대 이전	60사단 160/162연대 이전	설계 2년차로 연말 기성 정산 예정
1급양대 이전	1급양대 이전	공사 1년차로 계약금 지급후 연말 기성 정산 예정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의 중
부대개편 4차	7군단 12군지단 유류중대	공사발주 후 연말계약 예정
	강릉병원	사업타당성 재조사 실시
부대개편 5차	39사단 117여단 예비군훈련대	공사 선금 및 기성대금 집행예정
	53사단 126여단 예비군훈련대	연말 공사계약 후 대금지급 예정
	32사단 99여단 예비군훈련대	연말계약 후 선금지급 예정
	1군단 예비군훈련대	지자체 협의 지연
	13군지단본부/ 16보급대대	설계지연에 따른 공사계약 지연
	13군지단 606수송대대	설계지연에 따른 공사계약 지연
	춘천병원	연말 공사 기성금 집행예정

자료: 국방부

이에 따라, 국방부는 사업지연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의 경우 감액편성을 하였으나,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의 일부는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먼저, 1군지사 이전 사업은 201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전년대비 18.3% 증가한 92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사 2년차 공정률이 15%로, 원자재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완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의 중에도 전년대비 145%를 증액 편성하였는 바,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

부대개편 5차 사업 중 13군지단 606수송대대 사업의 경우에도 설계지연에 따라 공사계약이 지연된 상태로 2022년 8월까지 집행액을 감안할 때 공사착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강릉병원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타당성 재조사 실시로 인하여 사업집행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부는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2023년도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이 저조한 사업의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중 집행액이 70%미만 사업의 2023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명	내역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2022 예산	2023 예산안	전년대비 증액(%)
1군지사 이전	1군지사 이전	329,559	2010-2023	78,368	92,680	18.3
광주기지 영외탄약 고이전	광주기지 영외탄 약고 이전	309,216	2005-2025	22,373	773	△96.5
60사단 160/162 연대 이전	60사단 160/162 연대 이전	559,922	2021-2024	646	0	△68.5
1급양대 이전	1급양대 이전	21,382	2019-2023	5,526	8,374	51.5
군사안보 지원학교 이전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사업	48,586	2022-2025	518	1,273	145.8
해병대 1군수 대대	해병대 1군수대대 이전	36,061	2022-2025	380	931	145
부대개편 4차	7군단 12군지단 유류중대	27,783	2019~2024	4,627	2,358	△49.0
	강릉병원	23,722	2019~2024	4,884	3,797	△22.3
부대개편 5차	39사단 117여단 예비군훈련대	35,755	2020~2024	10,214	8,372	△18.0
	53사단 126여단 예비군훈련대	43,629	2020~2022	11,103	3,693	△66.7
	32사단 99여단 예비군훈련대	39,849	2020~2024	7,663	10,073	31.4
	1군단 예비군훈련 대	46,684	2020~2024	8,945	3,842	△57.0
	13군지단본부/16 보급대대	64,961	2020~2023	10,407	15,102	45.1
	13군지단 606수 송대대	29,868	2020~2023	2,306	4,557	97.6
	춘천병원	48,731	2020~2024	14,365	7,411	△48.4

자료: 국방부

가. 현 황

국군외상센터 위탁사업¹⁾은 국군외상센터의 민간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위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2억 5,200만원이 증액된 6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국군외상센터 위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군수도병원 사업 및 지원비	33,786	38,883	36,778	40,156	△1,273	△3.3
국군외상센터 위탁사업	58	5,263	3,181	6,433	3,252	102.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방부

국군외상센터²⁾는 총상, 폭발창 등 군 외상환자 진료 및 전시 대비 필수 분야인 외상 진료능력을 확보하고 군 환자 외에 민간 외상환자도 진료함으로써 공공의료 영역인 외상분야 의료서비스 제공확대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센터이다.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내에 위치해 있으며, 건물 연면적은 11,169㎡(지하1층, 지상 1~2층 및 옥탑층)이고, 주요 시설은 외상병동 40병상, 외상중환자실 20병상, 외상수술실 2개실 등이다.

최형수 예산분석관(jjaps@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3735-301의 내내역사업

2) 국군외상센터의 조직 및 인력규모는 4개과 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사 13명(센터장 포함), 간호사 61명, 보건직 30명, 행정직 16명 등 총 정원은 120명이다.

[국군외상센터 개요]

구 분	내 용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내
연면적 등	11,169㎡ (3,319평, 지하1층, 지상 1~2층, 옥탑층), 총사업비 486억원
시설	외상병동 40병상, 외상중환자실 20병상, 외상수술실 2개실
사업연혁	기본 및 실시설계(2017), 공사(2017~2020.3)

자료: 국방부

2022년 3월 국군외상센터가 개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4월부터 추진된 분당 서울대학병원과 민간 의료인력 전입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2022년 4월 국방부는 국군외상센터 개소와 함께 구로 고려대학교병원과 협약(MOU)을 체결하고 민간 의료인력 확보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상태이나, 의료인력 미확보 등으로 현재 2022년 예산현액 31억 8,100만원³⁾ 중 5,600만원만 집행하였다.

[국군외상센터 건립 진행 과정]

2011년 10월 5일 : 국군중증외상센터 설립 추진계획 수립
2012년 4월 : 분당 서울대학병원과 MOU체결
2013년 10월 : 국군외상센터 설립 계획보고(150병상/1,000억원)
2016년 4월 : 국군외상센터 설립 계획 수정보고(60병상, 497억원)
2017년 12월 26일 : 국군외상센터 시설공사 설계 완료/계약 체결
2020년 3월 5일 : 국군외상센터 준공
2020년 9월 7일 ~ 2021년 5월 30일 : 1차 국가감염병전담병원 지정
2021.8.23. ~ 2022. 4.18 : 2차 국가감염병전담병원 지정
2022년 4월 20일 : 국군외상센터 개소 및 구로 고려대학교병원과 MOU체결

자료: 국방부

3) 당초 2022년 예산 52억 6,300만원 중 20억 8,200만원이 제2회 추경에서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31억 8,100만원이다.

나. 분석의견

국군외상센터 위탁사업비에 간호사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으나 현재 간호인력 지원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간호인력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충원 가능 인력 등을 고려하여 간호사 인건비를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방부(국군수도병원)는 구로 고려대학교병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민간 의료인력 35명(의사 5명, 간호사 30명)을 확보⁴⁾한다는 계획으로 2023년 예산안에 인건비(35명)와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6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현재 국방부(국군수도병원)와 구로 고려대학교병원은 간호인력 30명에 대한 인력 지원 계획에 대해 논의 중에 있는 상태이고, 외상센터 개소 후⁵⁾ 내원환자가 43명에 불과하며, 간호사 채용공고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간호인력 30명을 한 번에 충원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군외상센터 건립 진행 과정]

- 인건비 : 35명(의사5명, 간호사 30명)×11.9백만원×12개월=5,016백만원
 - 일반관리비 : 5,016백만원(인건비)×6%=301백만원
 - 이윤 : (5,016(인건비)+301(관리비))×10%=532백만원
 - 부가가치세: 5,848(공급가액=인건비+일반관리비+이윤)×10%=585백만원
- * 사업확대 : ('22년) 35명, 10개월 운영→ ('23요구) 35명, 12개월 운영

자료: 국방부

4) 구로 고려대학교병원은 의료인력 35명을 국방부(국군수도병원)에 파견형식으로 인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2022년 9월 기준 외상 외과 전문의 5명의 채용공고를 통해 현재 2명의 의사를 확보한 상태이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채용한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5) 2022년 4월 20일 개소 이후 9월 16일까지 내원환자의 수를 의미한다.

가. 현황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사업¹⁾은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억 1,600만원 증액된 19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진료지원	117,034	151,440	151,440	148,841	△2,599	△1.7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1	19,160	19,160	19,576	416	2.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 등을 입는 경우 일차적으로 군병원을 이용하지만, 군병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군병원에서 민간병원에 치료를 의뢰하고 이에 따라 민간병원에서 치료하는 경우 치료비 전액(본인부담금+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²⁾

그러나 군병원의 치료가 가능함에도 병사가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선택하는 경우 의료비 중 국가 부담분(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을 제외한 약 30%³⁾는 현역

최형수 예산분석관(jjaps@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231-301의 내역사업

2)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진료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위탁진료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위탁진료비의 2022년도 예산안은 63억 9,600만원이다.

3) 의료비 중 약 70%는 국가에서 부담(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한다.

병 등이 자비로 부담하게 된다. 반면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⁴⁾에 따라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활용하여 군인단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민간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 치료비를 경감받고 있다.

[본인부담금 지원한도 및 범위]

구분	군병원(원칙)	위탁진료비 지원 사업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내용	·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훈련 등 부상 군병원 이용	· 군병원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민간병원에 위탁	· 군병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민간병원 치료받기를 선택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최대 80% 지원
사업명	· 국군수도병원 사업 및 지원비 · 국대전병원 사업 및 지원비	· 진료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위탁진료비)	· 진료지원사업의 내역사업(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자료: 국방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국방부는 병사 단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민간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단체보험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민간보험사와 국방부의 보험료 단가에 대한 차이가 커 민간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국방부는 단체보험제도를 포기하고 국가가 본인부담금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인부담금 지원범위는 진료비(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의 최대 80%로, 의·병원은 1만원 또는 본인부담금의 20% 중 큰 금액을,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 또는 본인부담금의 20% 중 큰 금액을 각각 공제한 잔여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⁵⁾.

4)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5) 예를 들어, ①병사가 내과에서 진료 후, 진료비(급여) 8,000원을 수납한 경우에는 지원 없음, ②병사가 정형외과에서 진료 후, 진료비(급여) 12,000원을 수납한 경우에는 공제금액 10,000원 공제 후 2,000원 환급, ③병사가 종합병원에서 진료 후 진료비(급여) 104,000원을 수납한 경우에는 20,800원(20%) 공제 후 83,200원 환급

[본인부담금 지원한도 및 범위]

구분	내 용	
지원 한도	현재 지원한도는 없으나, 국방부는 민간병원 진료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액 및 횟수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지원 범위	진료비(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최대 80% 지원	
	- 상해·질병에 대해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진료비에서 의료기관별 공제금액 또는 자기부담금(20%) 중 큰 금액 공제 후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기관별	공제금액
	의·병원급	1만원 혹은 본인부담금의 20% 중 큰 금액
	상급·종합병원급	2만원 혹은 본인부담금의 20% 중 큰 금액

자료: 국방부

2021년 및 2022년 8월 기준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53억 1,300만원 중 100만원이 집행(0.01%)되었으나, 2022년 8월 기준 191억 6,000만원 중 72억원이 집행(37.5%)되었다.

국방부는 2021년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로 민간병원 진료자료 수신과 개인정보 동의 시간⁶⁾이 소요되어 2021년 12월에 비로소 민간병원 진료비가 최초 지급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사전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시간이 단축되어 집행률이 2021년도 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한다.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	결산	비고
2021	15,313	1(0.01)	민간병원 진료자료 수신에 약 6개월이 소요되어 '21.12월 민간병원 진료비 최초 지급
2022. 8.	19,160	7,200(37.5)	-

자료: 국방부

- 6) 국방부는 민간병원 진료기록 수신 절차(민간병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방부)상 단계별로 시일이 소요되어 국방부가 관련 자료를 최종 수신하기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되며, 진료비 지급 과정에는 장병들의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이 필수적이나 국방부는 상당수(지급대상자 중 약 68%)의 장병들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받지 못하여 진료비의 지급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방부는 2021년도 예산안에 병사 단체보험 가입지원 예산을 편성한 바 있고 단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는 「병역법」을 개정하여 단체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신설된 「병역법」 제75조의3⁷⁾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국가가 민간병원 본인부담금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으나, 이러한 직접 지원방식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⁸⁾에 근거하여 민간병원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해당 조항은 국가가 군인들의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의 규정으로서 이 조항이 군 의료분야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근거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⁹⁾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은 당초 도입하려던 병사 단체보험 사업과 마찬가지로 일단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의무지출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고 장기적인 재정 투입을 필요로 하는 경직성 경비에 해당한다.

7) 「병역법」

제75조의3(보험가입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은 제75조제4항에 따른 치료비 또는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상근예비역
2. 현역병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군인들이 건강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이 조항에 근거하여 군 의료에 관한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면 현행 병역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 및 치료(제75조), 재해 등에 대한 보상(제75조의2), 병사 단체보험 가입(제75조의3) 등 각종 지원 및 보상에 관한 근거도 불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또한 민간병원 진료비의 지원대상과 한도 및 범위, 절차,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지원여부¹⁰⁾ 등을 법령에 명시하여 집행과정에서의 분쟁이나 혼란을 줄일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병사 단체보험 예산이 편성된 시기에 맞추어 「병역법」에 병사 단체보험 가입 근거를 신설한 것과 마찬가지로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¹¹⁾를 마련한 후 보다 체계적·안정적으로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10)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상한제 시행으로 공단에서 보전해준 환자부담금을 실손 보험회사에서 중복지원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면, 국방부가 지원해주는 민간병원 진료비의 경우에도 실손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며(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큼만 보전), 이에 따라 실손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1) 이와 관련하여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이 국방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방위사업청
(191~244 비공개)



병무청

1

현황

병무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병무청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00만원 (△0.7%) 감소하였다.

[2023년도 예산안 병무청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17	302	302	300	△2	△0.7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병무청

병무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3,517억 6,0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797억 3,900만원(29.3%) 증가하였다.

[2023년도 예산안 병무청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20,018	272,952	272,021	351,760	79,739	29.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병무청

한편, 병무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23년도 병무청 예산안은 ①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처분을 위한 정밀 병역판정검사 강화, ②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훈련 등 군 소요 적정충원, ③ 사회복무요원의 기본자세와 책임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강화 및 체계적 복무관리 지원, ④ 정확한 심사를 통한 대체역 편입 및 자원관리, ⑤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한 병역의무자 자긍심 고취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3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사회복귀준비금 예산편성내역에는 적금 가입률 및 가입금액을 각각 95%, 월 40만원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소요에 비해 일부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가입률 및 가입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 시 수검자가 제출한 병무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서류 발급비용을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고 있으나 비목 특성상 기타 보전금(310-04)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에 대해 개선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회성 행사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 병역명문가 선양 조례 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병역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병무청의 2023년도 예산안에 신규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으로 1,404억 700만원 규모이다.

병역의무자지원 사업은 병역의무자가 징·소집 등 병역의무 이행 시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식비 등)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보전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건강보험료 지원,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등 자기개발 기회 제공과 병역이행을 마친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귀 준비를 지원하는 사회복귀준비금 등 병역의무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2023년도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예산을 증액하였다.

[병무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¹⁾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병역의무자지원	61,340	61,340	140,407	79,067	128.9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주요 증액사업은 2022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병무청

장병내일 준비적금 가입률 등을 고려한 적정 예산편성 필요

가. 현 황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사회복귀준비금 사업¹⁾은 복무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소집해제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각각 전년대비 8억 5,400만원, 758억 7,000만원이 증액된 1,078억 2,200만원²⁾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병역의무자지원	23,223	61,340	61,340	140,407	79,067	128.9
장병내일준비적금	-	797	797	1,651	854	107.1
사회복귀준비금	-	30,301	30,301	106,171	75,870	250.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병무청

나. 분석의견

사회복귀준비금 예산편성내역에는 적금 가입률 및 가입금액을 각각 95%, 월 40만원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소요에 비해 일부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가입률 및 가입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코드: 일반회계 7135-314의 내역사업

2) 내역사업인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사회복귀준비금 예산만을 합한 금액이다.

2023년도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사회복귀준비금³⁾ 사업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23년 월평균 복무만료인원 2,652명의 95%인 2,519명, 1% 재정지원금 54,600원에 12개월을 곱하여 1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다.

다음, 사회복귀준비금은 월평균 복무만료인원 2,652명의 95%인 2,519명, 1인당 사회복귀준비금 351만원에 12개월을 곱하여 1,06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예산안 현황]

장병내일 준비적금	• (산출) 16억 5,100만원 - 월평균 복무만료인원 2,652명×95%(가입률)×54,600(1인 1% 재정지원금)×12개월
사회복귀 준비금	• (산출) 1,061억 7,100만원 - 월평균 복무만료인원 2,652명×95%(가입률)×지원금(3,512,340원)×12개월

자료: 병무청

그런데 실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8월 기준 전체 사회복무요원 5만 8,209명 중에 적금 가입인원은 41,165명으로 가입률은 70.7% 수준이고, 평균 가입 금액은 36만원 정도이다.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현황]

(단위: 명)

구 분	'21. 9.	'21. 12.	'22. 3.	'22. 8.
전체 인원	63,019	57,769	59,228	58,209
적금 가입 인원	27,826	27,452	36,926	41,165
가입률(%)	44.2	47.5	62.3	70.7
평균 금액(만원)	34	34	35	36

주: 적금 가입 인원은 은행연합회 자료

자료: 병무청

3)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은 국방부의 1% 이자지원 사업내용과 동일하고,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은 매칭지원금(정부지원금) 사업과 동일하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은 의무복무 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축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소집해제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청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예산편성 시 대상자의 가입률을 95%로 산정하여 편성하였으나, 사회복무요원의 가입률은 2022년 8월 기준 70.7%로 저조한 편이며, 가입액도 평균 36만원으로, 편성시 기준인 월 40만원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물론, 2023년도의 경우에는 매칭지원율이 71%로 상승함에 따라 미가입자의 적금 가입을 유인할 수 있는 효과는 있겠으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일반 생활지역과 인접하여 복무를 수행함에 따라 현역과 소비성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사업은 실제 소요에 비해 일부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가입률, 가입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병역판정검사 사업¹⁾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등에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700만원이 감액된 17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병역판정 검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병역판정검사	16,425	17,959	17,799	17,772	△27	△0.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병무청

나. 분석의견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 시 수검자가 제출한 병무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서류 발급비용을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고 있으나 비목 특성상 기타 보전금(310-04)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에 대해 개선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병역판정검사²⁾와 각 부대에서 실시하는 입영신체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먼저,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남성에게 대해 병역의무 이행 가능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이며, 병역의무자는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1~3급 현역,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는 병역의무자가 입영하여 자대배치를 받은 후에 질병이 있거나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인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

최형수 예산분석관(jjaps@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131-301

2) 2021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256,755명이고, 2022년 8월 기준 185,112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동 검사를 소위 '신체검사'라고 부른다.

며, 입영자가 검사 후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으면 귀가조치 된다.

입영판정검사³⁾는 이러한 귀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써, 현역병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검사를 말한다.

병무청은 각 부대의 입영신체검사를 2025년까지 입영판정검사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입영판정검사의 절차⁴⁾는 등록·안내, 심리·기본검사, 각 과목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 등으로 병역판정검사 절차와 동일하고 다만, 검사항목 중에 매독검사 항목⁵⁾이 추가된 것이 차이가 있겠다.



자료: 병무청

3)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2021년 12,821명, 2022년 8월 기준 24,765명이 검사를 받았다.

4)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입영판정검사의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실시해야 한다.

5) 병역판정검사는 혈액검사 등 33종 55개 항목이며, 입영판정검사는 34종 56개 항목으로 검사 항목은 양(兩) 검사 모두 동일하나, 입영판정검사의 경우 매독검사가 추가로 실시된다.

그런데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 시, 수검자가 민간 의료기관(병원)에 지불한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과 의무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을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도 기준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의 경우 7억 5,900만원, 2022년 8월 기준 5억 3,400만원을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였고, 의무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의 경우 2021년 기준 2억 7,000만원, 2022년 8월 기준 2억 3,3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으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위원회 참석비 등의 잔여재원으로 이를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판정검사 사업 내 병역 및 입영판정검사 일반수용비(210-01)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8.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계	2,975	3,362	3,271	2,360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756	759	765	534
의무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	247	270	278	233
의료기관 위탁검사비	654	670	640	363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참석비	380	324	385	227
수검복 세탁비 등 병역판정검사 관련 수용비	938	1,339	1,203	1,003

자료: 병무청

그런데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⁶⁾에 따르면 일반수용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이거나 회의참석사례금, 공고료 및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집행되는 비목인 반면,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수검자가 민간 의료기관(병원)에 지출한 경비를 사후 보전해주는 측면에서 보전금 성격에 더 가까워 보인다.

6)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일반수용비 및 기타보전금 비교]

일반수용비(210-01)	기타보전금(310-04)
·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비 · 회의참석사례금,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초빙강사로 등	·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 적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등, 장학금 및 학자금, 재난지원금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수당, 증인·감정인·참고인·공술인에 대해 실비변상금 등 · 기타 법령에 의해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 등

자료: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한편, 현재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거나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위해 쓴 교통비 등을 병역의무자 여비⁷⁾ 지원 명목으로 기타 보전금(310-04) 비목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 시, 수검자가 민간 의료기관(병원)에 지불한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과 의무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기타 보전금(310-04)으로 편성하는 것이 비목에 부합하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후에 이에 대한 개선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7) 병역의무자지원(7135-314)에 편성되어 있다.

가. 현 황

병역명문가 선양사업¹⁾은 자율적 병역이행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1대(代)부터 3대(代)까지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선정하여 포상 등을 수여하고 국·공립 및 민간 시설 등에 대한 시설이용료를 감액·면제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병무행정안내	1,441	1,807	1,745	2,656	911	52.2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445	445	445	445	0	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병무청

동 사업의 2023년 예산안은 병역명문가 패 및 기념품 등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2억 2,300만원, 병역명문가 다큐멘터리 등 영상물 제작을 위한 일반용역비 1억 7,300만원, 시상식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1,800만원, 포상금 3,100만원 등 총 4억 4,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형수 예산분석관(jjaps@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7134-310의 내내역사업

[2023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예산 편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세목코드)	세부내용(산출내역)	금액
일반수용비 (210-01목)	병역명문가패, 증서, 기념품 제작 등: 167 병역명문가 시상식 및 증서수여식 등 부대비용: 40 표창심사위원회 심의 수당: 1 병역명문가 발굴·홍보 등: 15	223
일반용역비 (210-14목)	병역명문가 다큐멘터리 등 제작: 40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게시: 14 병역명문가 선양사업(홍보): 18 병역명문가 시상식: 101	173
국내여비 (220-01목)	병역명문가 시상식 등 참석 여비: 18	18
포상금 (310-03목)	병역명문가 부상금: 31	31
계		445

자료: 병무청

나. 분석의견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회성 행사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 병역명문가 선양 조례 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병역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병역명문가 사업은 2004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병역법」 제82조²⁾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병역명문가 3대 가족(조부, 백부, 부, 숙부, 본인, 형제, 사촌)³⁾ 모두가

2) 「병역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3) 병역명문가의 선정기준은 나, 형제, 부, 조부, 백부, 숙부 및 사촌 등 가문에서 모든 병역의무 대상자가 현역으로 입대해서 만기전역을 해야 선정이 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병역 면제자가 1명이라도 존재하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지 못한다. 다만, 3대째에 남성이 없는 집안은 예외적으로 여군 복무도 병역명문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대상으로 하며, 2004년 시행 이후 9,447가문 47,650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다.

[연도별 병역 명문가 선정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04~ '11년
가문수	9,447	1,816	1,236	1,017	741	714	492	560	466	497	545	301	1,062
병역이 행자	47,650	8,985	6,289	5,222	3,820	3,779	2,670	2,932	2,490	2,520	2,642	1,444	4,857

주: 2022. 8월말 기준

자료: 병무청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족에게는 표창 및 포상금⁴⁾ 외에 병무청 훈령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⁵⁾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에 병역명문가에 대한 공영주차 요금, 시설 사용료, 보건소 진료비, 산하기관 입장료 등을 면제·할인토록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1,262개 시설에서 참여하고 있다.

[병역명문가 지원(면제·할인) 시설 현황(2022.8월말 기준)]

구분	계	국가 시설	지자체 시설	민간 시설
계	1,262곳	궁·능원, 軍복지 등 70곳	공원, 박물관, 주차장 등 585곳	병·의원, 휴양시설 등 607곳
면제	253곳	궁·능원, 휴양림 입장료 등 62곳	박물관, 유적지 등 181곳	공원, 박물관 등 10곳
할인	1,009곳	軍복지, 기념관 등 8곳	병원 보건소, 주차장 등 404곳	병·의원 진료비 등 597곳

자료: 병무청

4) 대통령 표창 300만원(2가문), 총리표창 200만원(4가문), 장관표창 150만원(5가문), 청장표창 100만원(8가문), 국가보훈처장 100만원(1가문)을 지급하고 있다.

5)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병역명문가 증서 지급 및 시상식 개최 등 사실상 일회성 행사 지원 사업에 그치고 있고, 병무청이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등 병무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병역명문가의 면제·할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경우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해당 시설에 관한 조례에서 다시 이용료 면제 및 할인에 대한 조항을 규정해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관련 조례 예시]

구 분	가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문 일부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③ 군수는 주차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 중 일정비율을 감면한다. 5. 「가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관련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243(광역시 17, 기초 226)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209(광역시 17, 기초 192)곳의 지방자치단체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있으며, 34곳은 해당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⁶⁾.

또한, 지원 관련 조례를 둔 209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그 산하시설 이용 조례에서 이용료 감면 등의 규정을 둔 곳은 153개로 73.2%에 그치고 있는 등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어도 혜택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밖에 민간시설의 일부협약 기관에서는 이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언론보도⁷⁾가 제기되는 등 사업이 시작된 지 18년이

6) 이에 대해 병무청은 표준 조례안을 제정하여 해당 지자체의 권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7) 제주 병역명문가 제도 유명무실(제민일보, 2022.3. 8.)

지난 상황에서도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무청도 상기 문제점을 인식하고 동 사업에 대한 「병역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여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병역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병역명문가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동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1

현황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고,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계상되지 않았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132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100만원 (3.4%) 감액되었다.

[2023년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9,379	13,739	13,733	13,268	△471	△3.4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한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23년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예산안은 인건비 및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임위원과 소속 공무원 및 민간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와 위원회 기본경비 및 5·18 진상규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되었다.

2023년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편성은 부적절하므로 관련 예산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2023년도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은 없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특정업무경비 감액·조정 필요

가. 현 황

위원회 기본경비의 특정업무경비¹⁾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비 명목으로 편성된 것으로, 특정업무경비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특정업무경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위원회 기본경비	4,438	4,421	4,421	4,421	0	0
특정업무경비	74	104	104	104	0	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나. 분석의견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편성은 부적정하므로 관련 예산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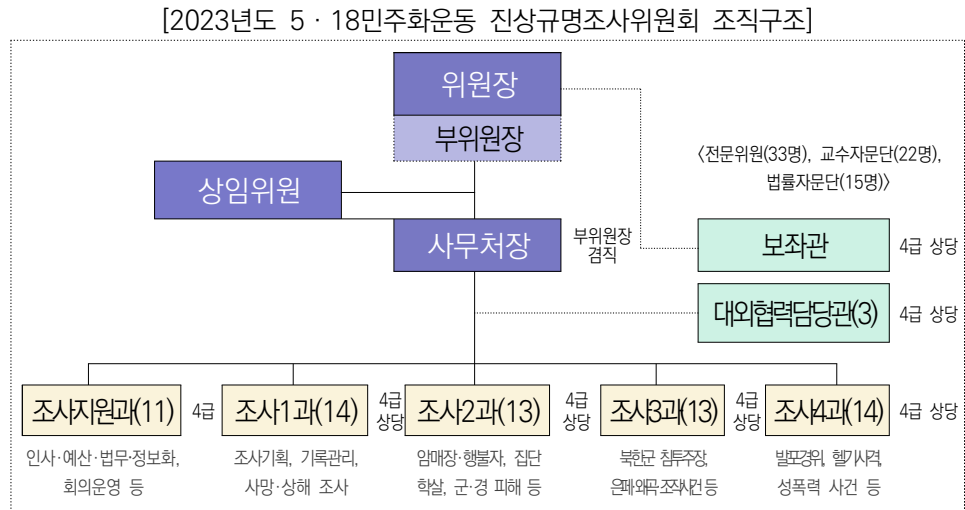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 및 폭력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2023년 연말까지 활동할 수 있는 한시적 조직이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6명²⁾으로

최형수 예산분석관(jjaps@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002-250의 내역사업

구성되며, 사무처는 사무처장(부위원장이 겸직), 1보좌관, 5과, 1담당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자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회의 정원 및 현원은 72명으로, 특정직공무원(경찰) 7명과 별정직 공무원 49명 등 56명(현원기준)이 조사 1~4과에 배치되어 조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특정업무경비를 조사활동 명목으로 편성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정·현원 현황]

총 계		정무직	국가기관 파견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경찰)									
			소계	4급	4.5급	5급	6급	7급	소계	경감	경위	경사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	72	3	14	1	1	6	6	-	2	2	-	-	53	1	5	17	17	13
현원	72	3	12	1	1	5	5		7	4	3	-	50	-	5	17	14	11

자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그런데 위원회는 특정업무경비 조사활동 인력 56명 분 외에 대외협력담당관실 인력 3명과 보좌관 1명을 포함하여 총 60명분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 비상임위원의 경우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3년 특정업무경비 편성내역]

- 특정업무경비(250-03) : 1억 400만원(전년동)
- 조사활동비등 : 14만원 * 12월 * 60명 = 1억 400만원

자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특정업무경비³⁾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개인활동 경비와 일 반지출을 하는 부서 활동 경비로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이 중 개인활동 경비의 경우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예산 편성이 금지되어 있다.

3)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대외협력담당관실 직원 3명 및 보좌관 1명을 포함하여 특정업무경비를 편성하였는 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직제에 관한 규칙」 제6조⁴⁾를 보면,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주요 업무는 위원회 업무에 관한 대국민 홍보와 브리핑·보도자료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보좌관⁵⁾은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특정업무경비 대상 직무인 수사·감사·예산·조사 등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대외협력담당관실과 보좌관의 경우 「직제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조사활동 등을 직접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직제에 규정된 업무 외에 조사활동 업무를 일부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기획재정부 편성지침에 따른 수사·감사·예산·조사 등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원회는 대외협력담당관실 3명 및 보좌관 1명분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를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다.

4) 「직제에 관한 규칙」

제6조(대외협력담당관)

②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업무에 관한 대국민 홍보
2. 브리핑·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
3. 온라인 홍보, 소셜 미디어 운영 등 대국민 소통 업무
4. 법 제38조에 따른 청문회 관련 업무
5. 위원회 내 사진 및 영상 촬영
6. 위원회 백서 발간
7. 위원회 업무에 관한 국회 보고·대응
8. 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9. 그 밖에 위원회 업무의 언론 홍보 등

5) 「직제에 관한 규칙」

제5조의2(보좌관)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진상규명에의 참여 촉진과 의견 수렴
3.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상호협력
4.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5. 보좌관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2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budget.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092-1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외통위 · 국방위]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Analysis by Committee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